

#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

이애리아 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이창호·방일권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2016 위탁연구

인 쇄 2017년 9월

발 행 2017년 9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손기웅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02-2275-6894)

인 쇄 처 알래스카인디고(02-2277-5553)

ISBN 978-89-8479-882-3 93340

북한 노동자[北韓勞動者], 러시아[Russia]

340.911-KDC6 / 320.95193-DDC23 CIP2017023105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 연구과제명: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역량구축(2/5년차)
- 연구책임자: 한동호 연구위원
- 위탁과제명: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 위탁 기관: 재외한인학회
- 위탁 기간: 2016.09.23. ~ 2016.12.23.
- 위탁책임자: 이애리아(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
- 공동연구자: 이창호(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방일권(한국외국어대 중앙아시아연구소)
- 연구보조원: 박수성(이화여대)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차

요약 .....	ix
<b>I. 서론 .....</b>	<b>1</b>
1. 연구의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범위 .....	7
3. 연구방법과 과정 .....	9
4. 연구지역 개관 .....	11
<b>II.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에 대한 이해 .....</b>	<b>27</b>
1.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파견 현황 .....	29
2.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근로 및 생활 실태 .....	41
<b>III. 사할린 북한 노동자의 역사적 출발 .....</b>	<b>55</b>
1. 들어가며 .....	57
2. 파견노무자 .....	58
3. 안보와 발전의 사이에서 .....	87
4. 사할린 북한 노동자의 역사적 함의: 1940년대와 2016년 비교를 중심으로 .....	101



##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b>IV. 사할린 북한 노동자의 삶과 문화</b> .....	<b>107</b>
1. 사할린의 북한 노동자 .....	109
2. 사할린의 북한 회사들 .....	115
3. 북한 노동자의 근무 형태 .....	124
4. 북한 노동자의 수입과 계획분 .....	139
5. 북한 노동자의 일상생활과 정체성 .....	141
6. 송금과 귀국 후의 생활 .....	149
7. 소결: 사할린 북한 노동자의 특징 및 타 지역과의 비교 ...	152
<b>V. 결론</b> .....	<b>159</b>
참고문헌 .....	165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71

## 표·그림·사진·자료 목차

표 II-1 북한 국적자 러시아 체류 현황 .....	36
표 II-2 연해주 외국인 거주자 수(2013. 기준) .....	40
표 II-3 북한 근로자들의 자살 및 산업재해 등 피해사례(2015.1. 이후) .....	42
표 III-1 1946.6.25. 기준 극동 지역 수산업 분야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현황 .....	65
표 III-2 사할린 지역으로 유입된 북한 노동자(1946~1949) .....	78
표 III-3 북한 파견노동자 배치 사업체별 현황(1952.1. 기준) .....	80
표 III-4 1950년대 사할린에서 소련국적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의 수 .....	95
표 III-5 1950년대 노동 계약 만료로 사할린에서 북한으로 돌아간 파견노동자와 잔류 중인 북한 국적자의 수 .....	96
표 IV-1 북한 내각 산하 각 기구와 그 소속인 사할린의 북한 회사 .....	116
표 IV-2 러시아 3개 지역 간의 노동 형태 비교 .....	152
그림 I-1 사할린주의 위치 .....	11
그림 IV-1 사할린 파견 사업소 내 조직도(제1건설사업소[칠보산]의 사례) .....	120
그림 IV-2 크라스노야르스크 제2건설회사(사업소)의 조직도 .....	157

##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사진 II-1 노동허가증 취득 시험과목과 점수 .....	32
사진 II-2 모스크바 대학이 발행한 노동허가시험 자격증명서 .....	33
사진 II-3 재건된 복리 친선각 .....	40
사진 II-4 핫산 가는 길 .....	45
사진 II-5 핫산 인근 1980년대 북한 노동자들이 건축한 주택 .....	45
사진 II-6 핫산역 .....	46
사진 II-7 국경수비대 입구 및 복리 국경 .....	47
사진 II-8 국경수비대 근처 폐허된 군 시설과 막사 .....	47
사진 II-9 북한 노동자 작업현장 .....	48
사진 II-10 북한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현지 베틀신문 .....	50
사진 II-11 착용 가능한 신발과 옷 .....	52
사진 III-1 1948년도 북한 노동자 노동계약서 .....	75
사진 III-2 1950년대 초 노동자에게 발급된 ‘노동수첩’ .....	90
사진 III-3 공민증에 대한 기본 규정 .....	91
사진 IV-1 사할린 내 조선족 운영 상점 .....	112
사진 IV-2 유즈노사할린스크 외곽에 위치한 북한 노동자 숙소 .....	121
사진 IV-3 시티몰(СИТИ МОЛЛ) 인근 고급 연립 단지 건설 현장(좌) 및 그곳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우) .....	125
사진 IV-4 눈 내리는 겨울에 작업하는 북한 노동자들 .....	126
사진 IV-5 북한 노동자들이 인도 및 담장 공사하는 모습 .....	131
사진 IV-6 D 사장이 거래했던 북한 노동자와의 계약서와 영수증 .....	132
사진 IV-7 북한 노동자가 공사한 벽면과 화장실 모습 .....	135

## 표·그림·사진·자료 목차

사진 IV-8 러시아 한인 G 씨가 운영하는 사업장 내의 북한 노동자 숙소 .....	142
사진 IV-9 사할린 북한 음식점의 외부(좌)와 내부(우) .....	144
사진 IV-10 휴일에 중국인 시장에서 쇼핑하는 젊은 북한 노동자들 ..	145
사진 IV-11 한국 드라마 및 영화의 복제 CD .....	147
사진 IV-12 북한 노동자들이 자주 찾는 달러 환전소 .....	150
자료 IV-1 러시아 기업체(대방)와 북한 측 사업단의 도급 계약서 (번역문) .....	127

## I. 서론

-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깊이 있는’ 혹은 ‘구체적 현실에 기반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계약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한 노동과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이들의 구체적인 생활 양상과 이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임.
- 본 연구는 2014~2015년에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관련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이 러시아 내 연구자 및 조사 협력자와 함께 연구팀을 구성해 사할린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 및 인권상황에 대해 보다 실증적, 체계적으로 학문적, 정책적 연구를 시도한 결과물임.

## II.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에 대한 이해

-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은 기본적으로 2007년 8월 31일에 체결된 <북·러 한시적 근로 활동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러시아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점차 엄격해지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 역시 이에 해당되기 시작함. 2014년 12월부터 외국 노동자들에게 ‘노동허가증’을 부여하는 심사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2016년 6월 1일부터는 외국인 노동자 관할이 연방 이민청에서 내무부 경찰 관할로 개편됨.
- 2015년도 기준 러시아 기업들에 할당된 북한 노동자 고용가능 쿼터 수는 4만 7천279명이나 러 연방이민청 자료상 북한 국적 체류자는

3만 4천20명이며 이 중 18세 이상 노동 가능한 북한인은 3만 3천 682명임. 노동허가를 취득하여 실제로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는 2만 7천~3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됨.

- 북한 노동자의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으며 30~50대가 대다수임.
- 러시아 당국의 외국인 노동자 근로 현장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생활, 근로실태에 대해 당국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설립한 북한 회사에 소속되어 원칙적으로 교외 아파트 또는 공장건물에서 단체생활을 하지만 작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음.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자살 및 산업재해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사상적으로 느슨해짐에 따라 관리 역시 강화되고 있어 북한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 III. 사할린 파견 노동의 역사적 출발

- 러시아 극동지역은 항시적으로 개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그 가운데서도 사할린 지역은 독특한 지정학적, 민족적 특성들이 교차되는 경계적(境界的) 공간임. 특히 일제가 강제적으로 다수의 한인(조선인) 노동력을 동원하기 전부터 이 지역의 노동 수요를 좇아 한인이 첫발을 디딘 지역임.
- 동시에 사할린은 북한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진출한 사상 첫 무대임. 1946년부터 49년까지 2만 6천여 명이 파견됐던 북한 노동자(가족 포함)들의 역사는 오늘날의 사할린 북한 노동자 실태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사할린 지역 북한 노동자 파견은 국가(특히 소련 측)가 조직적이고 행정적으로 주도해 진행된 사업이라는 특징을 보임.
- 북한 노동자 모집 정원 결정, 북한에서의 노동자 모집, 계약조건의 결정과 변경 등을 모두 소련이 주도하였음. 이는 긴급한 전후복구 필요성 때문에 시작된 것임.
- 1940년대 북한 임시정권은 파견노무자 모집에 대체로 소극적이었으나 차츰 노무자 파견을 정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게 됨.
- 애초에 소련은 북한 노동자를 1년간 단기 체류하는 계절노동자로 모집하였으나 곧 2~3년간 체류하도록 정책을 수정함. 이에 따라 1947년 이후 모집된 다년 계약자들은 이전의 열악한 여건과 달리 가족을 동반할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개선된 여건 아래 일할 수 있게 됨.
- 특히, 초기 어업노무자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대체로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 출세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음. 이들은 어업 노동자로서 전문성을 갖지 못했으나 사할린 현지 체류 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장기 체류를 모색하게 되었음.
- 소련은 국경지역 안보와 부족한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라는 상충적 과제를 해결해야 함에 따라 1940년대까지는 외국인 노동자 활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으나 1950년대부터는 외국인노동자 활용을 더욱 중시하게 됨. 이에 더해 현지의 선주 한인인 무국적 주민과 북한 노동자를 구별하지 않고 노동수첩을 발행함으로써 노동자 개인에 대한 당국의 직접적 통제가 가능해짐. 이에 따라 북한 파견노동자와 선주 한인들 사이에 실생활에서 차이가 없어짐.

- 초기에 어업 분야로 한정되었던 북한 노동자들이 1950년대 초부터 임산업이나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게 되면서 집단생활에서 벗어나기 시작함. 동시에 경험이 풍부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직장과 가족의 형편에 맞춰 대도시에 개별적으로 장기체류할 수 있게 됨. 북한 노동자들이 선주 한인보다 오히려 유리한 정치·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일종의 특권적 공간이 형성됨.
- 북한은 1950년대 후반 최초로 파견됐던 노동자들이 사할린에 장기 체류하게 되자 이들을 귀환시키려 시도함. 이를 위해 소련 외교부와 지방당국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노동자들을 개별 면담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함. 결과적으로 북한 노동자 다수가 현지에 정착하게 됨.
- 당시 북한 파견노동자와 관련된 다양한 러시아 사료들을 기반으로 소련의 정책 변화, 노동자 모집 과정과 계약의 조건, 사할린 도착 후의 생활, 현지 주민과의 관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 사할린 북한 노동자 실태와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IV. 사할린 북한 노동자의 삶과 문화

- 사할린은 러시아 내 타 지역보다 개별적 일거리 청부가 많으며 노동 조건이 비교적 자유롭고 느슨한 편임. 따라서 북한에서 파견 지역으로 인기가 높음. 또한 사할린에 파견된 노동자의 자율성은 유럽이나 러시아내 타 지역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사할린 파견의 또 하나의 장점은 한인이나 조선족이 많아서 러시아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각종 식자재 보급이나 일상생활 면에서 편리한 점이 많음.

- 사할린 내 북한 노동자의 수는 2014년 통계에 의하면 2천700명이며, 2016년 현재 2천700~3천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음.
- 현재 사할린에 들어와 있는 북한 회사는 3~8개 내외로 알려져 있음. 이 회사들은 1건설, 2건설 등 숫자로 표시되는 북한 내 각 기관 산하의 여러 사업소들임. 사할린 내 북한 회사들은 러시아 정부 또는 기업들의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등록한 외국인 회사이며 실제로는 북한 내 대외건설 담당 하부조직들이 결합한 하나의 연합체로 되어있음.
- 러시아 내 북한 사업소들은 현지 상황에 맞게 조직됨에 따라 조직구성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개별 청부가 많은 사할린의 경우 사업소 내 관리자와 노동자와의 갈등이 존재함. 노동자들은 의무적으로 6개월~1년간은 집체노동 혹은 국가대상의 일을 한 뒤부터 개별적으로 청부 노동을 하게 되는데, 지배인 등 관리자들이 일감을 따내 노동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일을 시키고 수입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음.
-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할린 내 러시아 회사는 30여 개가 있으며 대개 한 사업체당 100명 정도 쿼터를 신청함. UN 제재조치의 영향과 사할린주의 주지사 교체로 건설 예산이 삭감되어 2017년에는 북한 노동자 쿼터 인원이 50% 정도 감축되었다고 함.
- 개별적인 '청부'의 경우 작업반장이 러시아 회사 관리자나 사장들에게 전화해 일거리를 구하기도 함. 작업반장들이 체류기한이 끝나 귀국하는 경우 자신과 거래한 러시아 기업 리스트를 후임자에게 인계함. 인건비는 공사마다 다름. 정해진 양식에 따른 공식 계약서가 아닌 수기 계약서를 작성하며 영수증을 주는 경우도 있음.

- 북한 노동자들의 수입은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 월 최소 453달러부터 최대 약 3천 달러까지임. 작업반장 등 하급 관리자들은 그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도 함.
- 그러나 전체적으로 수입이 낮은 노동자들도 많음. 작업 기술 외에도 러시아어 습득 유무, 청부의 유무에 따라 노동자들 간의 소득 차이가 매우 큰 편으로 3년 내내 일하고도 계획분을 제하고 나면 1~2천 달러밖에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음.
- 국가계획분(북한 노동자들이 북한 당국에 내는 상납금, 줄여서 계획분이라고도 함)은 대략 2014년까지는 매월 1만 5천 루블이었으나 루블화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2016년 현재 2만 루블(약 300달러) 정도라고 함. 그러나 관리자들은 식비, 충성자금 등의 명목으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액수의 계획분을 요구하여 800달러에 달하기도 함. 특히 청부로 나가는 노동자들에게는 회사일(국가대상 일)을 하는 노동자들보다 2배 이상의 계획분(현재 약 800~1,500달러)을 부과함.
- 노동자 숙소에서 소요되는 식재료 등은 주로 시장에서 중국 조선족들에게 구매함. 러시아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시내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출퇴근하기도 하지만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러시아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기거하거나 청부로 일하는 작업장 내에서 생활하기도 함. 단, 토요일 오후 5시경에 북한 사업소에서 진행하는 총화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북한 노동자들은 휴식을 위해 사우나를 찾기도 함. 생일의 경우 동료들과 함께 파티를 벌이기도 함. 한편 가족동반이 금지된 채 3년 이상 외국 생활을 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외로움을 호소하며, 간혹 조선족 상인들에게 조선족 여성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음.

- 북한에서 오는 노동자들의 연령이 최근 3~4년간 계속 낮아지고 있음. 최근 젊은 노동자들은 휴일이거나 일이 없을 때 3~4명씩 중국인 시장 등에서 쇼핑을 즐김.
- 노동자들은 수입이 생기면 즉시 환전상을 통해 달러로 환전해 놓음. 러시아 루블화의 환율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달러를 안전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임. 이들은 자신의 수입을 정기적으로 북한의 가족들에게 송금함. 송금 방법은 본인이나 동료가 휴가를 가면서 가족들에게 전해주거나 북한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기동수(출판물이나 우편물을 전달하는 사람을 이르는 북한어) 편에 보내는 경우가 많음.
- 러시아 내 북한사업소에서 북한으로 국가계획분 등을 송금하는 경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함. 북한은 국제제재로 인해 은행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현금을 직접 송금하는 경우가 많음. 항공편의 기술대표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러시아 정부에 발각된 적이 있음.
-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노동자들에 비해 건축 공기를 단축하려는 경향이 강함. 밤을 새워서라도 공기를 단축하는 근면성은 북한 노동자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허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도 있음.
- 최근 미숙련 노동자들이 다수 유입되면서 북한 기술자들의 공사 전문성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는 평가가 늘어나고 있음.
- 송금을 단순히 물질적인 ‘돈’만으로 보기는 어려움. 러시아 파견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이 경험한 사고방식, 행위형태, 정체성, 사회자본 등이 그대로 북한에 전파 혹은 확산되기 때문임.
- 북한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이주 노동을 갔다 온 사람들끼리만 왕래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함. 또 러시아에 다시 파견될 경우에 대비해 러시아에서 친하게 지냈던 고용주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함.

## V. 결론

- 사할린의 북한 노동자들은 역사적, 지리적, 인적, 경제적 조건 등이 다른 러시아 지역들에 비해 유리해 혜택을 누려왔음. 그러나 러시아가 UN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 노동자 관련 법제가 크게 바뀌고 있어 미래가 낙관적이지만은 않음.
- 실제로 사할린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가 북한 노동자 쿼터 인원의 축소로 나타난 바 있음.
-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감소가 핵 문제와 인권 문제로 인해 국제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으로만 보기 어려움. 사할린과 같은 극동 지역의 노동 수요는 지역 발전에 안보만큼이나 긴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임.
- 따라서 효율적인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러시아 내 각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과 맥락의 파악이 더 중요함. 또한 파견 노동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기보다 북한 사회에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사회적 송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새로운 시각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러시아 파견을 통해 보다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방식을 내면화하게 된다면 장차 통일됐을 때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이처럼 북한 노동자 해외파견의 긍정적 측면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이를 통일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함.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러시아 사할린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2014년에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해외노동자 관련 연구<sup>1)</sup>를 수행한 연구자들과 러시아 내 연구자들 및 조사 협력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해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 및 인권’에 대한 보다 실증적이며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 결과물을 냄으로써 통일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이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정권은 체제의 안정적 정착과 권력 강화, 그리고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 기반 확대, 강화를 위하여 민생과 애민, 경제 발전을 내세우고 있다. 노동자 해외파견은 북한이 수출입을 증대하고 대외경제 관계를 활발히 하는 한편 외화 획득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되는 국가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 몽골 등과 같이 전통적 우호관계에 있는 나라들로 나라마다 수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함으로써 적지 않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주의와 관련이 깊은 국가들 외에도 북한은 우호관계에 있는 중동 및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도 노동자를 파견해 외화 수입을 얻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국가별로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만 명에 달해 총 12만 명 내외의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sup>

1) 이 연구는 이애리아·이창호,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서울: 통일연구원, 2015)로 출판된 바 있다.

2) 이용희,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 정책의 추이와 전망,” 『국제통상연구』, 제21권 4호 (2016), pp. 111~137; 최영윤,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 통계데이터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2월호 (2017), pp. 101~121.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에 대한 조사는 국제 이주 노동을 둘러싼 북한의 정책적 변화 양상뿐만 아니라 해외파견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의식과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보다 객관적 시각의’ 혹은 ‘구체적 현실에 기반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의 일반적인 현황은 북한전략센터·코리아연구원(2012),<sup>3)</sup> SHIN Chang-Hoon and GO Myong-Hyun(2014),<sup>4)</sup> 윤여상(2015),<sup>5)</sup> 김석진(2015)<sup>6)</sup>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의 구체적 실태와 현황은 이영형(2007,<sup>7)</sup> 2012,<sup>8)</sup> 2016<sup>9)</sup>, 이지은(2016),<sup>10)</sup> 박찬홍(2016)<sup>11)</sup>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최근에는 폴란드의 북한 노동자 파견을 통해 본 유럽의 북한 노동자 인권 현황에 대해 언급하는 Christine Chung, Imke van Gardingen, Kim Kwang-cheol, Oh Kyuwook, Anoma van der Veere(2016)<sup>12)</sup>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들 연구를 종합해보면

3) 북한전략센터·코리아정책연구원, 『북한의 해외인력송출 실태』 (서울: 북한전략센터·코리아정책연구원, 2012).

4) SHIN Chang-Hoon and GO Myong-Hyun, *Beyond the UN COI REPORT on Human Rights in DPRK* (Seoul: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4).

5) 윤여상,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5).

6) 김석진,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5).

7) 이영형,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현황 및 그 역할 분석,” 『국제정치연구』, 제10집 2호 (2007), pp. 51~75.

8) 이영형,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서울: 통일연구원, 2012).

9) 이영형, “러시아 극동지역 내 북한노동자 활동 현황: 아무르주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26권 1호 (2016), pp. 113~143.

10) 이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자 현황-대북제재 이후, 북·러 경제협력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1) 박찬홍, 『러시아 드림: 러시아지역 북한 노동자의 근로와 인권 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6).

북한 당국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은 계약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극한 노동과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열악한 숙소 환경, 제대로 된 식사의 미제공, 적절한 휴식시간 미보장, 외출의 제한, 미흡한 의료 보장 시스템 등이 중요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파견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대부분을 북한 당국에 직·간접적 방법으로 (강제) 상납함으로써 실제로는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인권의 개선을 촉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논의의 주요 근거로 해외파견 노동자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이들이 해당 현장을 떠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가 많으며 김정은 시대 들어 해외파견 근무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거의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들의 증언이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에 탈북한 북한 노동자가 인터뷰에 응하는 경우 자신의 노동 경험을 객관화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일부 언론의 현장 르포 기사 등을 통해서도 이들의 존재가 간헐적으로 소개되지만, 특정 측면만을 부각해 보도하는 경우가 많음을 생각할 때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sup>13)</sup> 일부 연구자

<sup>12)</sup> Marte Boonen, Klara Boonstra, Remco Breuker(P.I.), Christine Chung, Imke van Gardingen, Kim Kwang-cheol, Oh Kyuwook, Anoma van der Veere, "North Korean Forced Labour in The EU, The Polish Case: How The Supply of A Captive DPRK Workforce Fits Our Demand for Cheap Labour," (Leiden: Leiden Asia Centre, 2016).

<sup>13)</sup> 이에리아·이창호,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은 현지조사에 입각한

I
II
III
IV
V

들의 유사 연구 결과<sup>14)</sup>가 간혹 발표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에서 송출된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 중 사할린 지역을 현지조사하고 역사사료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러시아의 타 지역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파견 노동의 다양한 조건들 가운데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의 삶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의 사할린 지역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사할린 한인의 과거 강제 동원과 귀환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sup>15)</sup> 지역학적 연구와 경제 등을 다루는 주제 중심의 접근들이 있지만 20세기 이래 북한 노동자에 집중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사할린을 러시아 극동지역 가운데 일부로만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할린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고찰하고 국내 연구자들이 접촉하기 어려운 사할린 내 북한 노동자들과 고용인 등을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심층 인터뷰함으로써 밀도 있는 연구를 시도했다.

연구의 분석에 있어서도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여러 사항을 언론의 르포 기사처럼 폭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입각해 평가하는 체계적 연구를

---

보다 실증적인 연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연해주 한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어 연구의 확장이 필요하다.

14) 대표적으로는 김윤영·유시은, “중국 내 비자 방문 북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경험과 의식 변화,” 『다문화와 평화』, 제10권 1호 (2016), pp. 50~71이 있다. 중국에 체류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인터뷰한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연구이다.

15) 관련된 주요 연구사는 방일권, “한국과 러시아의 사할린 한인 연구: 연구사의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제38호 (2012), pp. 363~413.

시도하였다. 특히, 각 사회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 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비교·분석하는 비교문화적, 역사적, 북한학적 연구를 시도했으며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정부(해당국 주재 대사관 포함)와 시민사회, 현지 교민사회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정책적 연구를 지향하였다.

## 2.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의 주요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의 선발과정부터 입국 및 정착, 귀국, 재송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분석한다. 둘째,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내부 조직과 임금체계 및 송금 과정 등을 파악한다. 셋째,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는 작업장과 숙소의 공간 구성 및 일과, 내부·외부의 사회적 연결망 및 인식의 변화 등 생활 실태 전반을 분석한다. 넷째, 북한 내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및 생활환경, 그들이 겪는 인권 문제를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그것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통점 및 차이점을 도출한다. 다섯째, 북한에서 파견한 노동자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 및 집행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가 북한에서 선발되어 러시아 사할린에 입국하고 정착해 일을 한 뒤 귀향하기까지의 과정에는 일반적인 이주노동자가 거치는 과정과 유사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 노동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기존 입장에서는 이를 노예제와 강제노동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세밀하게 이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북한 노동

I

II

III

IV

V

자 유입국인 러시아의 인력 수급 정책 및 집행과정과 연계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노동 송출국이었던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 재편의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북한 노동자들의 일상생활 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해 사할린이라는 지역의 특수성과 러시아라고 하는 보편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북한 노동자들은 해외에서도 회사 혹은 사업소 형식의 북한 조직체 안에 소속되며, (국가)계획분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 노동자들은 ‘청부’라고 불리는 본업 외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수입을 확보하고 모국의 가족에게 송금하기도 한다. 사할린에서 나타나는 ‘청부’는 러시아 내 다른 지역의 그것과 많이 다르다. 즉, 러시아 중부의 크라스노야르스크나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와 달리 사할린은 집체노동보다 개별적인 청부가 많다. 이 경우 러시아 내 타 지역의 노동자들에 비해 더 많은 자율성을 갖게 되고 그것이 사고방식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또 작업장이나 숙소, 일상생활 모습도 지역적 특성과 작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의 청부 노동 전 과정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사업주 혹은 집주인과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할린의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의 감시체계 속에서도 내부인 뿐 아니라 현지인 및 한인·조선족 등 재외 한인들과도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것은 북한 노동자들이 사할린 파견을 통해 새로운 노동의 기회를 가질 뿐 아니라 자신의 사회와 비교하고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보기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관계와 그에 따른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도 심층적 인터뷰 등을 통해 자세히 고찰하고자 하였

다. 이로써 모국의 북한 주민들과 달리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에게 보다 각별할 수밖에 없는 일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인권 문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접근방법은 연구진이 가진 의문에 답을 얻기 위하여 의도된 것이었다. 그 의문은 왜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뿐 아니라 생활과 인권 측면의 열악함, 그리고 파견국 현지의 현실을 목도한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사상적 동요 속에서도 이탈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감시와 통제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다른 요인들로부터 단서를 얻을 수 있어야 오늘날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삶을 입체감 있게 조명함으로써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방법과 과정

연구의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 현지 연구자 및 재외한인, 신뢰할 수 있는 조사 협력자들과 협력적인 연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참여 관찰 및 면담을 수행하였다. 둘째, 현지 실무 문서자료와 사료를 수집해 분석하였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분석하고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인 연구진이 북한 주민들을 직접 접촉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연구자와 재외한인 연구자를 공동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해당 지역 북한 노동자들의 일상을 직·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러시아 극동지역에 위치한 각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 및 재외한인은 같은 지역에 나와 있는 북한 건설 노동자들의 일상을 비교적 신속하고 지역사회 맥락에 맞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러시아 기업 및 지방정부를 통해 북한 측과 체결한 과거와 현재의 계약서 사본을 비롯한 다양한 사료도 입수함으로써 이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일상생활 환경이 어떠한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동시에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출신 북한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분석하고 관련된 문헌을 연구함으로써 본 연구의 논리성 및 현실 적합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러시아 사할린 지역을 중심으로 2016년 4~12월까지 여러 차례 진행한 현지조사는 본 연구의 큰 밑거름이었다. 이애리아가 2016년 5월 29일 1차 조사(연해주도 함께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이창호와 방일권이 7월 10일~17일까지 2차로 조사했고, 다시 3차로 이애리아가 11월 10일~17일(연해주도 함께 조사)에, 이창호가 11월 11일~18일, 방일권이 11월 13일~19일에 걸쳐 조사했다. 1차 현지조사 이후 탈북 노동자에 대한 인터뷰와 문헌조사를 거쳤으며 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연구자들이 직접 대면해 조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할린 한인<sup>16)</sup>과 연해주 러시아협력자에게 부탁하여 북한 노동자들의 공사 전 과정에 참여해 녹취하도록 했으며, 이를 현장과 대조해가면서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 등장하는 인터뷰 대상자들은 신분 보호를 위해 모두가명으로 처리했으며, 수록된 사진들은 출처표기가 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구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들임을 밝힌다.

---

<sup>16)</sup> 사할린 ‘한인’의 개념 및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4절의 연구지역 개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들과 구분되어 1989년 개방이후 한국에서 사할린으로 건너온 한국인은 ‘재사할린 한국인’ 혹은 ‘교민’이라 불리고 있다.



## 4. 연구지역 개관

### 가. 사할린 개관: 지역과 역사

사할린(Sakhalin, Сахалин)은 북위 45°50'~54°24' 사이에 펼쳐진 섬이다. 러시아 극동 타타르 해협의 동쪽,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북쪽에 위치하며 오호츠크 해와 동해에 둘러싸여 있다. 남북 길이 948km, 너비 25~170km의 길쭉한 모양이며 섬 면적 76,400km<sup>2</sup>로 세계에서 19번째로 크다. 남북으로 뻗은 두 개의 사할린산맥 사이로 섬의 약 1/3을 차지하는 평야 지대가 자리한다. 오호츠크 해의 찬 고기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북부는 툰드라 지대로 겨울이 길어 통상 10월~5월까지가 동계기간으로 간주되며, 1월 평균기온이 영하 24℃까지 내려간다. 상대적으로 온화한 남부 지역은 1월 평균기온이 영하 6℃ 정도이다. 채소류 중심의 농사가 가능하지만 전 섬에서 기후 여건 상 곡류는 생산되지 않는다. 연평균 강우량은 600~1,200mm이며 강우량의 상당부분을 눈이 차지한다.

그림 I-1 사할린주의 위치



자료: 위키백과, <<http://ru.wikipedia.org>>. (검색일: 2016.12.14.).

I

II

III

IV

V

1946년 이래 쿠릴열도와 더불어 러시아공화국의 사할린주(州)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른다. 사할린은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섬으로 구성된 주로 2016년 초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는 48만 7천 명 가량에 불과해 인구밀도가 5.59명/k㎡이다. 전체적으로 인구 부족 현상이 심하지만 도시인구 거주율은 81.56%에 달하며 특히 주도(州都)인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인구가 19만 4천여 명으로 주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한다. 주도를 포함하여 사할린주는 17개 도시 21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도시로 홈스크(인구 3만 7천 명), 코르사코프(인구 3만 3천 명) 등이 꼽힌다.

민족 구성을 살펴보면 러시아인이 86.5%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그 뒤를 2만 6천400명의 한인(5.3%)이 차지하고 있다. 사할린의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북방 소수민족은 우크라이나인(2.6%)과 타타르인(1%) 보다 훨씬 적다. 그나마 2천 명 가량인 니브흐인이 가장 많고 율타, 예벤키, 나나이, 오로크 등의 개별 소수민족들의 수는 모두 300명을 넘지 못한다. 수많은 사할린 지명의 유래와 관련이 깊은 원정착민이라 할 수 있는 아이누인은 그 수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사실상 오늘날의 사할린 섬은 외부 민족들에 점령된 섬이다.

사할린이라는 명칭은 몽골-타타르인과 관련이 있다. 13~14세기에 사할린을 지배한 몽골인들은 아무르강(黑龍江)을 ‘사할란-올라’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강 하구 지역에 위치한 이 땅을 ‘검은 강으로 들어가는 바위’라고 지칭했던 것이다. 중국은 이 땅에 ‘구웨이(骨嵬, 元代)’ 혹은 ‘쿠예(庫頁, 明代)’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일본에서는 사할린을 가라후토(樺太), 혹은 북에조(北蝦夷)로 불러왔는데 가라후토란 아이누식의 명칭을 차용한 것이다. 홋카이도의 옛 이름이 아이누의 다른 이름인 ‘에조’였다는 점에서 아이누인들이 이 섬에 정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할린이라는 타타르식 지명은 1737년 파리에서 발간된 지도에서 ‘사찰린엔 앙가-하타(Sachalien anga-hata)’라는 표기를 통해 서구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물론 17세기 초에도 일본과 러시아 모두 사할린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탐험을 실시해 지도를 제작하기도 했다. 하지만 1650년대에 아무르강 일대를 확실히 장악한 청의 개입으로 러시아와 일본은 사할린을 개발할 수 없었고 관련된 정보 역시 과학적이거나 치밀하지 못한 상태였다.

18세기 초에 조직적으로 동부 시베리아 지역을 탐험한 러시아는 1799년에 설립된 러시아-아메리카 회사를 통해 태평양 북부의 러시아 식민지 획득과 개발을 본격화했다. 러시아의 사할린 조사도 본격화되어 1849년에는 러시아인 해군장교이자 탐험가 네벨스코이(Г.И. Невельской)가 사할린이 섬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냈다. 관련 지도를 생산했던 네벨스코이는 ‘초카(Чека)’ 등으로 러시아 상류층이 지칭했던 명칭 대신 사할린을 공식적인 지명으로 채택하였다. 네벨스코이보다 앞서 1808년에 일본인 탐험가 마미야 린조(間宮林藏)가 ‘가라후토’가 섬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그의 출판물은 유럽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19세기 이래로 일본과 제정 러시아간에는 사할린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양국은 1차로 1855년의 시모다(下田) 조약을 통해 사할린을 공동관리 지역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평화 공존이 정착되지 않자 2차 협의를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갖고 조약을 통해 사할린을 러시아의 영토로 하는 대신 쿠릴열도를 일본령으로 인정함으로써 공존을 모색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1905년 9월의 포츠머스 강화회의를 통해 북위 50도 이하의 남부 사할린을 할양받게 되었다. 이후 1945년 8월 패전까지 일본은 남사할린과 쿠릴지역까지 지배하였다.

I
II
III
IV
V

러시아와 일본의 분쟁 요인으로 사할린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더불어 풍부한 천연자원을 꼽을 수 있다.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사할린과 태평양이 만나는 쿠릴열도의 바다는 세계적 어장이다. 19세기까지 원주민들과 일본 이주민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였다. 19세기 후반에는 여기에 더하여 석탄과 산림 자원이 주목을 받았다.

제정 러시아 정부는 1852년 보슈냐크(Большаяк)의 탄전(炭田) 발견을 계기로 1853년에 러시아-아메리카 회사에 진출령을 내리고, 적극적인 자원 탐사에 나서는 등 초기 주도권을 잡는 듯했다. 하지만 개발 이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자국민의 자발적 이주가 지지부진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러시아는 섬의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1869년에 이 섬을 유배지로 공포하고 유형자 및 그 가족들이 함께 정착토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sup>17)</sup> 러일전쟁 이전까지 이렇게 유입된 사할린의 인구는 4만 명 이상이었다.

1905년에 포츠머스 조약에 따라 ‘검은 강의 입구’로 불렸던 땅은 북부의 사할린과 남부의 가라후토로 양분된다. 일본이 할양받은 남사할린은 동경 144°55'~141°51', 북위 45°54'~50°에 걸친 남북의 길이 455.6km, 면적 36,090km<sup>2</sup>의 규모였다. 홋카이도 면적의 약 40%에 불과했지만 지리적 위치나 자원 분포, 그리고 함께 영유한 쿠릴지역까지의 전략적 가치는 북사할린을 압도했다.

남사할린을 할양받은 일본은 1906년의 철도 부설을 시작으로 1907년에 도요하라(豊原)에 가라후토청(樺太廳, 화태청)을 설치하였다. 화태청은 행정의 주축이었을 뿐 아니라 임업, 제지, 석탄업, 어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식민지 개발의 전진 기지였다.

---

<sup>17)</sup> 안톤 체호프의 작품 『사할린 섬』은 바로 이 시기에 죄수들이 가혹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작가가 ‘유형지 사할린’의 실상을 알리겠다는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실행된 1890년의 여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은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의 혼란과 내전으로 중앙의 통제권이 극동 지역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1920년에 북부 사할린을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다. 즉 일본은 1920년의 니콜라옌스크-나 아무레 사건<sup>18)</sup>을 구실로 자국민의 보호와 공산혁명 세력 확장 억제를 표방한 간섭군으로 참여하면서 북부 사할린까지 차지하고 자원, 특히 유전 개발에 나서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였던 것이다. 내전에서 승리한 소련은 1925년에 맺은 ‘소일기본조약’을 통해 북사할린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사할린 북부의 석유채굴권을 45년간 일본에 양도한다는 조항을 받아들여야 하였다.

## 나. 사할린<sup>19)</sup>과 한인

러시아인들에게 있어 사할린은 어둠의 섬, 유형지, 1905년 전쟁의 패배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중첩되는 ‘세상의 끝’이었지만 남부의 ‘작나무 섬(樺太, 가라후토)’에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인구 유입 정책,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려는 일본 산업가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일본 산업 시설과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가라후토의 인구 역시 급성장했다. 1906년에 1만 2천 명에 불과했던 일본인 주민의 수는

<sup>18)</sup> 1920년 2~3월에 러시아 소비에트연방의 붉은 군대가 하바롭스크 지방 니콜라옌스크-나 아무레에 출병한 일본군과 격돌했던 전투를 말한다. 붉은 군대는 일본군을 전멸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인과 러시아 주민 수백 명도 학살되었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B%88%EC%BD%9C%EB%9D%BC%EC%98%99%EC%8A%A4%ED%81%AC\\_%EC%82%AC%EA%B1%B4](https://ko.wikipedia.org/wiki/%EB%8B%88%EC%BD%9C%EB%9D%BC%EC%98%99%EC%8A%A4%ED%81%AC_%EC%82%AC%EA%B1%B4)>. (검색일: 2016.12.19.)을 참조.

<sup>19)</sup> 사할린(Сахалин)은 러시아식 표기로 일본인들은 이를 가라후토(樺太)로 불렀고, 조선인들은 한자음 그대로 ‘화태’로 칭했다. 본 글은 남사할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지리적 명칭을 ‘(남)사할린’으로 통일하는 것이 편리하겠으나 부르는 방식이 특정 시대와 입장을 대변하거나, 가령 ‘가라후토 시대’ 처럼 고유명사화된 경우도 있어 통일하기보다는 (남)사할린, 화태, 가라후토 등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6년 만에 4만 2천여 명으로 3.5배나 늘어났고, 다시 세 배가 되기까지도 10년 밖에 걸리지 않아서 1923년경 남부 사할린의 인구는 약 14만 명에 달했으며 1940년에는 38만 명을 돌파했다. 가라후토 개척을 둘러싼 인구 유입에는 점차 한인들도 포함된다.

처음 한인(조선인)이 사할린에 들어온 시기는 1870~1880년대로 추정되고 있다. 기록상으로는 1897년 전체 러시아 인구조사에 기록된 67명이 최초이고 이 중 53명이 어업 종사자였다.<sup>20)</sup> 이들 한인의 생활은 1890년에 사할린을 방문한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안톤 체호프의 기록을 통해 단편적이거나 짐작이 가능하다. 마우카에 들렀을 때 러시아인 사업가 세묘노프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한인들을 목격한 체호프는 ‘만자(우수리 지역의 중국인)와 러시아인’과 더불어 한인, 중국인, 아이누인 700여 명이 1880년부터 마우카의 해조류 채취권을 받은 러시아 회사에 소속돼 다시마 채취작업에 동원됐다고 썼다.<sup>21)</sup> 체호프는 또 해조류 채취 사업에 동원된 이주유형수들의 3월 한 달 수입을 “150~200 루블까지로… 꽤 쓸쓸한 벌이”라고 기록해 한인 노동자들의 수입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당시부터 사할린 지역의 계절노동시장이 다민족적 구성에 고임금의 구조였음을 보여주는데, 계절노동 수입은 당시 다른 유형수들의 ‘평균소득 총계가 29루블 21코페िका’였음과 비교할 때 대여섯 배에 달한다.<sup>22)</sup> 사할린에서 한인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이 지역에서 노동력 수요가 커지는데 따른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sup>20)</sup>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Gosudarstvennyi Istoricheskii Arkhiv Sakhalinskoi Oblasti, 국립사할린주 역사기록보존소, Фонд(F). 1038, Опись(Op). 1, Дело(D). 26, Листы(LL), pp. 98~100.

<sup>21)</sup>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 지음, 배대화 옮김, 『안톤 체호프 사할린 섬』 (서울: 동북아 역사재단, 2013), pp. 301, 414, 514.

<sup>22)</sup> 위의 책, p. 415.

러시아 혁명 이후에도 한인들은 북사할린에 거주하고 있었다. 1923년에 1천431명이었던 북사할린의 한인은 1931년에 1천76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조치에 따라 1천150여 명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함으로써 사실상 북사할린에서 발자취가 사라졌다.

한편 일본의 러일전쟁 승리를 계기로 사할린은 비로소 조선에 널리 알려진다. 1905년 북위 50도 이남의 남사할린을 할양받은 일본은 1906년 철도 부설을 시작으로 식민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산업가들을 지원하는 한편 적극적인 인구유입정책을 펴나갔다. 이에 부응하여 1920년대에는 ‘화태’를 높은 임금과 ‘기회의 땅’으로 묘사하는 언론 보도들이 나타나 조선인들에게도 알려진 것이다. 조선인들에게 섬의 이름이 러시아 지명인 사할린이 아니라 일본식 ‘가라후토’의 한자 독음(讀音)인 ‘화태(樺太)’로 알려진 것도 이런 연유에서였다.

남사할린 지역에서 조선인은 일본의 식민정책에 의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농업, 어업, 제지 및 석탄 채굴의 분야에서 일하였다. 1920년에 934명이었던 조선인의 수는 1925년에 3천200여 명, 1934년에 5천 813명으로 늘었고, 1938년에 7천625명으로 급증하였다.<sup>23)</sup> 이 시기에 이주한 조선인은 대체적으로 사할린에서의 경제적 성공을 꿈꾸며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1938년 4월 이후 일제의 총동원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동원된 조선인들과는 차이가 있다.

1937년에 시작한 중일전쟁을 매듭짓지 못한 상태에서 1941년에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킨 일제는 일본인 청년 대다수를 전장으로 동원함으로써 발생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에 직면했다. 그 대책으로 일제는 국가총동원 체제를 점차 강화하였다.

<sup>23)</sup>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편, 『검은대륙으로 끌려간 조선인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6), p. 310.

1939년에 본격화되어 1945년까지 강제적인 성격을 띠면서 확대되어 갔던 국가총동원 정책을 통해 일제는 30곳이 넘는 사할린의 탄광, 삼림 및 제지 분야, 토목공사현장 등으로 조선인들을 동원하여 군수물자 생산과 군사시설 건설을 위한 노역을 강요하였다. 동원은 형식적으로 약 2년간의 기한과 임금을 약속하는 계약의 형태였고, 그 주체도 국가기관이 아니라 일본 기업의 모집인 등 민간에 의한 자발적 성격을 가졌다. 하지만 실제 인력 모집과정을 보면 조선총독부에 대한 모집 활동 신고와 지역 관리의 적극적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고 모집에 응하지 않으면 공출이나 식량배급 등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배경이 된 실질적인 강제 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에도 사할린의 한인들은 일제의 강제적 인력동원을 ‘강제모집’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동원된 조선인은 한반도 남부 출신이 대다수였고, 청년 남성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자발적 이주자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남사할린의 조선인 동원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 재무국 자료에 따르면 1939~1943년 사이에 1만 6천113명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을 직종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탄광업에 65.2%(1만 509명), 토목 건축에 약 33.6%, 금속광산에 약 1.2%가 배치되었다.

남사할린은 탄전의 면적이 넓고 석탄 매장량도 풍부하며, 탄의 질 역시 우수하였다. 1930년대 중반 일본의 경기가 살아난 데다 중일전쟁의 발발로 석탄은 에너지원으로서만이 아니라 철광 산업의 주요 재료로서 그 수요가 급증했다. 1935년 조사 결과 매장 추정량 약 15억 7천만 톤, 미조사 구역을 가산할 때 전체 약 26억 톤으로 추산되던 남사할린의 석탄 매장량은 북해도의 매장추정량 36억 톤에는 미치지 못하나 대부분 역청탄으로 열량이 높고 점결성이 강하여 제철용 코크스로 적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게다가 화태청은 남사할린 지역이 석탄 수송과 노동자 임금 등의 문제로 적정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1940년부터 거대 기업의 진출을 유인하는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여기에는 석탄 신갱(新坑) 개발조성금을 비롯해 석탄 증산 장려금과 석탄 매입가격 보상금까지 있었다. 기업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호조건이었다. 이로써 사할린 탄전의 개발이 활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탄전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이 강제동원 등의 방식을 통해 해결된 것이다.

일본 통치하의 남사할린에서 가동된 탄광은 56개였는데, 이 중에는 미쓰비시(三菱), 미쓰이(三井), 닛테쓰(日鐵), 오지(王子)제지 계열 등 대자본이 운영한 사업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가동된 탄광 중 35개 작업장에서 조선인 동원이 확인되는데, 이들 작업장의 분포를 보면 약 2/3가 남사할린 서해안 북부탄전에 집중되어 있다.

조선인들은 탄광뿐만 아니라 각지의 토목건축 현장으로도 동원되었다. 비행장, 군용도로 등 군사시설 공사를 위한 토목공사장은 엄격한 관리 감독 아래 노동 조건이 가혹했다.

또한 오지제지의 펄프공장 및 이에 딸린 벌목장에도 많은 조선인들이 동원된 것이 확인된다. 사할린 근해의 풍부한 어종으로 전통적인 유망 산업으로 분류되었던 수산업은 일본의 무계획적인 남획과 식민지 개발 과정에서 1920년대 중반 이후 어업자원 고갈이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화태청은 임업 분야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남사할린의 전체 면적의 70~80%가 삼림으로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등이 주를 이루었다. 여기서 선두에 선 회사가 바로 오지(王子)제지였다.

오지제지의 위력은 남사할린을 오지 왕국이라고 불렀을 만큼 막강했다. 1945년까지 모두 9개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일본 양지(洋紙)의 상당 부분을 생산했던 이 회사는 거대한 공장들과 펄프 공급을 위한 수많은 벌목장과 하청업체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더 나아가 펄프 생산에

소요되는 연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직접 탄광들을 운영하는 한편 제품 운송을 위한 소규모 부두 건설이나 각 작업장을 잇는 철도 건설 등 토목 분야에도 참여했다. 남사할린의 풍부한 부존자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며 문어발식의 팽창을 계속했던 대표적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전시동원 체제에서 조선인들은 대체로 위험한 노동환경과 일본인 감독의 폭력, 경험부족 탓에 잦은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계약의 형식을 띠었던 노동 기한이나 임금 지급에서도 당초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 중에서 미군의 강화되는 공세로 사할린의 자원을 본토로 수송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일본이 1944년에 약 3천 명의 조선인 탄광노무자를 일본의 규슈(九州) 등으로 전환 배치함으로써 해방 후 재이산(再離散)의 아픔을 낳는 원인이 되었던, 이른바 ‘이중징용 사건’은 유명하다. 총동원 체제의 사업장에서 회사 측이 노무자들의 도망 방지를 목적으로 저금을 강요하며 보관하였던 저금통장의 임금은 해방과 함께 지불되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미결 과제로 남아있다. 최근에는 소련의 재판 기록을 통해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 상황에서 발생한 조선인의 집단학살 피해들도 드러났는데 그 대표적 사건이 가미시 스카(上敷香, 현재의 레오니도보)와 미즈호(瑞穂, 현재의 포자르스코예)촌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이다.

1945년 해방 당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할린에 잔류된 한인은 2만 5천 명에서 4만 3천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일제 패전으로 소련이 획득한 영토이자 국경 지역에 자리하게 된 사할린의 한인은 1946년 초까지 군의 직접적 통제 아래 있었으나, 이후 민간인 관리 행정기구인 민정국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되었다.

조선인들이 가라후토로 건너간 목적과 시기는 달랐으나 일본의 패전 이후 ‘한반도 출신자’들은 귀환 문제에서만큼은 완전히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 일본인들의 경우는 1946년 12월에 성립된 ‘소련 지역에서의 철수에 대한 미소협정’과 1956년 10월 19일의 ‘소일공동선언’을 비롯해 이후 몇 차례에 걸친 ‘인양’의 과정을 통해 약 30만 명에 이르는 거의 모든 일본인들이 철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인의 경우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1천 명 미만이 일본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 뿐 거의 전원에게 철수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일본은 1943년 카이로 선언에 따라 조선인은 일본 국적에서 벗어났다는 입장을 취했고, 1952년 4월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한국과 대만인은 모두 일본 국적을 상실했다’고 공식 천명하였다.

승전국들 역시 전후 사할린 한인의 귀환 문제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7백만 명 이상의 귀환업무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점령군 총사령부(GHQ) 역시 일본과 협조하면서 그 정보까지 그대로 수용하는 무책임함을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1946년의 미소 협정에서 귀환해당자는 ‘일본국적자(Japanese Nationals)’로 규정되어 당시까지 통상적으로 일본인으로 여겨졌던 사할린의 한인들을 제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막대한 희생자를 낸 소련은 한 때 북한을 통한 한인의 귀환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전후 재건을 위한 노동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와 6.25 한국전쟁의 시작 등에 막혀 결국 귀환계획을 실현시키지 못했다.

남사할린에서 일본을 몰아낸 후 소련은 일제시대 탄광이나 제지공장 등 주요 산업 시설에서 일본식 운영 방식과 노동력을 가능한 유지하면서 소련식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했다.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한인들의 경우는 소련 시절에도 옛 작업장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옛 작업장은 소련 시기에 들어 새로운 명칭이 부여되고 직제가 개편되었으며, 본토로부터 사할린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이 요직에 임명되었다.

I
II
III
IV
V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이 대다수를 이룬 본토로부터의 이주자들은 대개 일본인들이 떠난 집과 일터에 자리를 잡았다. 이주한 본토 소련인들 중에는 1937년 스탈린에 의한 강제이주 조치로 중앙아시아에 정착했던 한인들도 포함되었다. ‘큰땅배기’라고 불린 이들 소련 한인들은 사할린에서 교육과 선전, 산업 관리 등 각 부문에서 지도적인 자리에 배치되었다. 소련 한인들에 이어 1946년에는 한반도 북부에서 노동계약으로 모집된 노동자의 일부가 사할린에 배치되었다.

이로써 1945년 말 이후 소비에트 체제에서 사할린의 한인 사회는 세 부류의 한인들로 재편되었다. 일제시대에 들어온 ‘조선인(선주[先住] 한인)’과 새로운 사회건설의 지도자로서 파견된 중앙아시아 출신의 ‘소비에트 한인’ 및 1946~1948년 사이에 노동 계약에 따라 북한에서 들어온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한반도 북부 출신자는 외국인으로 관리되었으며 특히 수산업 분야에 대거 투입됐다.

세 부류의 사할린 한인들 사이에 갈등도 나타났다. 무국적을 고집하며 남한으로의 귀환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선주 한인들은 1950년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 휴전으로 종결되고 뒤이어 1956년 소련과 일본의 수교 이후 일본인만 그 잔류자까지 모두 귀환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다. 일부는 가능해진 소련 국적 취득을 통해 자녀 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련식 생활방식에 적응하기도 했지만 강화되는 국적 취득의 압박 속에서도 귀환의 꿈을 놓지 않았던 이들 중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알려진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여 북한 국적을 취득한 일부 한인 중에는 북한행을 택한 사람도 나타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무국적을 유지하면서 러시아인과 결혼하거나 자녀교육 등의 동기로 소련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이 늘어났다.<sup>24)</sup> 이로써 사할린은 한국인에게 ‘강제동원과 미귀환의 한’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각인되었다.

해방 이후 냉전기에 사할린 한인 귀환시키려는 노력은 일본에서 박노학(朴魯學) 등이 결성(1958년)한 ‘화태역류귀환자동맹’과 한국의 중소이산가족회(1970년 설립) 등 민간 활동과 일부 일본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까지 이데올로기적인 벽에 막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83년 9월에는 대한항공 007기가 모네훈 섬 인근에서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어 269명 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된 바 있었다.

사할린 한인의 귀국길이 열린 것은 1990년 소련과 국교가 수립되면서 부터이다. 물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회로 일부 사할린 한인의 모국 방문이 최초로 이루어졌고, 이듬해에는 한일 적십자간에 ‘사할린 거주 한국인 재회지원 공동사업체’가 결성되어 일시 방문 및 영주귀국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 한소 수교 이후에야 한국의 친척이나 민간단체가 수용하는 소수 고령자들만이 영주귀국했을 뿐이다.

이후 사할린 한인에 대한 일본 측의 인도적 지원 결정(1994년)에 따라 합의된 영주귀국 시범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그 대표적 결과가 바로 2000년의 안산 고향마을 임대아파트로의 영주귀국 사업이었다. 이렇게 본격화된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 한인 1세대의 영주귀국사업은 2015년까지 24개 지구에 한인 4천 명 이상을 귀국, 정착시켰다.

#### 다. 사할린의 경제 현황

2015년에 전임 주지사(호로샤빈 A.)가 부패 혐의로 경질되고 전(前)

<sup>24)</sup> 법적으로 임시거주자 신분이었던 한인들이 소련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 때는 1952년이다.

아무르주지사였던 코제마코가 2015년 9월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사할린주 사상 최고 지지율(67.8%)로 당선되어 신임 주지사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각종 개혁과 연이은 인적 쇄신을 진행 중이다. 신임 주지사는 주요 도시와 각종 인프라 분야의 면모 개선에 관심이 많아 2016년 내내 수많은 건설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사할린주는 대규모 대륙붕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힘입어 극동지역에서 재정적, 경제적으로 가장 건실한 지역이며, 지방정부 평가 순위에서도 상위를 차지한다. 2014년을 기준으로 지역총생산(GRP)은 7천 935억 루블(124억 달러)이었고, 1인당 GRP는 162만 루블(2.5만 달러)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5년에 6만 1천215루블(약 960달러)로 나타나 러시아의 전반적인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할린주 경제는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석유·가스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수산업, 광업(석탄), 농업, 서비스업 등도 주요 산업 분야를 구성한다. 먼저 사할린주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석유·가스 산업 부문은 대륙붕 유전·가스전(현재 사할린-1,2,3프로젝트) 개발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한다.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7%로 압도적일뿐 아니라 주요 석유 메이저를 비롯해 유럽과 미국, 동남아 지역까지 많은 외국 노동자들이 활동하는 분야이다. 사할린 대륙붕에는 원유 3억 9천400만 톤, 천연가스 1.19조 $m^3$ , 8천850만 톤의 가스 생성물 등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탐사가 실시된 18개 유전·가스전 중 10개가 경제성이 있는 매장지로 확인되었다. 2015년 1천670만 톤의 원유 및 원유생성물과 284억 $m^3$ 의 천연가스를 생산하였으며, 사할린-2 프로젝트 LNG 생산량은 1천80만 톤이었다.

수산업은 사할린주 산업생산의 3.96%를 담당함으로써 석유가스 부문 다음으로 비중 있는 부문이다. 사할린주는 자체적으로 수산물거래

소를 개설, 운영 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극동수산물클러스터 대상지로 선정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수산업은 단기간 계절 노동력의 수요를 창출하는 주요 분야인데다 수산물 어획량이 연간 1백만 톤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당분간 계절 노동력 유입원으로서의 위력 역시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주요한 산업이었던 광업은 특히 석탄 채굴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사할린은 러시아 지방 중 석탄 매장량 순위에서 12위를 차지하며, 연간 500만 톤 내외를 생산해 국내외로 공급한다. 2015년 석탄 생산량은 548만 톤으로 전년도 생산량보다 94만 톤이 증가했는데,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54.6만 톤), 한국(28.9만 톤), 중국(18.4만 톤) 등의 순서다.

이와 같이 사할린주는 경제 견인차 역할을 하는 에너지, 자원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지역이며, 지난 수년간 이어온 국내의 투자 유치 부문에서 극동지역 내 선두적 지위를 차지하였다.<sup>25)</sup> 특히 2016년 3월에는 2곳의 선도개발구역(농업 특화 ‘유즈나야’와 관광 특화 ‘고르니 보즈두흐’)이 지정 승인되어 경제다변화 기반을 구축하였고,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 개정으로 사할린주의 항만 개발 가속화도 기대되고 있다.

2015년도 대외교역 규모는 126.7억 달러로 나타났고, 주요교역국은 일본(60.4억 달러), 한국(46.3억 달러), 중국(9.8억 달러), 미국(3.5억 달러)의 순이었다. 북한 역시 이 지역과 10만 달러 이상 규모의 교역을 하고 있으나 최근 대북제재로 감소 추세가 예상되고 있다.

<sup>25)</sup> 2013년 대(對) 사할린주 외국인 투자액은 29억 2천600만 달러로 극동지역 투자의 49%를 차지했다.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이 대륙붕 유가스전 개발에 집중되었으며,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 영국, 일본 등이다.

I
II
III
IV
V





## II.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에 대한 이해





본 장에서는 러시아 사할린 지역 북한 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보고에 앞서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현황을 우선 파악하고자 한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파견 절차 및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실제 러시아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원현황 및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지 않은 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내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노동 환경에서 어떤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특정 지역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사할린은 독립적인 경제 및 외교 운영 주체가 아니라 극동이라는 지역의 일부다. 북한 역시 러시아와 극동의 다양한 외교, 경제 주체들과의 협의와 각종 인프라를 활용하며 사할린까지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이다.

## 1.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파견 현황

### 가.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파견 절차 및 규정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은 기본적으로 2007년 8월 31일에 체결된 <북·러 한시적 근로 활동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부터 현재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 선발은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6촌 이내 정치범·경제사범이 없어야 하며, 출국 전 5년간 정치 행사 참여가 확인되고, 최근 5년간 거주지 생활이 확인되며, 기술 자격증 및 신체검사 자격증을 지녀야 하는 등이다.

파견 인원수는 양국이 주기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 정원을 의미하는 쿼터를 조정해 정한다. 쿼터 조정과정에서 중앙으로부터 북한 노동자 쿼터가 결정되어 내려오면 러시아 연방이민청 관리들이 북한 회사에 절반 정도로 줄여서 알려준다고 한다. 그러면 북한 측 사장이 들어가

I

II

III

IV

V

쿼터를 늘리기 위한 협상을 하면서 러시아 관리들에게 쿼터 일인당 100~150달러 정도를 뇌물로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 회사 사장이 돌아와 추가로 쿼터를 받아왔다고 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그 이상의 돈을 노동자들에게 걷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sup>26)</sup>

러시아 내 북한 회사들에 대한 관리는 아무르와 노보시비르스크지역은 하바롭스크에 위치한 북한 경제대표부에서,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모스크바 일대까지는 주러 북한 대사관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노동자 파견의 역사가 긴 만큼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나와 있는 연해주 일대의 관장은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이 담당한다. 러시아 극동개발부의 장관은 북한 노동자들을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제어하기 쉬운 노동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 회사와 러시아 기업 간에 체결되는 북한 노동자 파견계약은 표준화된 고용계약 없이 이뤄지고 있다. 북한 노동자는 북한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러시아 기업과 북한 회사 사이에 먼저 노동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러시아 기업이 발행하는 초청장으로 노동비자를 발급받고 러시아에 입국하도록 되어있다. 통상적으로 노동자들은 체류기간 5년의 노동비자를 발급받아 러시아에 입국한다. 비자 기한의 연장도 가능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인해 노동자가 소속 회사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연장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10년 이상 장기체류 노동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27)</sup> 이미 중동이나 다른 지역을 다녀온 노동자들도 북한에 귀국하면 벌어들인 돈으로 먼저 집을 구입하고

<sup>26)</sup> 러시아주재 북한 회사 간부, 2016년 ○월 ○일.

<sup>27)</sup> 노동자의 파견기간은 3년인데 사장에게 돈을 주거나 잘 보이거나 필요한 사람이면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북한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자유롭기 때문에 많이 나오려고 한다. 러시아주재 북한 회사 간부, 2016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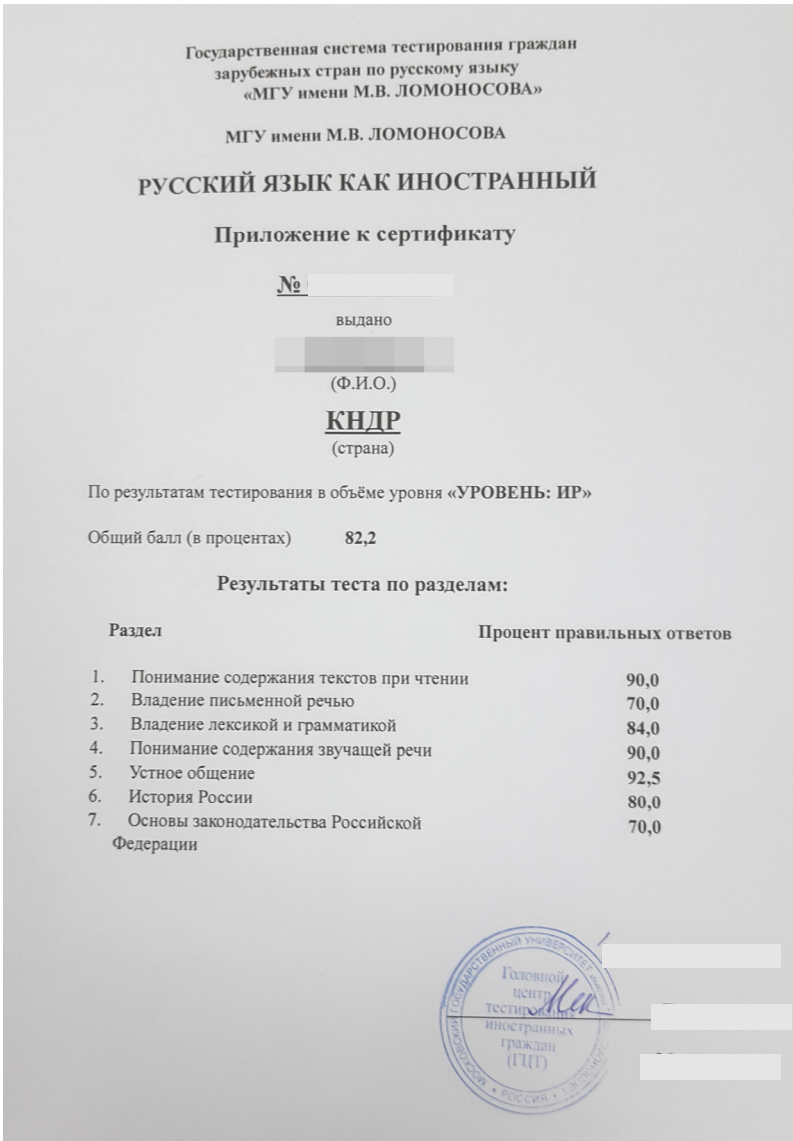
친척들에게 나눠 주고 생활비를 충당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뇌물을 주고 다시 러시아쪽 노동자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2014년 12월부터 외국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허가증’을 부여하는 심사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은 2014년 12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관련 시험을 주관하는 교육기관으로 승인받아 외국인과 무국적 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실시 과목은 러시아어 읽기, 쓰기, 문법, 독해, 회화, 러시아 역사, 러시아 연방 기본 법률 등이다.

노동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러시아어 습득이 필수인 반면 북한에서의 노동자 파견 조건은 러시아어 불통자여야 하므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어 구사가 안 되기 때문에 노동허가증을 돈으로 사거나 러시아어가 가능한 노동자가 대신 연수에 참가해 대리 시험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브로커를 통해 50~100달러의 비용을 지급하고 허가증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관리·감독, 관련 규정 집행 및 규제 등 제반 사항은 연방이민청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 2016년 6월 1일부터는 외국인 노동자 관할이 연방 이민청에서 내무부로 넘어 가경찰이 노상에서 북한 노동자를 검문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 당국은 외국인 노동자 근로 현장, 숙소 등을 빈번히 단속하고 있다. 주목적은 노동허가증 소지 및 불법체류 여부 등의 확인이지만 실제 효과적인 단속이나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소속 노동자의 음주운전과 속도위반으로 2016년 5월에 연해주 지역 아르좁에 있는 노동자 두 명이 강제 추방되고 회사는 탈세 등을 이유로 폐쇄 명령을 받아 2017년 3월에 회사 등록이 말소될 예정이지만 노동자들은 이미 있던 다른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여 노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한다.

I
II
III
IV
V



자료: 연구자 촬영, 2016.11.

사진 II-2 모스크바 대학이 발행한 노동허가시험 자격증명서<sup>28)</sup>



자료: 연구자 촬영, 2016.11.

반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노동법 준수 감독 기능은 지역 별로 설치되어 있는 러시아 노동부 산하 노동감독청이 책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외부로 표출되지 않는 한 러시아 당국의 외국인 노동자 근로 현장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따라서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 근로실태에 대해 당국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및 관리에 원청업체 및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가운데, 북한 회사들이 노동자에 대해 부당, 가혹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에 대한 급여는 러시아 기업이나 중간업체가 북한 회사

<sup>28)</sup> 등급 'IR'을 받아 시험에 통과했다는 내용으로 자격유효 기간은 5년이다.

측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북한 노동자는 북한 회사 측으로부터 매달 정해진 계획분 및 각종 부대비용을 제하고 임금을 수령하도록 되어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가 처음 세 달간 일하고 받은 월급은 약 1천 루블이었다. 항공료, 기숙사 및 식비 등을 제외한 금액만 받았기 때문이다.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아 러시아 당국에서는 북한 회사에 세금 계산을 제대로 하도록 경고하고 있다. 러시아 기업들 역시 절세를 목적으로 북측 회사에 지불하는 임금을 대폭 낮추어 1인당 월 20달러 이하로 신고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러시아에서 노동자가 사업주가 아닌 북한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관례상 용인된다. 그러나 러시아 연방노동법 제341.5조는 임금지급 문제발생 시 사업주와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동 조항에 따라 사안별로 북한 노동자가 북한 회사가 아닌 러시아 사업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일시 귀국하는 노동자들을 통해 미신고 현금(김정은 충성 자금 등)을 북한 내로 무단 반입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노동자들도 많지 않은 돈은 북한으로 일시 귀국하는 노동자나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북한 관리자 혹은 대사관 영사관 직원이나 가족을 통해 북한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외화거래 감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개인)이 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별도로 적용되는 제한사항은 없다. 관세동맹 개인금전 반출입에 관한 협정 제3조, 제4조에 따라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금액 반출입시에는 세관 신고 의무가 없으나,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소정 양식에 따라 전체 금액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할 뿐이다.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7만 달러를 소지하고 북한으로 출국하려던 북한인이 적발된 후, 세관 당국에 뇌물을 주거나 다수인원이 소액으로 나눠 반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UN



안보리 결의 및 해당국 외환관리법 등 위반이며 러시아 은행의 북한 송금이 제재를 받자 중국 은행을 통해 북한으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9)</sup>

## 나.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인원 현황 및 규모

2015년도에 러시아 노동사회보장부가 러시아 기업들에 할당한 북한 노동자 고용가능 쿼터 수는 4만 7천279명이나 2015년 7월 16일을 기준으로 러시아 연방이민청 자료에 나타나는 북한 국적 체류자의 수는 총 3만 4천20명이다. 이 중 18세 이상 노동 가능한 북한인은 3만 3천 682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업을 제외하고 건설업만 약 3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북한 노동자 진출 분야로 알려진 임업을 제외하면 약 3만 명 정도가 종사하는 건설업 분야로 노동력이 집중되고 있다. 2016년 자료는 국가별 구분이 없어 북한 노동자 쿼터 확인이 불가하다. 과거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는 2011년 3만 2천 명(3월 30일 RG.RU), 2012년 4만 5천 명, 2014년 5만 3천 명(신문 “Дальний Восток” 보도)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사회주의 시절에는 20만 명이 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통상 노동허가를 취득하여 실제로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는 연간 2만 7천~3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유럽 러시아지역으로부터 극동에 이르기까지 도처에 산재하고 있다.

<sup>29)</sup> 대북제재와 관련해 타마라 트로야코바 극동대학교 교수는 러시아 국내 신문에서 미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 거주 미국인들에게 북한 노동자를 사용하면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는 북한 노동자 파견이 북한의 자금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상원의원들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경제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내 북한 식당(2곳)에 가지 않겠다고 언급했으며, 크림반도 내에서는 불매운동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타마라 교수는 언론보도와 달리 이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2016년 4월 29일 연구팀 워크숍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표 II-1** > 북한 국적자 러시아 체류 현황

(단위: 명)

연령	17세 이하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총인원	
인원	남성	138	1,748	7,737	13,606	5,850	493	29,572
	여성	200	2,161	563	400	691	433	4,448
총인원	338	3,909	8,300	14,006	6,541	926	34,020	

자료: 2015.7.16.자 러시아 연방이민청 자료.

2016년에는 연해주, 하바롭스크, 사할린 등 극동지역에 약 1만 5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극동지역에서 러시아 국민에게 1ha의 땅을 주는 헥타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추가적인 북한 노동자 수요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러시아 기업들이 개인들이 받은 땅들을 모아 대규모로 개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0)</sup> 반면 루블화 폭락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과 테러방지 등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관련법 강화 등으로 인해 북한 노동자수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도 병존하고 있다.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40대를 중심으로 30~5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군 장기복무(10년 이상)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예외적으로 북한 군인을 노동자로 파견 받고 있는 북한 회사 ‘남강’에는 20대 노동자가 다수 존재한다. 종사 분야는 주로 건설업 및 임업(벌목공)을 중심으로, 농업, 수산업, 광업, 요식업(식당), 봉제업 등 다양하다. 건설업의 경우 미장공이 제일 많고, 콘크리트 타설공, 석공, 목수, 배관공 등이 있다. 건설노동자 중에는 현역군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7총국이나 8총국 소속의 현역병들로 연해주에 800명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sup>30)</sup> 레오니드 코즐로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 교수의 견해. 2016년 4월 29일 연구팀 워크숍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은 파견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쳐주기 때문에 임금은 월 100달러뿐이며 청부노동은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러시아 건설업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약 30년 전부터다. 러시아 회사에 대응하는 북한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 러시아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해주는 형태로 고용이 이뤄진다. 건설노동자들은 일한만큼만 돈을 받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 15~16시간 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일하다 다치면 러시아 회사에서 치료를 해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직종과 비교해 일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일부 피복공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노보시비르스크에 여자노동자 3천 명 정도가 나가 있다. 과거에는 미혼여성을 내보냈으나 최근에는 인력이 부족해 나이나 결혼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사람이 러시아에 어업을 하려고 들어간 것은 50년 전으로 러시아와 체결한 조-러 어업협정에 따라 설립된 조-러 어업공동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금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북한의 수산대표와 부대표가 주재하고 있고 평양에 러시아 수산대표가 주재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 파견이 아니라 북한어선 50여 척이 러시아 수역에 들어가서 오징어, 임연수, 명태 등을 어획하는 것이다. 수산업 분야에도 한때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적이 있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러시아 정부기관인 원동총국 산하 원동수산물생산연합체(달모레프로дук트)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가 200명에 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어부가 아니며 참치잡이 모선에 승선해 6개월 동안 월 100달러를 받으며 참치통조림을 만들었다. 현재는 이 일을 하는 북한 노동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해주 및 하바롭스크는 북한과 교류가 가장 활발한 러시아 지역들이다. 북한은 2014년에 연해주 지역 대외교역에서 0.2%의 비중을 차지했다. 수출 1천820만 달러, 수입

I
II
III
IV
V

10만 달러 규모로 전체 교역액은 총 1천830만 달러였다.

연해주는 면적이 약 16.5만 ㎢으로 한반도 면적의 약 0.75배이며, 인구는 2015년 말을 기준으로 192만 9천 명 가량이다. 지역 인구는 2011년 195만 3천 명 수준에서 5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80%가 산악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구의 도시 거주율이 7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민족 구성 대부분을 러시아인(92.5%)이 차지하고 우크라이나인(2.8%)에 이어 한인(고려인)이 3위로 1% 가량이다. 25개 군, 9개 도시를 거느리고 있는 연해주는 주 인구의 약 1/3인 6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주도(州都) 블라디보스토크 이외에 우수리스크(인구 17만 명), 나훗카(인구 16만 명), 아르쎌(인구 10만 명) 등의 4대 주요 도시에 100만 명 이상이 몰려 있다.

한반도와 접경하고 있는 러시아의 유일한 주인 연해주는 과거 발해 영토의 일부였을 뿐 아니라 1863년 이래 자발적 한인 이주민들의 집단 정착지였고, 일제시대 항일독립운동의 주요한 근거지로서 한민족과 인연이 깊다. 블라디보스토크는 1860년대에 제정러시아가 추진한 이주정책의 주요 거점으로 1880년에 시로 승격된 이후 러시아 서부 지역으로부터 이민이 급증하기 전까지 다수의 한인과 중국인들이 진출하였다. 또한 1897년 블라디보스토크-하바롭스크 철도(772km)가 완성됨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는 태평양 진출의 관문으로 급부상하였으며, 이후 구소련 시대에도 정치·군사·경제 등에서 지역의 확고한 중심지 역할을 해 왔다. 극동지역 개발에 관심이 큰 현 러시아 정부에서도 블라디보스토크는 확고한 지역 중심지가 되고 있다.

소련 시대의 연해주 지역은 태평양함대 본부가 있던 곳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으며, 높은 임금과 각종 보조금으로 우랄 산맥 서쪽 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유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구소련 붕괴 후 러시아 중앙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러시

아계 주민들이 떠나는 대신 중앙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기타 구소련 국가들과 중국, 동남아 등으로부터 노동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나훗카에 유일한 외국 공관을 두고 있는 북한 역시 중요한 노동인구 제공 국가이다. 연해주 지역은 극동지역 발전을 위한 러시아 연방정책에 따라 북한 노동력 유입이 상당히 증가되어 왔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극동개발 정책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아태지역 내 국제협력의 센터로 개발하고 있다.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설립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2012년 9월에 러시아에서 최초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됐고 2015년 9월 제1차 동방경제포럼이 개최됨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연해주는 에너지와 자원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극동가스배관, 동시베리아송유관 개통) 시행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수산업, 임업 등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왔던 산업 외에 제조업(자동차), 관광·서비스, 교통·물류 산업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받아 투자 유입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의 산업생산은 지속되는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5%의 증가 추세로 나타났고,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만 2천442루블이었다. 성장세를 보여 준 농업과 소매 거래, 건설 중에서도 특히 노동 인력이 몰리는 부분은 주택 건설 부문이다. 또한 대규모 조선 클러스터, 석유화학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노동 인력의 유입 요인이 되고 있다.

---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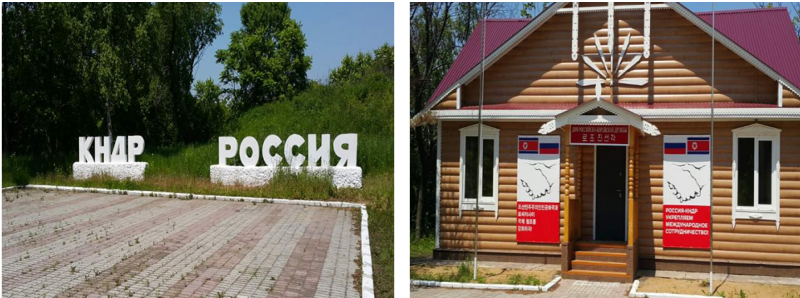
III

IV

V

---

사진 II-3 >> 재건된 북러 친선각<sup>31)</sup>



자료: 레오니드 코즐로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 교수 제공, 2016년 4월 29일 연구팀 워크숍(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표 II-2 >> 연해주 외국인 거주자 수(2013. 기준)

나라/국적	출입국 사무소 등록	기타									
		영주권	일시적 거주/ 거주 기간 허용자	체류	목표 항목 포함						
					개인	사업	관광	학업	취업	인도 주의적	기타
중국	17,531	118	9	17,404	287	5,178	5,107	759	6,003	62	8
북한	4,778	3	1	4,774	53	15	11	30	4,524	-	141
대한민국	1,170	170	40	960	37	262	417	106	109	25	4
몰도바	363	19	49	295	247	10	2	3	33	-	-
미국	244	15	2	227	24	42	48	17	13	83	-
타지키스탄	3,539	53	404	3,082	2,226	102	1	51	702	-	-
터키	373	3	-	370	34	100	7	-	229	-	-
우즈베키스탄	39,811	370	2,277	37,164	29,564	1,576	38	52	5,925	1	8
우크라이나	2,582	225	358	1,999	1,054	52	7	14	871	-	1
일본	365	5	2	358	33	65	152	75	19	10	4
기타 나라	1,251	57	40	1,154	194	371	346	55	146	38	4
무국적자	280	103	76	101	74	21	5	-	-	-	1

자료: 러시아 현지조력자 제공 자료.

31) 화재로 전소된 러북 친선각(김일성의 집)의 재건 기념식이 2016년 4월 21일에 열렸다. 이 행사에 연해주 지역의 관리들이 참석해 북러 우호에 관해 언급했으며, 현지 언론은 긍정적인 내용의 보도를 했다. 타마라 트로야코바, “러시아 대 한반도 정책: 오늘날의 도전과 전망,” 2016년 4월 29일 연구팀 워크숍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7년 이후 연해주 내 북한 노동자의 대부분은 건설 노동자이며, 러시아에서 결정한 쿼터에 따라 북한에서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각 기관에서 러시아 현지 파트너를 찾아 노동자 파견 계약을 하고 입국시키는 방식이다. 일반 북한 건설노동자의 연간 수입은 공적·사적 공사장을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은 경우가 약 3천 달러이며 적은 사람은 20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북한건설회사 대표(현장소장 포함)는 북한 노동자들로부터 받는 뇌물과 사적 공사장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연간 5만~10만 달러 정도를 번다고 한다. 북한 건설회사 대표들은 현지 고급차의 대명사인 토요다 '랜드크루저'(중고차 가격 6~7만 달러) 차량을 운용할 정도이다.

## 2.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근로 및 생활 실태

### 가.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노동 환경 및 근로 여건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당국이 러시아 내 설립한 북한 회사에 소속되어 원칙적으로 교외 아파트 또는 공장건물에서 단체생활을 하고, 작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연해주에는 남강, 성공, 낙원, 젠코, 능라도 등 주로 건설사 형태로 20개의 북한 회사가 있으며, 회사별로 300명에서 최대 6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를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보건 상태가 좋지 않으며, 겨울에는 작업장에서 난로, 발전기를 켜놓고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언론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I

II

III

IV

V

표 II-3

북한 근로자들의 자살 및 산업재해 등 피해사례(2015.1. 이후)

-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24층 건물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작업도중 추락사고 발생(안전장치 미착용), 2015.2.3. 언론 미보도
-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북한 건설노동자 1명이 열악한 근무환경 등 생활고를 비관하여 숙소 옥상에서 분신·추락 자살, 2016.1.1. 지역 언론은 단순 자살로 보도
-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콘크리트 제품 생산 공장 노동자 1명이 공장 건물 3층에서 추락사(주취상태), 2016.5.15. 언론 보도
- 튜멘주 토볼스크 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근무 북한 노동자 2명이 화물운반 승강기에서 추락사, 2016.7.22. 언론 보도
- 페테르부르크 소재 아파트 건축현장 북한 근로자 추락사(2016.6.23., 승강기 안전장치 미비) 및 페테르부르크 인근마을 건설현장 근로자 1명 고층 추락사
- 우파 주재 북 피복사업소에서는 북 건재무역에 보수작업 중 발생한 화재(2016.9.30.)로 파견 근로자 1명이 사망

자료: 연구자 현지조사, 인터뷰 및 러시아 언론 보도 검색 등을 종합해 정리함.

기본적인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쌀과 부식을 가장 싼 것으로 구입하고 있다. 한국 식자재가 비교적 원활하게 공급되는 사할린에서도 쌀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업자를 통해 구입하고 배추나 무 등 김치 재료는 조선족을 통해 구입하고 있다. 청부를 나가는 노동자들은 쌀과 부식을 받아야 하는데 쌀과 미늘, 고추가루만 받았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작업시간 및 임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근로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소속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압수당한 채 강제로 집단생활을 해야 하며 작업현장에 매인 채 하루 13~16시간 중노동을 하고 있다. 청부로 일을 할 때는 도급제로 일을 받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다.

노동자의 임금은 지역별, 직종별 편차가 있으나, 약 월 3만 5천~4만 5천 루블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4년 루블화 평균 환율(1달



러=38루블)로 계산할 때 미화 921달러~1천184달러 수준이었으나, 그 뒤 1달러=70루블까지 하락한 환율로 계산하면 월임금은 500~650달러 정도로 추정된다.<sup>32)</sup>

2014년 조사 당시 청부 노동자들의 계획분은 월 1천 달러(1달러=30루블)이고 2016년 조사에서는 700~800달러(1달러=65루블)로 오히려 줄었으나 환율 하락을 감안하면 오히려 부담이 커졌다고 한다. 회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북한 노동자는 월 임금에서 매달 북한 당국에 계획분을 비롯해 소득세, 사회보험료, 거주비, 식비, 관리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상납함에 따라 실제 개인이 부담(상납)해야 하는 비용은 수입의 80~90%에 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sup>33)</sup>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이 크게 줄어 건설업 분야 북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 북한 노동자들은 개인 상납금을 채우기 위해 소속된 회사의 일감 외에 다른 부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 회사도 노동자들이 부업을 위해 회사 숙소가 아닌 곳에서 숙식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회사와 러시아 기업이 체결하는 노동계약에 따른 근로(보통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외에, 북한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다른 작업장에서 추가로 일하는 것(부업 또는 청부)은 엄연히 불법이다. 노동계약서에 따른 일만 할 경우 법정 근로시간 및 주말 휴무가 보장되나, 국가계획분 및 개인별 상납금, 부대비용을 채우고 개인 몫의 수입을 남기려면 추가노동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하루 16시간씩 일할 수밖에 없게 된다. 회사 규율상 외박이 금지되어 있으나 회사 관리자에

<sup>32)</sup> 2016년 본 조사 당시 러시아 루블화 환율은 달러당 61~65루블 수준이었다.

<sup>33)</sup> 수히닌 전 주북한 러시아대사는 2016년 3월말 한국 정부 관계자와 면담 시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500달러 중 개인에게 50~100달러 정도가 돌아간다고 언급했다.

I
II
III
IV
V

게 뇌물을 주고 청부 작업장에서 숙식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에 청부 일거리를 소개해주는 북한 회사 통역이나 조장들에게도 총수입의 10%에 달하는 소개비를 지불해야 한다.

심지어 각 회사마다 파견되어 있는 의사들도 청부를 나가 마사지사로서 일하거나 주로 조선족을 상대로 침을 놓아 주고 1인당 1천 루블 정도를 받고 있다. 같은 회사 소속 노동자들에게도 돈을 받고 치료를 해주거나 약품을 제공한다. 의사들은 북한에서 의대 졸업증과 의사 자격증 등을 가져와 러시아 병원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지만 러시아 당국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있다.

회사 간부는 사장, 당비서, 종합지도원(대외건설 소속), 보위원, 통역, 운전수 등이 있는데 노동자에게서 걷은 돈으로 이 사람들의 월급을 주고, 회사경비를 충당한다. 사장 임기는 3년으로 수단이 좋은 사람은 이 기간 동안 100만 달러까지도 모을 수 있다고 한다. 사장은 러시아 상대측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총 계약금의 약 절반을 자기 뚝으로 챙긴다고 한다. 그 중 3분의 1 가량은 평양의 고위층이나 현지 공관 간부들에게 상납한다. 그래야만 사장으로 다시 러시아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사장 아래 2인자인 직장장도 중간에서 횡령을 많이 한다. 처음 직장을 임명하는 것은 북한 당국이지만 현장에서는 사장의 권한이 막강해 사장 마음에 들지 못하면 교체되기도 한다. 수완이 좋은 직장장은 3년 정도 근무하는 기간 중에 10~20만 달러 정도를 자기 뚝으로 챙길 수 있다고 한다.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연해주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사진 II-4 > 핫산 가는 길



자료: 연구자 촬영, 2016.5.

사진 II-5 > 핫산 인근 1980년대 북한 노동자들이 건축한 주택



자료: 연구자 촬영, 2016.5. 건축 시기는 현지인과 면담을 통해 확인.

파견을 나올 때나 귀국 시 이용하게 되는 교통편도 원활치 못하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파견 기간 도중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 모스크바-평양을 운행하는 열차는 우수리스크 역에서 러시아 국내선(블라디보스토크발)과 북한으로의 국제선(평양발)으로 나뉜다. 러시아의 마지막 역인 핫산에서 북한의 두만강역으로 건너간다. 열차 운임은 항공 요금의 절반 수준인 400~500달러 정도다. 러시아 철도청 사이트에 따르면 2016년 11~12월 모스크바-두만강 열차는 월 2~4회 운행했다.<sup>34)</sup>

<sup>34)</sup> 러시아 철도청 홈페이지, <[http://pass.rzd.ru/static/public/en?STRUCTURE\\_ID=5125&layer\\_id=3290&refererLayerId=162&id=2472](http://pass.rzd.ru/static/public/en?STRUCTURE_ID=5125&layer_id=3290&refererLayerId=162&id=2472)>. (검색일: 2017.3.4).

I
II
III
IV
V

열차는 평양역에서 두만강역으로 와 이곳에서 러시아 기관차로 교체하여 모스크바까지 운행한다. 이 때 북한사람들만 타는 별도의 한 칸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일반 러시아인도 탑승은 가능하지만 승무원이 모두 평양에서 출발할 때부터 동일한 승무원이 모스크바까지 담당하게 된다.

두만-하바롭스크 간은 한 달에 한 번만 운행한다. 두만-हत산 간에는 노동자들을 실어 나르는 차량이 한두 대 있다는 탈북 노동자의 증언이 있었으나 이를 직접 확인하진 못했다. 하바롭스크-평양 간 열차는 한 달에 한번 운행하며, 모스크바-평양 간 열차와 마찬가지로 북한 사람만 타는 객차 1량을 연결하여 운행하고 있다.

사진 II-6 ▶ 하산역



자료: 연구자 촬영, 2016.5.

사진 II-7 > 국경수비대 입구 및 북러 국경



자료: 연구자 촬영, 2016.5.

사진 II-8 > 국경수비대 근처 폐허된 군 시설과 막사



자료: 연구자 촬영, 2016.5.

연해주의 한 염색공장에는 북한 노동자가 8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이곳은 독한 약품을 쓰는 탓에 러시아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종이지만 임금은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월 100달러 수준이다. 이는 평양에서 정해진 월급이다. 연해주 북한 노동자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한국 기업의 하청 공사도 했지만 현재는 한국기업이나 한국인 공사는 금지돼 있다고 한다. 특히 한국인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 공사는 가장 엄격히 금지돼 있다.

I
II
III
IV
V

사진 II-9 ▶ 북한 노동자 작업현장



자료: 연구자 촬영, 2016.6.

한 노동자는 중동에서 5천 달러 정도 벌고 귀국한 뒤 900달러의 뇌물을 쓰고 4년 만에 다시 연해주로 파견되었다. 평양 출신은 50~100달러 정도의 뇌물을 주면 되지만 원산 등 지방에서 해외로 파견되기 위해서는 시 당에도 손을 써야하기 때문에 뇌물 비용이 높아진다고 한다.<sup>35)</sup>

파견이 되더라도 노동자들은 때로 상상을 초월하는 파견회사 간부들의 횡포에 시달리곤 한다. 예를 들어 연해주 지역 아르쎌에 있는 어느 북한 회사 전 부지배인은 규칙을 어긴 노동자의 경우 5만 루블을 상납해야 청부 나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한다. 2016년 1월에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노동자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비싸다는

<sup>35)</sup> 북한 노동자 인터뷰, 2016.6. 연해주.

이유로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아 숨지도록 방치한 사고도 발생하였다.

또 다른 노동자는 연 2만 달러 정도 벌었으며 2015년에 평양에서 방 두 칸짜리 아파트를 1만 달러에 구입했다고 한다.<sup>36)</sup> 한 노동자는 2007년도에 2천5백 달러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그 뒤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만족해했다. 2014년 여름에 만났던 평양출신 노동자는 자신이 건축대학 출신이며 기술이 좋아 뇌물을 주지 않고도 파견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은 사할린을 희망했지만 뇌물 줄 돈이 없이 국가에서 배정한 연해주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국가계획분을 포함한 상납금 액수는 사할린의 경우 매월 4만 루블 수준인데 비해 블라디보스토크와 아르쭘 지역은 4만 5천 루블 수준으로 높다고 한다. 한편 2013년에 900~1천 달러였던 계획분이 현재는 700달러 정도로 낮춰졌다. 이는 지난 2~3년 사이 계획분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의 60%에 달할 정도로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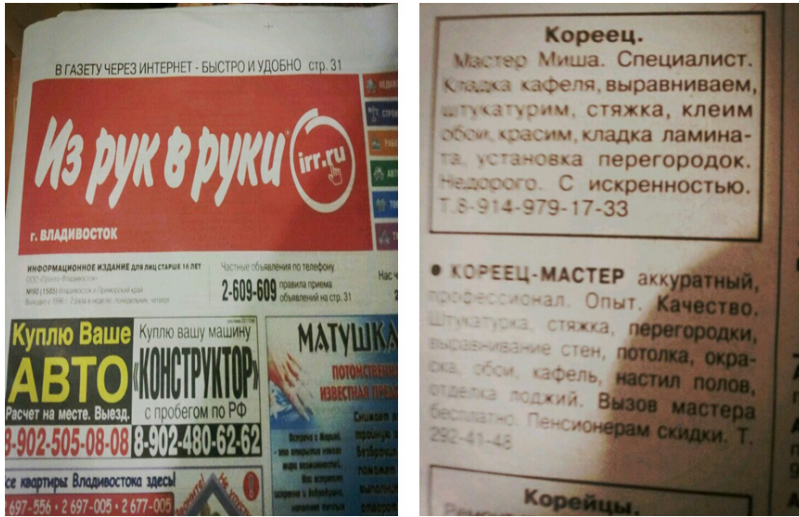
연해주 지역에선 북한 노동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청부 일자리를 공개적으로 구하고 있다. 연해주 주민들이 집수리를 하기 위해 적합한 업체를 수소문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파르포스트에는 북한 노동자들의 집수리 실력을 짐작할 수 있는 광고가 다수 올라 있다. 그 외에도 신문이나 전단 광고지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을 이용한 집수리 비용 견적을 내볼 수 있는 광고를 찾아볼 수 있다.<sup>37)</sup>

<sup>36)</sup> 북한 노동자 인터뷰, 2016.6. 연해주.

<sup>37)</sup> <<http://remontvanoy.ru/>> 등.



사진 II-10 >> 북한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현지 베틀신문<sup>38)</sup>



자료: 연구자 촬영, 2016.6.

## 나.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생활과 관리 실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대외건설지도국 소속 건설근로자들은 대부분 파견 6개월~1년 후부터 개인 청부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 때 인터넷 등을 통해 일거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남한 드라마 등 영상물 등에 접하면서 ‘사상적 이완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예컨대 주 1회 소속회사 단체숙소에서 실시하는 생활총화 때 노동자들 사이에서 김정은 부부를 ‘애, 재, 설주, 정은이’로 호칭하고 ‘원수님’으로 부르면 오히려 왕따당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정도라고 한다. 보위부원들도 이를 알고 있지

<sup>38)</sup> 우측 사진은 ‘한인 기술자(Кореец-мастер)’의 전문성 및 연락처가 게재된 광고이다. 상세 내용은 기술자의 숙련도, 이름, 전문분야, 업무에 임하는 각오 등 개인 홍보가 주를 이룬다.



만 “이곳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도 조국에 가서는 그러지 마라”는 충고만 하는 정도로 그치는 실정이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의 사상 이완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 당국은 관리자들에게 사상 교양사업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의 한 기관은 러시아 지사에 대열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쓸 것과 거주비자 연장을 승인 받지 못한 인원들은 서둘러 철수시킬 것을 지시했으며 대외건설지도국은 귀국을 앞둔 노동자들이 탈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노동자들이 북한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현지 사장이 전부 사전 검열해 체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러시아 주재 한 북한 무역회사는 아예 파견 노동자들과 북한 내 가족 사이의 연락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 최근 예년에 비해 자진 귀국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만료된 비자기한을 연장하지 못한 때문인지 아니면 북한 내부 건설 수요가 늘면서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을 귀국시키고 있는 지는 분명치 않다. 이에 대해 루블 하락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루블의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자진 귀국이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북한 노동자는 북한 회사에 파견되는 보위부원, 당비서, 종합지도원 등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 하에 생활하며 원칙적으로 외부인과의 접촉도 금지되어 있다. 북한 노동자가 작업현장에서 숙식하는 경우에도 보위부원이 인터넷 접속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작업현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감시, 통제하고 주 1회 이상 사상교육을 실시한다. 복장도 청바지는 미 제국주의의 산물이라며 착용하지 못하게 하고 화려한 색깔이나 짧은 겹옷도 금지하면서 검정이나 짙은 검색 옷을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I

II

III

IV

V

사진 II-11 ▶ 착용 가능한 신발과 옷



자료: 연구자 촬영, 2016.7. 유즈노사할린스크.

북한 노동자들은 이러한 엄격한 감시, 통제에도 불구하고 작업 과정에서 현지인 접촉 등을 통해 제한적이거나 외부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암암리에 한국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이런 금지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돈을 주고 해결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다.<sup>39)</sup>

김정은 시대 들어 자유주의 사조 유입을 꺼리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노동자 단속지시가 내려온 탓에 노동자를 기숙사에 자주 소집하기 때문에 청부를 하러나가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늘고 있다. 기숙사에서 멀리 떨어진 작업장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월 500~600달러 정도를 회사에 바치고 나면 6개월에 200~300달러도

<sup>39)</sup> 북한 내부에서도 보안원이 옷 잘 차려입고 돈 좀 있는 사람 같으면 손전화(휴대폰)를 보자고 해서 메시지에 한국 말투를 쓴 글이 남아있는 경우 잡아가지도 하지만 50달러 정도를 받고 쉽게 풀어 준다고 한다. 이 때문에 단속 나가는 사람도 몇 달마다 바뀐다고 한다.

모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상이라도 당해 병원이라도 가게 되면 회사에 내야 할 돈이 더 쌓이게 된다.<sup>40)</sup>

연해주 지역에는 구소련 붕괴 이전부터 중국으로부터 생필품을 들여 오는 조선족 보따리 장사나 도매업자, 야채 장사들이 다수 거주한다. 이들은 북한 노동자들과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북한 노동자들도 조선족을 만나더라도 회사 간부들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에 두 집단 사이에는 왕래가 잦다. 조선족은 옷, 음식 재료 등을 북한 노동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재고로 남겨나 유행이 지난 물건을 북한으로 일시 귀국하는 노동자들에게 아주 싼 가격에 판매하며 북한 노동자들은 귀국 후 이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기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동자들이 귀국할 때 현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북한에서도 중국가전제품 등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예전에 인기 물품이었던 삼성, LG 한국제품은 통관할 때도 뇌물이 필요하고 북한에서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뇌물을 주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잘 사지 않는다고 한다. 예전에는 상표를 떼고라도 갖고 갔지만 이제는 현금이 최고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

<sup>40)</sup> 단, 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병원치료를 받아도 러시아 회사가 병원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빚이 늘지 않는다고 한다.



### Ⅲ. 사할린 북한 노동자의 역사적 출발





## 1. 들어가며

2016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에는 별목을 포함하여 모두 5만 명에 육박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 최변경인 사할린에도 약 3천 명 가량의 북한 노동자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자들의 사할린 출현은 흔히 소련 붕괴와 제제 전환의 과정과 더불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극동 러시아 지역 북한 노동자 진출 역사에서 사할린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집단적이고 기획된 북한 노동자 진출의 역사상 첫 무대인 곳이 바로 사할린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할린 북한 노동자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 뿌리가 되는 역사의 정리가 필요하다. 물론 구소련 시절이던 최초 진출 당시와 경제적 이해가 주목적인 현재와는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기본 형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최변경인 사할린 지역의 특수성이 최초 북한 노동자의 진출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명함으로써 오늘날의 상황이 갖는 특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사할린 지역을 배경으로 펼쳐진 20세기 최초의 집단적이고 기획된 북한 노동자 진출의 역사를 살피고자 한다. 당시 '파견노무자'라는 명칭으로 불린 이들의 출현과 삶, 현지 상황의 변화가 그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다양한 러시아 사료들을 기반으로 추적해 볼 것이다. 당시 소련의 정책 변화, 노동자 모집 과정과 계약의 조건, 사할린 도착 후의 생활, 현지 선주민과의 관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 사할린의 북한 노동자 실태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갖는 사할린 내 북한 노동자의 생활실태가 어떤 배경 아래 가능했는지를 이해하면 미래에는 어떻

I
II
III
IV
V

게 변할 지를 예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세기 이래 사할린의 북한 노동자에 집중한 연구는 러시아 측에서만 진행되어 왔다. 2000년대 초 이후 극동 지역 외국인 노동력의 이주라는 주제 아래 북한 노동자 문제가 20세기와 최근 상황들이 비교되며 다루어지고 있다. 쿠진과 자바롭스카야, 바슈 등 연구가 대표적이고,<sup>41)</sup> 어업 분야에서 활동한 북한 노동자의 생활을 다룬 체르노루츠카야와 최근의 코제먀코의 글<sup>42)</sup>도 많은 참고가 된다.

## 2. 파견노동자

### 가. 일제시기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주요 특성

20세기 사할린에 한인 사회가 출현한 주된 이유는 일제가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조선인을 동원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전부터 사할린 지역은 항상 인력이 부족한 지역이었다. 이 때문에 1938년 4월 일제가

---

41) Кузин А.Т., Послевоенная вербовка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их рабочих на промышле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946-1960-е гг.). // *Россия и АТР*, 2010, № 3, сс.148-156; Забровская Л.В., Трудовая миграция из КНДР в Россию (середина 1940-х - 2003 гг.) //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5, 2005; Вапук А.С.,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из КНДР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X - начале XXI века // *Гуманит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восточной сиббири 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2012, № 1.

42) Чернолуцкая Е.Н., Трудовое и бытовое устройство корейцев в конце 1940-х начале 1950-х годов // *Вестник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ДВГУ*. 2004, № 1; Кожемяко Е.Г., Корейские рабочие как источник пополнения кадров в рыбном хозяйстве Сахалин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ук: социология, политология, философия, история»: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по материалам XIX-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17 июня 2015 г.), <<http://sibac.info/conf/social/xlix/42464>>. (검색일: 2016.8.20).



국가총동원령을 내리기 전부터 조선인이 남사할린에 진출해 있었다.<sup>43)</sup>

그러나 일제는 태평양 전쟁으로 발생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인 노동력을 동원하기 시작했고 이는 1939년경부터 본격화 됐다. 이후 일제는 1942년부터 ‘관 알선’에 나섰으며 1944년 9월부터는 징용에 의한 강제동원 방식으로 바뀌었다. 관이 직업을 알선한다는 뜻의 ‘관 알선’은 표면적으로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 형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사할린에 설립된 일본 기업의 모집인이 조선에서 관이 물색해 둔 대리인(통상 면장이나 노무계)과 함께 인력을 공출함에 따라 실제로는 강제 동원이나 마찬가지로였다. 통상적으로 2년 동안 일정한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 있었지만 모집과정의 강제성 때문에 사할린의 한인들은 지금도 당시 일제의 노무동원을 주저 없이 ‘강제모집’이라고 말한다.

노동자 모집과 관리의 주체는 일차적으로 개별 기업이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철저한 계획과 통제 및 공권력의 협력 아래 인력 동원이 이뤄졌다.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은 탄광, 제지공장, 군사시설 건설 등에 배치됐었고 작업현장이 민간사업장일지라도 가혹한 노동조건 아래 엄격한 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가라후토(사할린)의 근로조건이 이처럼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은 당시 식민지 조선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 때문에 일제는 상대적으로 공업이 발달해 일자리가 풍부했던 북한 지역보다 삼남지역,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인력을 동원했다. 한편 일제는 조선

<sup>43)</sup>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일본은 가라후토(樺太)에 대한 식민 개발을 본격화하며 일본인들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식민 이주를 독려했다. 그러나 농업과 어업을 제외하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인 자원개발 등 제 산업 영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일본의 산업계는 조선인의 노동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탄광업을 중심으로 1917년경부터 조선의 신문 등을 통해 화태지역으로 갈 조선인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였다.

의 젊은이들에게 사할린을 기회의 땅으로 선전했다.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일본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만하면서 ‘관 알선’을 통한 강제동원을 진행한 것이다.

사할린 지역 조선인 노무 동원은 일제가 전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계획에 따라 진행했다는 점에서 조선인 노무 동원이 이뤄진 다른 지역과 성격이 다르지 않다. 즉 큰 틀에서 국가가 동원의 주체 이면서도 동원 과정의 실무는 각 사업의 주체, 즉 기업이나 인력 공급 업체들이 공권력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담당했다.

사할린에선 인력 수요가 항상 공급보다 많았기 때문에 인력 관리 주체들은 큰돈을 벌 수 있었다. 특히 사할린의 조선인 노동력 모집에 깊이 관여하고 현장에서 이들을 관리했던 청부업체, 즉 ‘구미(組)’들이 떼돈을 벌었다. 그들은 직접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규모 탄광이나 제지공장 등에 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였다. 농민 출신의 미숙련 노동자이던 조선인 노무자들을 계절에 따라 임금이 높은 분야로 재배치함으로써 중간 소개비를 챙기기도 했다. 가령 여름 동안 토목 건설 분야에 투입했던 노동력을 겨울에는 탄광에 공급하는 식으로 인력 배치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시 사할린은 미숙련 노동자들에게 기회의 땅이기도 했다. 일본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가 널려 있었기에 가혹한 노예노동을 하던 노동자들이 도주하는 일이 잦았다. 기업과 관이 협력해 도주한 노동자를 수배하는 일이 많았던 사실은 사할린 지역에 떠돌이 노동자가 많았음을 보여준다. 일제는 전시상황에서 일본인들이 기피하는 열악한 노동현장인 남사할린에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동원함으로써 일본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왔다.

## 나. 북한 노동자 모집의 배경

1945년 8월 이후 구소련이 점령한 사할린 남부 지역 한인(조선인) 사회는 일제에 강제 동원됐다가 귀환하지 못한 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1946년 4~5월에 구소련이 시행한 남사할린 지역주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2만 3천 명 가량의 한인이 잔류했다. 이들은 30만 명에 달하는 일본인들보다 먼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1945년 말 남사할린 내 각 사업장 국유화 작업을 진행했던 구소련 민정국 조사관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작업장으로부터 이탈과 무단결근, 소극적 사보타지를 일삼는” 현지 한인들의 태도가 ‘남사할린의 산업을 정상화하기 어려운 주요한 원인’이라고 기록했다.<sup>44)</sup>

1945년 8월 말 남사할린 지역에 첫 발을 디딘 구소련 당국자들에게 지역 경제 정상화를 위한 노동력의 확보는 최우선적인 과제였다. 확인된 노동 가용인구가 13만 2천여 명<sup>45)</sup>에 불과한 상황에서 30만 명의 일본 민간인을 귀환시켜야 하는 지방 당국으로서 위기감을 갖는 것은 당연했다. 이들은 국내 이민, 즉 식민(植民)과 해외노동자 수혈을 시도했다. 당시 전쟁포로가 50만 명에 달했지만 이들은 일시적 활용만 가능했다.

우선 추진된 국내 차원의 식민 정책은 얼마 지나지 않아 효과가 거의 없음이 드러났다. 1947년 1월 1일까지 사할린에 도착한 러시아인 이

<sup>44)</sup> Былое // *Историческое чтение, № 2, Южный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 1945-1947 гг.*, Ю.-Сахалинс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996-1997. с.43.

<sup>45)</sup> 노동영역별 일본인(조선인 포함)의 수는 다음과 같았다. 농업-41,723명, 석탄업-26,983명, 어업-13,686명, 기타 산업 27,243명, 상업-25,173명 등이었다.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Gosudarstvennyi Istoricheskiy Arkhiv Sakhalinskoi Oblasti, 국립사할린주역사기록보존소, 이하 기아소(GIASO)로 줄임), Ф(Ф).171, Оп(Ор). 3, Д(Д). 7, Л(Л). 123. : 차례대로 Ф(Ф).-폰트(기록군), Оп(Ор).-시리즈, Д(Д).-기록철, ЛЛ(LL). 장(lists)을 의미하며, 이후로는 편의상 별도 구분 없이 -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즉 기아소, 171-3-7, 123장.

민자 규모는 4천10가구에 불과했고 1947년 하반기부터 1949년까지 이주하기로 계획된 규모 역시 4천200가구여서 이탈이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sup>46)</sup>

다음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 중 전쟁포로를 전후 복구에 동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구소련은 1945년 8월 23일, 국가방위위원회 결정 9898호를 통해 전쟁포로 50만 명의 전후복구 동원을 결정한 바 있었고, 1946년 4월에는 시베리아에 수용된 포로 5만 명을 중앙아시아로 이송하여 활용했을 뿐 아니라, ‘소련령 내의 병약한 포로 2만 명을 북한 내의 건강한 포로 2만 2천 명과 교환’한다는 명령을 내릴 만큼 구일본세력의 전후복구 동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sup>47)</sup> 임산업, 광업, 건설 분야 등에 주로 투입되었던 전쟁포로들은 값싸고 활용이 용이한 인적 자원임에 분명했지만 당장 귀국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한시적 가용 노동력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sup>48)</sup>

사실상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포로들은 그들을 관리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생산성이 높지도 않았다. 따라서 구소련이 채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 방안이 외국인 노동력을 모집해 투입하는 것이었다.

---

46) Ким И. П., Политическо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й присоединенных к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осточная Пруссия, Южный Сахалин,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1945-первая половина 1949 года.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2010. с.69, 76. 1946년에 이주한 이들 중 1,009 가구는 농업에, 나머지 약 3/4은 모두 어업 분야에 배치된다.

47) 방일권, “이루어지지 못한 귀환: 소련의 귀환 정책과 사할린한인,” 『동북아역사논총』, 제46호 (2014), p. 290.

48) 관동군 소속의 포로들의 귀환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은 1956년이지만 대부분은 1948년까지 돌아갔다. 그 구체적인 예의 하나가 시베리아 지역에서 붙잡힌 관동군 소속의 한인 포로들의 귀환으로, 소련 측은 1948년 5월에 이들을 북한을 통해 귀환시켰다. 시베리아 포로의 귀환에 대한 국내 연구로 박민영, “소련군 포로가 된 시베리아지역 한인의 귀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0집 (2013), pp. 1~25 참조.

## 다. 북한 모집 노동자의 출현

구소련이 우선 주목한 외국인 노동자 모집 대상국은 중국과 ‘북조선’이었다. 중국과 북조선은 전후에 구소련으로부터 금전적 지원과 물자 및 인력을 통한 기술 지원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46년 2월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동안 한반도 북부에 분단 정부 수립에 나선 구소련과 긴밀한 정치, 경제적 관계 속에서 출범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명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구소련의 노동력 파견 요청에 호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러시아 학자 자브롭스카야에 따르면 ‘1945년 소련 정부가 당시 노동 자원이 필요하였던 극동지역에서의 단기 계절작업을 위하여 북한 측에 노동자 파견을 요청’함으로써 처음으로 북한 노동자가 파견될 수 있었다. 북한인들을 구소련이 초청하는 형식이었다.<sup>49)</sup> 양자 간 협의는 빠르게 합의에 도달했으며 1946년 3월 19일자 소련인민위원소비에트 결의 621-256c호로 확정됐고 북한내 소련군사령부에 특별허가로 전달돼 실행됐다.<sup>50)</sup>

양자 간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 노동자의 모집은 기본적으로 전후복구가 긴요했던 소련의 계획과 주도로 이루어진 사업이었다.<sup>51)</sup> 소련 측이 노동자의 모집 부문을 특정했을 뿐 아니라 실제 모집

49) Забровская ЛВ Трудовая миграция из КНДР в Россию (середина 1940-х - 2003 гг.) //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5, 2005, с.63.

50) Кузин А. Т., *Исторические судьб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т. 2, Ю.Сахалинск, с.77.

51) Кожемяко Е. Г., Корейские рабочие как источник пополнения кадров в рыбном хозяйстве Сахалин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ук: социология, политология, философия, история»: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по материалам XLIX-L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17 июня 2015 г.), <<http://sibac.info/conf/social/xlix/42464>>. (검색일: 2016.8.20).

과정과 노동 현장까지 이동과 배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주도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소련은 중국인 모집노동자를 주로 광업 분야에 배치한 반면, 북한 노동자는 어업 분야에 집중시켰다.

모집 첫 해에는 종사 부문에 대한 구분이 일관되게 지켜지지 않거나 모집 체계가 행정적 절차와 부응하며 진행되지 않은 사실도 나타난다. 가령 극동 지역 어업 노동자로 모집된 북한 노동자의 일부가 별목이나 농업 등에 배치된 경우라던가,<sup>52)</sup> 필요한 행정 절차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2만 명 이상의 인원 모집이 급하게 진행된 정도도 엿보인다. 그럼에도 다음의 표가 보여주듯 1946년 6월 말경에 극동에 배치된 북한 노동자는 수산업 분야에 집중되었고, 그 약 1/3을 넘는 7천539명이 쿠릴지역을 포함하는 사할린 각지에 배치되었다.<sup>53)</sup>

소련이 최초의 북한 노동자 파견을 사할린 어업 분야에 한정하는 데는 이유가 없지 않았다. 무엇보다 패전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철수하는 일본인들이 나타났다. 타 업종에 비해 어업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귀환을 시도하기에 유리한 만큼 어업은 위협에 직면했다.<sup>54)</sup> 남사할린을 ‘해방’ 시킨 직후 소련의 조사에 따르면 남단의 아니바 만에서 혼토

---

52) 하바롭스크 변경구나 마가단 지역으로 간 일부 북한 노동자들이 어업 이외 분야로 배치되었다. Забровская Л.В, Трудовая миграция из КНДР в Россию (середина 1940-х - 2003 гг.) //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5, 2005, с.63.

53) 이상은 Кожемяко Е.Г., Корейские рабочие как источник пополнения кадров в рыбном хозяйстве Сахалин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ук: социология, политология, философия, история»: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по материалам XLIX-1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17 июня 2015 г.), <<http://sibac.info/conf/social/xlix/42464>>. (검색일: 2016.8.20)를 참조.

54) 일제시대에 어업은 1만 7천500여 명이 종사하던 사할린의 주요 산업으로 여기에 일본, 특히 홋카이도로부터 1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계절 노동력이 유입되어 최대 3만 5천여 명이 활동하던 분야였다. Бьлое // Историческое чтение, № 2, «Южный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 1945-1947 гг.», Ю.-Сахалинс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996-1997, с.42.

(本斗, 현재는 홉스크)시까지 사할린 남서부 해안가에 거주하던 어민의 90% 가량이 철수했다.<sup>55)</sup> 1946~1949년 사이 전후처리 과정에서 잔류 중인 1만 3천686명의 일본인 어업 종사자들도 대부분 귀환이 예상됨에 따라 어업 분야는 사실상 고사될 위험에 처했던 것이다.<sup>56)</sup> 다른 주요 생산 분야도 일본인의 귀환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했으나 어업 이외 분야는 귀환을 고대하며 남아 있던 한인들로 일정 정도 대체가 가능했다. 일제가 총동원 체제에서 조선인들을 탄광이나 제지공장, 건설 등에 집중시켰기 때문이었다.

**표 III-1** 1946.6.25. 기준 극동 지역 수산업 분야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현황

지역	모집 인원	실제 파견인원
캄차카	10,861	8,667
쿠릴열도	3,437	3,437
남부 사할린	2,000	2,000
북부 사할린	2,102	2,102
아무르지역수산업총국(Главамуррыбпром)	3,200	3,200
연해주지역수산업총국(Главприморрыбпром)	-	-
	21,600	19,406

자료: Кожемяко Е.Г., Корейские рабочие как источник пополнения кадров в рыбном хозяйстве Сахалин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 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ук: социология, политология, философия, история»: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по материалам XLIX-L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17 июня 2015 г.), <<http://sibac.info/conf/social/xlix/42464>>. (검색일: 2016.8.20) 참조.

<sup>55)</sup> 아나톨리 쿠진 지음, 문준일·강정하 옮김, 『사할린 한인사』 (서울: HUEBOOKS, 2014), p. 90.

<sup>56)</sup> 기아소, 171-3-7, 123장.

I  
II  
III  
IV  
V

일제시대 어업 분야 사업체들을 관리하게 된 사할린수산업총국(Гл авсахалнирыбпром)은 어업 부문을 대체할 인력이 외부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1946~1950년까지의 5년 계획안의 수산업부문 생산 목표치 15만 톤을 달성할 수 없다고 중앙정부에 강조하였다. 어업의 정상화를 위해 모두 3만 2천 명이 필요하다고 추산하였던 사할린수산업총국은 이주민으로 들어 온 1만여 명의 러시아인을 투입한다 해도 2만 2천 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면서 당분간은 귀환 예정인 일본인 어부들을 활용한다고 해도 1만 명 정도의 추가 인원이 외부에서 공급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sup>57)</sup>

이와 같이 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북한 노동자 파견은 현지의 시급한 필요 때문이었다. 구소련은 북한 노동자들을 직접 대규모로 신속하게 모집해 투입했다. 당시 어업노동자 모집에 응모한 한 노동자에 따르면 ‘소련의 모집 선전으로’, ‘대량모집’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젊은 남자들이 전사했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라곤 여자들뿐이었고 게다가 어업노동자들이 부족하여 대량모집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을 수만 명 배로 실어갔습니다. (중략) 소련의 모집선전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중략) 감차카, 사할린 등에 파견되었는데, 나도 그때 배를 타고 (중략) 들어갔습니다.”<sup>58)</sup>

최초의 노동자 모집에서 실무의 선두에 섰던 인물은 당시 소련 수산업총국 위원(발킨, Вяткин)이었다. 북한 지역으로 출장하여 청진을 중심으로 모집을 추진하던 그는 1946년 3월 말에 함경도 지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목도하고 동해안 인근 지역에서 만으로도 사할린 지역

<sup>57)</sup> 기아소, 264-1-216, 28장.

<sup>58)</sup> 러시아 인권운동가 김마리아의 언급 재인용,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kangilee&folder=7&list\\_id=3518782](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kangilee&folder=7&list_id=3518782)>. (검색일: 2016.8.19).



에 필요한 인력은 모두 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sup>59)</sup> 같은 해 4월 말까지 동해안(함경도) 지역에서 3천500여 명을 모집했고 북한에 주둔하던 소련군사령부의 협조 아래 모집노동자들이 북한에서 극동 지역의 작업장까지 무료로 수송되었다. 첫 도착자들이 사할린 땅을 밟은 시기가 1946년 5월이었음을 보면<sup>60)</sup> 얼마나 빠른 속도로 모집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 라. 파견노동자의 성격과 계약

1946년도 최초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구체적인 개별 신상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보았듯이 전격적인 모집 과정에서 최소한의 기록들만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당시 파견된 사람들의 증언처럼 첫 파견자들은 대부분이 얼마 안 돼서 북한으로 돌아갔던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최초 파견노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연구와 당대인들의 전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당시의 모집은 중노동에 특해도 기대하기 어려운 노동이 주였기에 응모 희망자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1940년대 후반 소련의 타 지역으로부터 이주하고자 했던 슬라브계 이민자들에게도 사할린과 쿠릴은 대단히 힘든 여건에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었고 이주희망자 수는 당국의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sup>61)</sup>

<sup>59)</sup> Кожемяко Е.Г., *Корейские рабочие как источник пополнения кадров в рыбном хозяйстве Сахалин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ук: социология, политология, философия, история»: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по материалам XLIX-L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17 июня 2015 г.)*, <<http://sibac.info/conf/social/xlix/42464>>. (검색일: 2016.8.20).

<sup>60)</sup> 아나톨리 쿠진, 『사할린 한인사』, p. 112.

I
II
III
IV
V

물론 북한의 응모자들은 구소련 국민만큼 당시의 지역 사정을 파악하기는 어렵기도 했지만 대체로 북한 사회에서 출세하기 어려운 이들이 주로 응모했다. ‘파견노동자’들의 사회적 성분은 농민, 별목공, 교사, 의료인, 사무원 등 다양했고, 떠돌이나 극빈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연령은 40세 이상이 다수였고,<sup>62)</sup> 죄수들까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sup>63)</sup> 실제 당시 북한의 임시인민위원회 치하에서 소위 ‘반동’ 계급에 속하는 이들이 응모하여 구소련의 어업노동자로 파견된 정황도 있다.<sup>64)</sup>

캄차카 지역으로 가는 어업노동자에는 일본인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1945년 말에서 46년 초까지 소련 군정 하에서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계급투쟁’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에 각종 권리와 지위를 박탈당하던 상황에서 소련 당국이 흥남 공업지역 일대에서 사할린과 캄차카 방면의 고기잡이배에 탈 노동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응모했던 사람들이었다. 당시 약 2천 명이 모집에 나서 1946년 5월에 함흥에서 610명이 첫 어업노동자로 구소련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그들은 당시 일본인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한다.<sup>65)</sup>

61) Крушанова Л.А., *Мигра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СССР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ередина 1940 х –1970 е гг.)*, Владивосток, 2014, с.78.

62) Кузин А.Т., *Исторические судьб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т. 2, Ю.Сахалинск, с.77.

63) Забровская Л.В., Трудовая миграция из КНДР в Россию (середина 1940-х - 2003 г г.) //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5, 2005, сс.63-64.

64) 김마리아 본인의 경우를 언급한 다음의 증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일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북한에서는 ‘반동’ 취급을 했습니다. (중략) 당시 착실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눈엣 가시였으며, 더욱이 나는 이른바 부유층 처녀였고, 아버지는 친일파였습니다.”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kangilee&fold=7&list\\_id=3518782](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kangilee&fold=7&list_id=3518782)>. (검색일: 2016.9.13.).

당시 파견된 노무자들은 북한이 정부를 꾸리기 이전 단계에서 장차 정부 수립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따라서 추방하는 차원에서 모집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자면 북조선 임시인민 위원회는 어업노동자 파견을 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셈이다. 전후 시기 생산 시설이 파괴돼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극동 지역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소련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잠재적인 국내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sup>65)</sup>

사할린에 억류 상태로 남아 있던 소위 선주(先住) 한인들의 눈에도 최초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질적인 이들이었다. 사할린한인 귀환운동에 앞장선 박노학은 자신의 회고를 통해 첫 파견노무자들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였다.

“1946년 5월경이다. 북한으로부터의 파견 근로자가 4천 톤급 선박에 1천여 명이 타고 왔다. 오랫동안 전쟁에 지쳐 내핍생활을 한 탓인지 그들의 여장은 같은 동포이면서도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없었다. 사할린에 이미 정착해 있던 다른 동포들이 이들 가련한 사람들을 접대해줬다. 그 후 몇 차례 선박이 도착했다. (중략) 그러나 이들은 우리들과는 사상이 다른 탓인가. 늘 쌍방 사이에는 불화가 있었으며 가끔 다투기도 했다.”<sup>67)</sup>

<sup>65)</sup> 이연식,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점령군·조선인·일본인 3자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9), pp. 237~238, 392. 이연식은 일본인들의 어업노동자 응모에 대해 해방 이전 북한 소재 공장이나 기업에 종사하던 일본인들이 현지 작업장 정상화를 위한 재취업의 상황 속에서도 모두 복귀하지 못하였던 것이 더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즉 복직 대상이 된 일본인은 극소수 핵심기술 보유자들이었고, 그 결과 단순작업에 종사하던 일본인들이나 복직에서 제외된 이들은 일자리를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1946년에 접어들면서 38이북 공업단지에서조차 회생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도탑에 빠진’ 이들이 적지 않았고, 이들이 소련으로의 어업노동 응모자들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sup>66)</sup> Крушанова Л. А., *Мигра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СССР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ередина 1940 х -1970 е гг.)* Владивосток, 2014, сс.130-131.

I
II
III
IV
V

다른 이들의 눈에 비친 첫 파견노동자들의 삶은 그야말로 이류 혹은 삼류 인생이었다.

“사할린에서 ‘파견노무자’를 갖다가 발음이 잘 안되니까 ‘팔개 노무자, 팔개노무자’ 그렇게 했어요. 일부러 판다는 말을 붙여 가지고 팔개라는 별명을 붙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발음을 그렇게 했죠. (중략) 북한에서 들어온 파견노무자들을 보고 일본말로 ‘니방꼬(二番子)’라고 했거든요. 저, 이등인물, 이등인간.”<sup>68)</sup>

“북조선서 파견 온 사람들을 산방꼬(三番子)라 했어요. 우리가 니방꼬(二番子)야. 그렇게 갈렸어요, 그 때. 그 답에 파견노무자들도, 46년도에 한번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그 답에 47년도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남았어요. 남아서, 한동안 남고, 그 중에는 소련 국적을 받은 사람들도 많고 (하략)”<sup>69)</sup>

도착 후 얼마 되지도 않아 이류 인생을 의미하는 일본어 ‘니방꼬(二番子)’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삼류 인생이라는 뜻의 ‘산방꼬(三番子)’로 불린 ‘파견노무자’의 삶은 당대 사회의 일반적 인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노동자는 한반도 남부 출신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던 남사할린의 한인 사회는 물론 소비에트 체제 건설 일꾼으로 ‘당의 부름’을 받고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사할린으로 들어온 ‘큰땅배기’들과도 구별되는 이들이었다.<sup>70)</sup>

파견노무자의 현지 삶은 일차적으로 계약을 통해 결정되는 까닭에

67) 박승의, 『사할린 한인의 운명: 역사, 현황과 특성』 (춘천: 금강 P&B, 2015), pp. 176~177에서 재인용.

68) 국사편찬위원회, 『사할린 한인의 동원·역류·귀환 경험: 광복 70주년 기념』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15), pp. 188~189 (정장길 구술).

69) 위의 책, p. 32 (김영빈 구술).

70) 큰땅배기란 사할린 한인들이 대륙에서 온 한인, 즉 고려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1946년의 경우 이들 ‘큰땅배기’의 수는 30여 명에 불과해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자신들의 지도적인 지위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일제시대에 이주한 한인과 거리감 역시 컸다.

최초 파견자들의 계약 내용이나 근로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초의 북한 노동자 파견이 계약서를 주고받는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의심스럽다. 구소련의 극동지역에 대한 노동자 모집 계약의 근거가 되는 소련각료협의회 결정이 1946년 6월 12일해야 나왔기 때문이다.

소련각료협의회 지시 1128호<sup>71)</sup>는 ‘극동지역 기업체들에서의 노동을 위한 노동자 모집의 조직에 관하여’라는 부제를 가지며 ‘소련 동부 지역에서 석탄업, 석유업, 어업’ 등의 산업을 위해 1946년 6~8월 사이에 노동자 모집을 조직한다는 내용이다. 모집 노동자의 파견 대상 지역 중 하나에 남사할린도 들어가 있는데(1~2조) 특히 수산업을 위한 외국 노동자 파견 대상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조 이하에서 모집 당국의 의무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된 계약서의 양식도 제시하고 있다.<sup>72)</sup>

구소련 내각은 1946년 6월해야 이후에 조직되는 노동자 모집의 기본 지침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이후 모집자들에게나 적용될 수 있었다. 최초로 도착한 북한 출신자들은 1년짜리 단기 노동자로 정식 계약이 없이 소련으로 유입된 경우였던 것이다.<sup>73)</sup>

71) 기아소, 53-5-86, 14-16장. Постановление СМ СССР № 1228, 1946.6.12.

72) 당국의 주요 의무 사항으로서 (중략) a) 노동자에게 무반환 보조금 2,000루블을 지급하고, 그 가족들에게 1인당 250루블씩 지급할 것, b) 개별적인 거주 공간 제공 (단 건설비가 2만 루블을 넘어서는 안된다), (중략) d) 노동자가 원하면 작은 가족과 가구류를 키울 수 있게 한다, e) 개별 노동자에게 교육을 시행하며 이매도 월 250~300루블의 월급을 준다, f) 개인별로 외투, 정장, 신발 한 켤레, 이불 2개, 10미터의 천을 제공하고, 그 가족에게는 개인별로 5미터의 천을 제공한다, g) 가족을 포함한 이동비용, 짐 이송비용은 기업체가 부담한다 등의 규정이 보인다. 위의 자료, 14~15장.

73) 이는 당시 대민 행정체계가 완전히 확립되지 못한 시기에 군 조직을 활용하는 모집이 행해지는 상황에서 외부 유입 노동인력에 대한 정책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어려웠고,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사회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1946년 이후 대민 행정체

I
II
III
IV
V

소련 각료협회의 1128호 지시는 1946년에서 1947년 사이에 외국인 노동자 수용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계약 조건이 구체화 및 체계화 되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노동자가 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은 두드러진 변화다. 소련 각료협회는 이어서 1947년 3월 16일에 어업 부문의 생산 강화를 위한 지령 570호도 발의하였는데 이 지령에서도 정책 변화들을 엿볼 수 있다. 사할린을 포함한 극동지역 북한 파견노무자의 1947년도 모집 인원을 2만 2천 명으로 정한 지령 570호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모집인원 중 1만 명의 계약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한다는 조항(4-b항)이다.<sup>74)</sup> 임시 노동이기는 하지만 1년간의 단기가 아니라 가족을 동반해 다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련당국의 정책적 변화는 사할린 현지에서 수집된 파견노무자 계약서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정식 명칭이 ‘조선노동자의 재원동어업지대노동계약서(朝鮮勞動者의在遠東漁業地帶勞動契約書)’인 당시 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서 모집된 북한 출신 노동자들의 이주 상황을 보여주는 물적 증거다.<sup>75)</sup>

---

계가 자리잡아가면서 1228호 지시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후속적으로 마련되어 이후 모집 과정을 통해 정착되었음을 시사한다.

<sup>74)</sup> 570호 지령의 일부 조항들은 Кузин А.Т., *Исторические судьб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т. 2, Ю.Сахалинск, с.с.286~287에 실려 있다.

<sup>75)</sup> 개인에게 발급한 계약서임이 분명하지만 이 자료의 제목이나 기록된 계약의 상세 조건 판독이 곤란할 정도로 문서의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한 자료임을 밝힌다.

## 조선노동자의 재원동어업지대노동계약서

제 호

계약체결장소 서기 1947년 월 일

소련 동부지방어업성 대표자 \*\*\*\*\* (이하 채용자라고 칭함)하고 조선노동자 \*\*\* (이하 노동자라고 칭함)와 본 계약을 좌(左)와 여(如)히 계약함.

### 1. 노동자의 의무

노동자는 좌와 여한 의무가 유(有)함.

1. 소련원동어업지대에서 \*\* (직책별)로서 \*\*\* (기간) ... 노동할 사(事).
2. 북조선내에서 의사의 진료와 검역을 수(受)할 사(事).
3. 소련내 직장에 행(行)하기 위하여 승선장소에 1947년 \*월 \*\*일까지 도착할 사(事).
4. (탈락) ... 작업장소의 규정을 준수하며 당국의 명령에 복종할 사(事).

### 2. 채용자는 좌(左)와 여(如)한 의무가 유(有)함.

5. 노동자 본인과 다음에 기록된(左記) 동행할 가족들의 현거주지에서 검역 장소간 철도여행비를 부담할 사(事).

순번	성명	노동자와의 친족관계	생년월일

6. 승선항부터 소련 직장까지 노동자와 본 계약 제 5조에 기(記)한 가족과 소지품(의복, 신발, 침구 기타 필요품) 중량은 노동자 각인 50 천(匁, 킬로그램) 이하 가족 매인(每人) 20 천을 운송, 비용을 부담함. 승선항명: \*\*\*\*\*
7. 검역중과 직장에 행하는 항해중 노동자에게 대하여 일일 5루부루(20원) 식 일당을 지급하고 좌와 같이 식량을 무료로 배급함.  
노동자에 대하여서는 매일 백미 500와(瓦, 그램), 생선 210그램, 조미료 200그램(장유(醬油)류), 야채 250그램, 가족에 대하여 매일 매명(每名) 백미 300그램, 생선 100그램, 조미료 100그램(장유류).

I  
II  
III  
IV  
V

- 백미는 5할까지 조(粟)로 배급함을 득(得)함.
8. 승선시 전도금(前渡金)으로 \*\*\*루부루(조선화폐로 \*\*\*\*원), 작업복 1벌, 노동화 1족, 백미 50킬로그램(砵)을 교부함. 교부한 작업복, 노동화, 백미 대금과 전도금은 5개월간에 노동임금에서 공제할 사.
  9. 소련 직장에 도착한 시일로부터 규정임금을 지급함. 단 지불할 임금에서 현행 법률로서 규정된 노동 임금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함.
  10. 노동자가 요망하면 임금의 50%까지는 조선에 송금할 수 있음.
  11. 작업에 착수하기 전 노동자에 대하여 기술과 작업장내의 규칙과 노동조건 등을 소개함.
  12.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소련 내에서 노동하는 기간은 사가(舍家) (바라그, ○○)를 제공할 사.(그 사용료는 ○○ 부담으로 함).
  13. 직장에 도착한 시로부터 본 계약기일 만료한 시일까지 ○○와 일용필수품 등은 규정 가격(소련 인민에게 부과하는 가격)으로 ○○함.
  14. 노동자가 병난 시는 의료는 무료, 단 병중 평균임금을 지불함.
  15. 본 계약기간 만료하면 노동자와 그 가족과 소지품(노동자 매인 70천(킬로그램) 이하 가족 매명 25천(킬로그램)을 북조선 항구까지 수송함. 단 그 비용은 채용자가 부담함.
  16. 소득 소련화폐는 귀국시에 조선화폐로서 교환하여 줄 사(事).
  17. 노동에 관한 쟁의는 소련 노동법과 보험법에 의하여 해결할 사(事).
  18. 본 계약 기한은 \*\*\*\*\* 부터 \*\*\*\*\* 로 함.
  19. 본 계약서는 노문(露文)과 조선문으로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노동자가 소지하고 1통은 직장에 부송(付送), 1통은 소련 동부지방어업성 주북조선 대표자가 보관함.

#### 조선노동자의 신분조회서

씨명: \*\*\* 생년월일: 1914년 \*월 \*일    당년: (35)세  
재북조선 거주소: \*\*\*도 \*\*\*시(군) \*\*면 \*\*리  
송금영수자의 성명: \*\*\*    부  
조선 주소: \*\*도 \*\*시군 \*\*면 \*\*리 \*\*동 \*\*번지  
소련에 여행허가 발행기관명: \*\*\*시 \*\*사령부  
허가발행기일과 번호: (3) 월 (20)일 \*\*\*\*\*호  
채용자 소련동부지방어업성 주북조선 대표자 \*\*\*\*\*  
노동자의 성명: 허 \*\*  
고용지에서 좌(左)와 같이 교부함(대금은 임금에서 공제함)  
기일  
종목: 백미 50천(킬로그램)/ 작업복 1착 / 신발(靴) 1족/  
전도금 \*\*\*루부루 (\*\*\*\*원)



전체적으로 위의 계약서는 소련각료협의회 1128호 지시에 따라 제안된 노동계약서의 형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이에 비교되는 것이 사할린의 또 다른 어업 중심지 토마리에서 확인한 1948년도 어업 분야 북한 노동자의 노동계약서다. '2년간 조선노동자의 재원동어업기업소 노동계약서'라는 명칭을 비롯해 1947년도 계약서에 나타난 일본식 어구의 수정과 모호한 문구를 명확히 하는 등의 변화가 보이기도 하지만 1948년도 계약서 역시 전년도 계약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 사진 III-1 > 1948년도 북한 노동자 노동계약서



자료: 사할린 거주자 소장 자료를 연구자가 촬영, 2014.7.

1947~1948년 노동계약서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형식상 계약은 노동자 개인과 소련동부지방어업성 사이에 체결된 것이나 내용을 보면 구소련 측의 관심 사안이 적극 반영되어 있다. 여행허가 등 이하 실무적인 관련 업무 역시 지역의 사령부, 즉 군사 관련 조직이 담당해 소련이 주도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사용자 측의 관심이 적극 반영된 부분은 그 뿐이 아니다. 모두

I

II

III

IV

V

4개조인 노동자의 의무(1~4조)에 비해 채용자(고용주)의 의무는 모두 12개조(5~16조)로 3배나 되지만, 1조에서 보듯 고용주는 많은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대신에 노동자의 계약기한을 ‘경과할 때까지 잔류시킬 권리’ 있고 ‘노동자는 그 시기까지 잔류할 의무를 가진다’고 함으로써 다분히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이 긴요했던 구소련 측의 관심 사항을 반영하였다. 노동자에게 이중의 복중 의무를 부여한 4조도 그러한데, ‘작업장소의 규정’과 ‘당국의 명령’에 따라야 했고, 17조에서 보듯 노동 관련 ‘쟁의는 소련의 법’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1947년도 계약서와 1948년도 계약서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인 1조도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즉 1947년 계약서에는 노동 기한에 대한 언급만이 보이나 1948년도의 경우에는 2년간 노동에 의무 종사한 노동자의 계약 만료 시점이 어기(漁期) 전일 경우 고용주에게 해당 어기까지 노동자를 잔류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1조와 4조, 17조 등을 보면 소련 측의 관심은 확보한 노동력을 통제하고 최대한 활용하기에 용이하도록 만드는데 있었다.

둘째로 고용주가 져야했던 여러 가지 부담의 의미이다. 고용주는 노동자만 아니라 동행하는 가족들을 위한 여러 부담을 안아야 했다. 북한의 거주지에서 검역소까지의 여행비, 승선과 이동시 소지품 송달비, 이동 중 식량배급 의무 등이 대표적이다. 가족에 대한 부담은 1946년도의 노동자 단신 이주에서 1947년도부터 가족 동반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생겨난 것인데 이는 노동 효율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76)</sup> 노동자는 1948년 계약서의 8조에서 보듯이 승선시 500루블(조선화로 2천 원 해당)의 반환이 필요 없는 부조금을 받았고,

<sup>76)</sup> 일제 역시 생산성 증대를 위해 강제 동원된 노무자들에게 가족 초청을 허용하고 그 비용을 부담했던 선례가 있다.

작업복과 식량 등도 제공받았다. 또 다른 부조금 500루블은 당시 북한의 일반노동자나 사무원의 평균 월급(800~1천 원)의 2~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sup>77)</sup> 그보다는 이들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이 '5개월간 노동임금에서 공제'되는 채무와 같은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활동 기간 중 필요한 거주비 역시, 12조에서 보듯 일종의 빚으로 처리되었으며, 노동자는 합숙이나 천막생활을 하면서 그 사용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상의 채무적 비용 처리 역시 일제시대 노동자 모집 관행을 연상케 하는데, 당시에든 모집 활동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과 원거리 이동비용, 현지 숙식비 및 장구 이용료까지 모두 사전 빚으로 처리되어 월급에서 공제했던 바 있다. 다만 1948년도 계약서상 식비의 경우 북한 노동자들이 '현금으로 식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 공제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지불의 주체가 되도록 한 점에서 차이가 없지 않으나 근본적으로는 노동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긍정적인 차이를 갖는 조항도 있다. 바로 15조로 노동자의 귀환과 관련 비용의 부담 주체를 소련 측 기업으로 명시한 것으로 북한 노동자와 소련 어업성 간의 계약에서 두드러진다.

## 마. 파견노동자들의 삶

1946~1949년 사이에 모집되어 실제 사할린으로 유입된 북한 노동자의

<sup>77)</sup> 당시 조선인의 경우 기술자 계장급이 1천500원, 광산장이 2천500원 가량을 받았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일성의 월 급여는 4천원이었다. 북한의 봉급 수준에 대해서는 김재용, “재북한 일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북한의 일본인 기술자 정책(1945~1950),” 『동북아역사논총』, 제44호 (2014), p. 237을 참조하였다.

규모는 다음 <표 III-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모두 2만 891명이었다.

**표 III-2** 사할린 지역으로 유입된 북한 노동자(1946~1949)

연도	유입			유출		
	총수	그중		총수	그중	
		노동자	동반가족		노동자	동반가족
1946	7,523	7,523	-	6,595	6,595	-
1947	6,474	5,083	1,391	-	-	-
1948	11,888	8,105	3,783	5,406	4,113	1,293
1949	180	180	-	2,394	1,678	716
합계	26,065	20,891	5,174	14,395	12,386	2,009

자료: 기아소, 53-7-105, 27장(1952.1.1. 생산 자료).

기한을 마치고 귀환한 이는 1만 4천395명이었으므로 이후에 남은 이가 1만 1천670명이 된다. 또한 1947년과 1948년의 가족 동반 유입과 1946년과 1949년도의 노동자만 들어온 점도 대조되는데 특히 1949년도 유입자는 북한에서 신규 출발한 이들이 아니라 이미 이전 시기에 모집되어 아무르 지역의 ‘오호츠크 고스리브트르스트(Охотский Госрыбтрест)’ 소속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사할린으로 이전 배치된 것이었다. 북한의 인력 파견은 실질적으로 1948년으로 종결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20세기 전반 사할린의 북한 파견노무자 역사에 주류가 되는 이들은 1947~1948년의 파견노무자다. 이들의 구체적인 생활과 면모를 보여주는 개인 문서와 기록, 증언 등의 다양한 자료가 존재한다.

먼저 파견노무자 개인의 구체적인 면모를 조○학이라는 인물의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sup>78)</sup> 1924년 청진 생인 조○학은 ‘사할린어업총국’ 소속으로 흠스크 군의 프라브다 촌에 배치된 인물이다. 그의 최초

<sup>78)</sup> 기아소, 123-2-111(조○학)을 참조하였다.

사할린 도착일은 1947년 5월 1일이었고, 첫 계약 기간은 1951년 3월 까지 약 4년이였다.<sup>79)</sup> 그런데 1948년 4월 사할린 토마리에 들어와 신규 거주등록을 한 내용을 담은 같은 기록 세 번째 페이지에는 동일인 임이 분명한 조○학이 1927년생으로, 출생지는 함경도 길주로 나타나고 있다.<sup>80)</sup> 출생년도와 태생지가 다른 동일인물이 한 기록철에 들어있고, 작업장을 옮기고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었음을 시사하는 이 자료는 당시 양국 관계에서 노동자 모집이 철저한 관리와 점검 속에 진행되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북한에서 어업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던 조○학은 ‘1948년에 토마리로 들어와 1952년까지 계약에 의해 어업 콜호즈에서 일했으며, 1952년 5월로 계약이 끝남에 따라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동하고자 한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이렇게 1952년 이후 어업에서 다른 노동 분야로 옮겨가고자 한 조○학의 청원은 1953년 4월에 그가 유즈노사할린스크 거주 허가를 받는 것과 더불어 종결되었다.<sup>81)</sup>

1950년대 초에 생산된 조○학의 기록을 통해 북한 파견노동자들은 초기에 소련의 주도와 관리 아래 어업 분야 노동에 종사하였으며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점차 타 업종으로 노동 분야를 바꾸어 나간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작업장이나 직종으로 옮길 때마다 새로운 거주등록 절차를 밟았던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는 조○학의 개인 기록에서 확인되었던 바 파견노동자에 대한 현장의 행정적 관리는 비록 느슨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보이지만 북한 출신 노동자에 대한 국가적 관리까지 느슨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79) 위의 자료, 1장(임시거주허가증: 1949.3.11.자, 3743호)의 여러 정보를 정리.  
80) 위의 자료, 거주등록증 8240호.  
81) 위의 자료, 14~16장. 16 뒷장을 보면 스트로이플로사스카라는 작업장의 곡물조달 업무 담당으로 소속과 일이 바뀌었음이 확인된다.

다른 기록들에 반영되어 있듯이, 파견노무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는 엄격하였고, 선주민인 사할린 한인과 구분해 외국인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가령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로 사할린 한인 주민 관련 사업 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사할린주 공산당 주위원회 서기가 작성한 1947년 12월 25일자 474호 보고서는 사할린 내 한인의 인구를 2만 8천399명으로 언급하면서, 그중에 해방 이후 북한에서 모집을 통해 들어온 노동계약자 5천582명을 제외한 2만 2천817명을 일본인들에 의해 사할린으로 '연행된 이들'로 표현한다.<sup>82)</sup> 이 보고서는 1945년 8월 이후 사할린에 잔류하고 있던 한인과 북한인을 처음부터 구분하며 관리했음을 보여주는 바, 비자를 기반으로 출입국 관리가 진행되었음을 시사한다.

북한 파견노무자들은 사할린 여러 곳의 어업 사업체들에 배치되어 현지 업체의 관리 아래 놓이게 되었다. 1948년에 들어온 파견노무자들의 경우는 주요 사업체별 소속 현황이 확인되는데, 다음 <표 III-3>과 같았다.

**표 III-3** ▶ 북한 파견노무자 배치 사업체별 현황(1952.1. 기준)

사업체명	배치된 북한인 총인원	그중 노동자와 가족
서 사할린 트러스트	3,900	2,007+1,893
동 사할린 트러스트	1,764	946+818
북 사할린 트러스트	567	412+155
쿠릴 고스티브 트러스트	1,648	360+788
네벨스크 어항	277	206+71
크라스노고르스크 수선소	113	61+52
사할린어업총국 소속의 기타 소규모 작업장들	1,248	918+330
<b>계</b>	<b>9,517</b>	<b>5,410+4,107</b>

자료: 기아소, 53-1-105, 28장.

<sup>82)</sup> 기아소, 4-1-332, 215장.

1948년에 어업 관련 기업소에 배치된 북한 노동자의 대부분인 85% 가량은 어획 및 손질 등의 상대적으로 단순 노무 분야의 현장노동 종사자로 나타난다. 이는 파견노무자들의 종사 업무에 대한 기술 수준이 낮게 평가된 것과 관련이 있다. 기록에 따르면 기술 훈련을 거친 노동자가 전체의 50%가 넘는 2천760명이나 되었다. 한편 이 무렵에는 파견노무자 중에서 소규모 작업단(브리가다)의 책임자들(브리가질, 작업반장)들도 출현했다. 작업반장은 모두 378명으로 어업 종사 노동자의 약 7%를 차지하였으며, 이들은 현장의 중간 작업 관리자로서 파견노무자의 전반적인 어로 활동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축으로 활동하였다.<sup>83)</sup>

파견노무자들이 배치된 작업장은 생산과 생활 전반의 현장 통제 기구로서 법적 기준에 맞는 생활 조건을 제공해야 했다. 파견노무자들에게는 노동자 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도 극북지역 어업 분야 노동자의 기준에 상응하는 배급과 생활방편들이 제공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1946년 파견자들의 생활환경은 전반적으로 열악했다.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의 기숙사는 지붕에 비가 새고, 방에는 가구가 전혀 없었고, 빈대가 끓었다. (중략) 생선 가공공장인 '사르투나이'의 목욕탕은 폐허로 노동자들이 잘 씻지 못했고, 소독실도 없었으며, 다른 생선 가공공장 기숙사에서는 2개월간 목욕탕을 수리하는 동안 노동자들이 씻을 수 없었다. 비누 등 생필품 보급도 원활하지 않아 전반적인 위생상태가 위험한 지경에 빠지는 경우도 빈번했다.<sup>84)</sup>

극동군관구 정치보위부 과장은 북한 파견노무자들의 작업장들에서 “북조선에서 온 노동자들의 접수, 배치 근로와 관련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으며 … 열악한 주거, 위생 조건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했고,

<sup>83)</sup> 이상 기아소, 53-1-105, 28~29장.

<sup>84)</sup> 아나톨리 쿠진, 『사할린 한인사』, p. 117에서 재인용.

사망한 사례들도 있다. … 부당한 관행과 배급권의 불공정한 지급, 박대와 욕설, 구타의 사례들도 있다”고 보고했다.<sup>85)</sup>

초기 파견자들은 독신 계절노동자로서 작업장에서 집단 거주하며 단체 생활을 강요받았다. 하지만 1947년 이후 가족을 동반하게 되면서 열악하더라도 당시 어촌의 일본인들이 남긴 집들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후 점차 독신자들만 기숙사 등 소련식 거주 시설에 남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작업장으로 출퇴근하는 생활 방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951년 말경에 어업 노동자의 70% 가량인 3천730명이 일본식 개별 주택(통상 땅집으로 불림)이나 소규모 집단 주택의 단독 공간에 거주하고 있었고 집단생활을 하는 독신 노동자는 1천630명으로 오히려 소수가 됐다.<sup>86)</sup>

개별 주택의 거주 상황은 일반화하기 어려우나 북한 파견노동자의 후손으로 1951년 사할린에서 태어난 정홍식이 자신의 집에 대해 회고한 바를 통해 그 모습을 그릴 수 있다. 정 씨 가족 8명이 거주했던 네벨스크의 그 집은 ‘일본인들이 넘겨 준 판자집’으로 두 개의 판자를 세워놓고 그 사이에 타고 남은 석탄 찌꺼기와 톱밥을 채워 넣은 것이어서 따뜻함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장작도 없고 석탄을 살 돈도 없어 아이들이 석탄을 주워 간혹 난방을 하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하지만 ‘판자집에는 조그만 야채 밭이 딸려 있어’ 채소를 키울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돼지도 길렀다’.<sup>87)</sup>

독신 노동자들의 기숙사 거주 여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개선되었다. 1인당 전용 거주공간은 평균 4.06㎡였고<sup>88)</sup> 기숙사에는 책상과

<sup>85)</sup> 위의 책, p. 118에서 재인용.

<sup>86)</sup> 기아소, 53-7-105, 29장.

<sup>87)</sup> 유리 미하일로비치 텐 지음, 이원용 옮김, 『나의 사랑 러시아!』 (서울: 재외동포재단, 2003), pp. 56~57. 유리 텐으로 한국에 잘 알려진 그는 1951년 사할린 네벨스크에서 태어나 러시아연방하원 3선 의원을 지낸 저명한 정치가다.



접는 의자, 급수 시설과 욕실 등이 제공되었으며, 비록 옷장, 선반, 철제 침대 등이 부족하기는 하였으나, 침구인 이불을 매달 세 차례 교체 및 세탁(세탁비는 노동자의 부담으로 1~2루블)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나갔다.

진전이 있기는 했지만 거주 조건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울 정도로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1948년에도 북한 노동자와 소비에트 이주민들이 천막생활을 했다는 보고가 있다.<sup>89)</sup> 음식은 한국식으로 제공되지 못했고 쌀 배급 기준(노동자의 경우 1일 500g, 가족은 개인당 300g)은 있었지만 상점망이 구비되지 못해 부식 재료의 구입이 어려웠기에 전반적인 급식 수준은 열악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90)</sup>

이처럼 거주 및 생활의 객관적 조건은 좋다고 하기 어려웠고, 식료품 및 생필품 지급 역시 넉넉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외국인이나 소련의 다른 지방에서 이주한 이주민들의 생활 조건과 작업환경이 파견노동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당시 러시아인 이주민 노동자들이나 파견노동자의 생활 조건은 어업 분야 노동자에 대한 일반 기준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노동이나 작업도 공동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생활 조건의 열악함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 불만이 가중될 여지는 크지 않았다. 거주 유형의 변화는 파견노동자들이 개인

---

<sup>89)</sup> 기록자는 일제시기에 비해 1㎡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평가했다. 기아소, 53-7-105, 29장.

<sup>89)</sup> 양겔리나 바숙, “20세기 후반 러시아극동지역 북한 이주노동자,” 『교류와 협력의 한러관계: 역사와 전망』 (2010년 동북아역사재단 한러 국제학술회의, 2010.8.30~31.), p. 420.

<sup>90)</sup> 정장길은 당시 파견노동자들이 도착 직후 ‘빈털털이로 (선주민보다) 더 구차하게 살았다’고 증언하면서, 이들이 선주민 한인들의 ‘집에 와서 쌀이나 밀가루도 빌어가곤 했다’고 언급했다. 국사편찬위원회, 『사할린 한인의 동원·역류·귀환 경험』, p. 190 (정장길 구술).

적 활동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할당된 생산 기준을 채우고 성실하게 근무하면 노동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더불어 파견노동자들의 수입 수준이 점차 올라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계약 기간은 1~3년 사이였는데, 1년의 계절노동을 체결한 이는 통상 200~250루블의 월급과 1달치 정도의 무상 보조금 이외의 추가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비해 2~3년 노동계약을 체결한 북한 노동자에게는 1948년 1월 27일자 소련각료협의회 890-p.호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부상보조금 500루블과 1천 루블까지의 선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3년 노동계약을 체결한 이는 1948년 이후 구소련 내 극북지역 노동자에 대한 특혜를 적용받게 되었다. 매 6개월의 근무마다 기본급의 10%에 해당되는 추가 급여가 지급되고, 1년 근무당 18일의 휴가 등 혜택 외에도 노동기한을 연장할 경우 제공되는 보조금 900루블까지 받을 수 있었다.<sup>91)</sup>

1951년 말에 북한 노동자 중 3년 근무자에 주어지는 특혜 대상자는 당시 잔류 중인 북한 노동자의 수(5천410명)를 기준으로 약 70%에 해당하는 3천756명에 달하였다. 구소련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파견노동자에게는 오래 근무할수록 유리한 노동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에 충분하였으며 선주민들이 오히려 상대적인 차별과 박탈감을 느낄 정도였다.

“북한에서 노무자 온 거는 계약 조건에 그것도 있었습니다. 3년 계약 왔으면, 그러면 그거 10프로, 1년에 10프로씩 더 추가 준다고. 여러 가지 제한도 있죠. 그 외국 사람이니까 아마 이동 제한도 있었겠죠. (중략) 이것은 다 똑같은데, 계약 조건 해가지고 돈 버는 거는 우리보다 더 많았죠. 같은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돈 많이 벌고 받았어요.”<sup>92)</sup>

<sup>91)</sup> 기아소, 53-5-67. 14~15장.

짧은 기간이었으나 파견노무자들이 경험한 변화는 현지 선주민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현지 선주민(한인) 사회는 초기에 사업체가 제공한 집단 거주 시설에 배치되어 구소련의 노동법에 따라 집단노동을 하던 초기 파견노무자들에 대해 상당한 거리감을 가지며 경원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북한에서 온 파견노무자라 했는데, 90%가 그 사람들이 어장에서 일했어요. 수산업에서 일했는데, 저희들은 도시에서 살고, 그 분들은 어촌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 거의 교섭할 기회가 없었고, 한동네에서 살아도요, 무엇인가 생활사가 접촉이 잘 안돼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뭐하고, 차츰차츰 나아지면 이제 접촉이 되는데, (중략) 그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들어 온 사람들은 파견이라고 했거든요. 파견으로 온 사람들을 파견놈이라고, 그 다음에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큰땅배기’라고, 우리는 내지(內地)라고 했어요. 3부류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결혼할 때도 그때도 아직도 부모님이 허락 안했어요. (중략) 우리는 주로 일제시대에 살은 그런 사람들끼리 그렇게 결혼하고 그랬습니다.”<sup>93)</sup>

일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는 심리적 거리감이 선주민과 파견노무자 사회 사이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파견된 경우 해당 지역 한인 사회 구성과 지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위 조○학이 1948년에 들어온 토마리가 대표적인 경우였는데, 동 시기에 북한 노동자들의 파견과 삶을 목도했던 한 선주민의 증언은 이를 대변하고 있다.

<sup>92)</sup> 국사편찬위원회, 『사할린 한인의 동원·역류·귀환 경험』, pp. 81~82 (박승의 구술).

<sup>93)</sup> 위의 책, pp. 165~166 (전학문 구술).

“1948년도에 북한에서도 많이 왔어요. (중략) 고기잡는 어장으로 해가지고. 토마리도 그때 인구수가, 우리 한인들이 한 세 배는 늘어났습니다. 48년도예요. 그래서 학교가 아주 크게 됐어요.”<sup>94)</sup>

일제시대에 전형적인 광산도시였던 우글레고르스크의 경우는 현지 선주민 한인과 파견노무자간의 상당한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선주민의 언어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

“북한에서 들어온 파견노무자들 (중략)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우글레고르스크 사람들은 (중략) 거의 뭐 95% 이상 아마 남한 출신이거든요. (중략) 그런데 지금까지도 만나면 (우리가) 함경도 말을 써요. 함경도 사투리를. 왜냐면 (파견노무자들 가운데) 함경도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았어요. 원주민보다. (중략) 너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영향 때문에 (나도) 함경도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sup>95)</sup>

이와 같이 초기 파견자들의 삶은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격리되어 있었고 구소련 작업장의 통제 아래 독립적인 삶의 형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현지 거주 기한이 늘어나면서 선주민들과의 접촉 역시 자연스럽게 확대되었고 상호 간에 다각적인 영향을 주고받았다.

---

<sup>94)</sup> 위의 책, p. 233 (허남훈 구술). 당시 구술자의 부친인 허조는 토마리에서 조선 학교를 막 개교하여 민족교육에 나선 시점이었다.

<sup>95)</sup> 위의 책, p. 188 (정장길 구술).

### 3. 안보와 발전의 사이에서

#### 가. 1950년: 안보와 발전

1948년에 실질적으로 1940년대 북한 노동자의 파견은 종결되었지만 기왕 파견된 노동자들의 삶은 지속되었다. 사할린주의 역사에서 1949년은 일본인 귀환사업이 7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노동력의 부족이 가중되던 시기였다. 일본인에 이어 귀환할 것을 기대했던 사할린 한인(선주민)들의 염원도 사실상 이 시기에 좌절되었다. 이듬해에 한반도에 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사전에 알았던 군 지도자들이나 소련의 수뇌부는 현실적으로나 인도적 측면에서도 한인을 귀환시킬 수 없었다.

소련은 1950년 4월 22일에 사할린에 거주하던 일본인의 집단 귀국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6.25가 발발했다. 1950년 한반도의 전쟁 상황은 사할린 한인 사회를 구성하는 각 그룹에 각각의 영향을 미쳤다. 파견노동자의 경우는 수적으로 최대 인원을 구성했던 1948년도 파견자들의 대다수가 1951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던 까닭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할린에 남게 되었다.

구소련과 사할린주 당국은 1950년을 기점으로 사할린 내 한인들을 임시 거주자 혹은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생산 증대를 위한 주요한 노동력의 원천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동년 7월 1일까지 잔류를 결정한 모든 일본인, 그리고 한인들에게 의무적으로 거주지 등록을 지시하는 등 통제를 강화했다.<sup>96)</sup> 사전 승인 없이는 등록된 구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이동할 수 없게 되었고 직업을 갖지 않은 개인들도 더욱 엄중한 감시 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sup>97)</sup>

<sup>96)</sup> 기아소, 242-1-21, 84장.

<sup>97)</sup> 방일권, “이루어지지 못한 귀환.” p. 306.

6.25전쟁은 사할린 북한 노동자가 정착하게 되는 새로운 계기임에 분명하지만 그 이전부터도 북한 노동자 사회의 내·외부에서 북한 노동자의 장기 체류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 배경의 하나로 사할린 지역의 여러 작업장에서 북한 출신 노동력의 비중이 높은 곳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쿠릴지역은 북한 출신 노동자의 비율이 평균 25~30%이었고 그 이상인 작업장들도 있었다.<sup>98)</sup> 동시에 전후복구의 시급함이 일정 정도 해소된 이후 본격적인 계획경제 체제에서 생산 증대 압력을 받던 업체들로부터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었다.

사할린 당국은 노동력 확보 문제 외에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소비에트 법령이 막 도입된 국경 지역 남사할린의 안보와 소비에트 이주민들이 정착하는 지역에 함께 거주하는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관리가 바로 그것이었다. 사할린의 한인만 아니라 북한 출신의 파견노동자 역시 안보 측면에서 관리 대상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1950년 5월까지 쿠릴지역에 배치되었던 모든 북한 노동자를 사할린 본섬이나 기타 안보 위험이 적은 지역으로 이동시키도록 한 조치들을 수 있다. 1948년에 쿠릴지역에는 831명의 북한 노동자가 어업 사업체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사할린 지역 국경경비대 사령관이 사할린 어업총국의 책임 아래 이들 모두를 1950년 5월 1일까지 쿠릴의 섬들로부터 다른 작업장으로 배치하도록 명령하였던 것이다.<sup>99)</sup>

이처럼 1940년대 전후복구와 지역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받아들여졌던 북한 노동자들은 1949년부터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관리와 통제를

<sup>98)</sup> Чернолуцкая Е.Н., Трудовое и бытовое устройство корейцев в конце 1940-х начале 1950-х годов // *Вестник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ДВГУ*. 2004, № 1, с. 120.

<sup>99)</sup> 기아소, P(당문서)4-1-556, 60장.

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 됐다. 개발과 안보의 사이를 오가던 당국은 두 문제를 함께 다루는 정책으로 외국인과 무국적자에 대한 거주등록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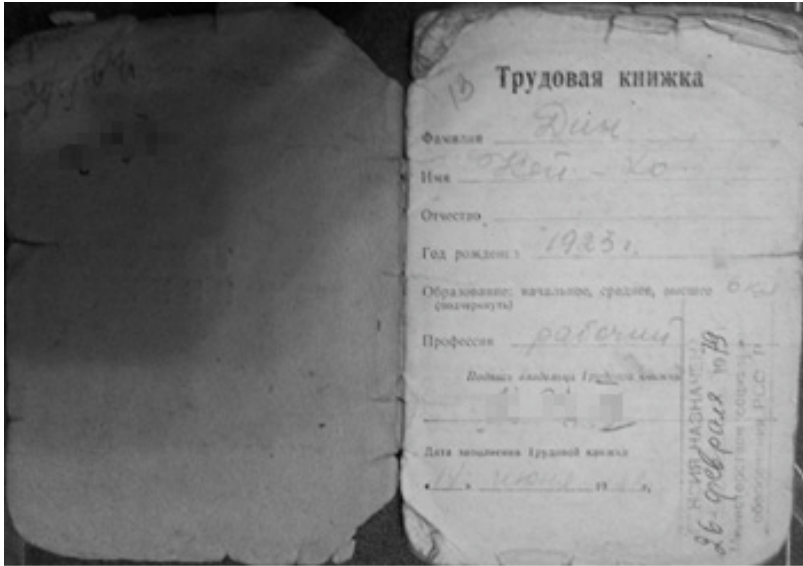
열악한 상황에 배치되어 노동하던 파견노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련 당국이 안보적 고려를 한다는 사실이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 동안 사할린의 상황은 점차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다. 소련 당국은 1950년부터 선주 한인뿐 아니라 북한의 파견노무자들도 거주등록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등록증과 거주증을 상시 휴대하도록 강제했다.

“(해방 직후에)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임시신분증명서라고 줬어요. 이런 종이짜에다 이름만 쓰고, 고향 쓰고 몇 살이다 해 가지고. (중략) 그렇게 해서 그거를 주민등록증처럼 갖고 댕겼죠. 들고 다니면서 신분 그걸 하는데, (중략) 그것만 가지면 (중략) 그때까지도요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중략) 무국적이 나오니까 이제는 북한 국적 가진 사람과 무국적 가진 사람은 어디도 통행 못했습니다. 이 도시면 도시 시내에서, 부락이면 부락 시내에서 여덟 킬로 밖으로는 못나 갔습니다. 8킬로 넘으면 이제 벌금[을 부과] 하죠.”<sup>100)</sup>

한인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수첩이 발급되었다. 직장과 직위의 모든 변화는 노동수첩에 기재되었다. 이제껏 주요 관리 기업 주체(어업의 경우는 사할린수산업총국)의 증명서로 가능하였던 전근이나 다른 업체로의 이동에도 노동수첩의 지참이 필수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전근과 직업의 변경은 거주등록 조치와 맞물려 있어서 관련 서류 작성 과정에는 경찰이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로써 노동과 이동의 통제가 단번에 가능해졌다.<sup>101)</sup>

<sup>100)</sup> 국사편찬위원회, 『사할린 한인의 동원·역류·귀환 경험』, pp. 235~236 (허남훈 구술).

사진 III-2 1950년대 초 노동자에게 발급된 ‘노동수첩’



자료: 개인 소장 자료를 연구자가 촬영, 2016.7.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수첩 소지 의무 부과는 개별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거주 가능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 엄격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과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한 경고가 노동수첩 발급 과정에서 공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신분증 소지 및 거주지역 범위 규정을 위반하는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됐고, 적발되면 이전 거주지로 퇴거됨과 더불어 10~50루블의 벌금도 내야했다. 고의성이 있을 경우 최대 1년까지 투옥될 수도 있었다.<sup>102)</sup>

1950년 이후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한글로 작성된 제반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러시아어를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sup>101)</sup> 이상은 기아소, 242-1-21, 83~8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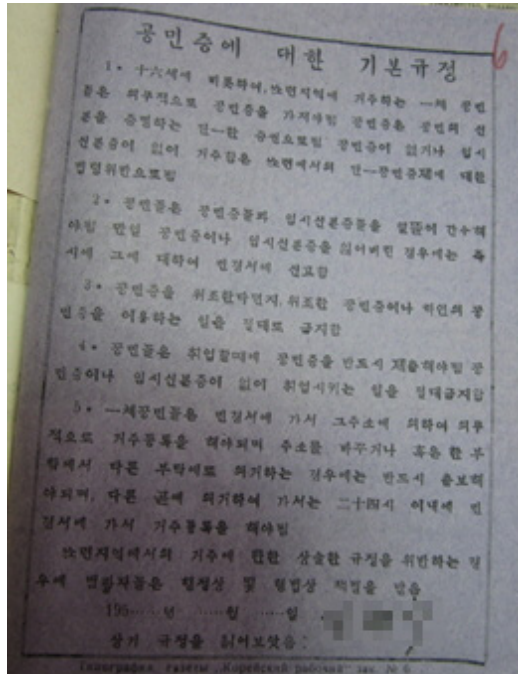
<sup>102)</sup> 기아소, 53-7-245, 234장.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되었다. ‘공민증에 대한 기본 규정’에 명시된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의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sup>103)</sup>

공민증은 ‘북한 공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단일 증권’으로 소련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의 공민이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것이자 취업할 때 반드시 제출되어야 했다. 취업하기 위해선 민경서에서 반드시 거주등록을 해야 하며 주소가 바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새 거주등록을 해야 했다. 이를 위반하는 이는 범죄자로 행정 및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

사진 Ⅲ-3 > 공민증에 대한 기본 규정



자료: 개인 소장 자료를 연구자가 촬영, 2016.7.

<sup>103)</sup> 기아소, 132-1-111, 6장.

## 나. 노동의 영역을 확대한 북한 노동자

1950년 사할린 지방 당국과 구소련 당국이 취한 일련의 통제책은 노동현장에서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가령, 쿠릴지역에 배치되었던 파견노무자들은 사할린 본섬으로의 이주 명령에 따라 어업 이외의 다른 직종으로도 옮겨 갔다. 그 이동은 법적으로 노동 계약 기간 연장의 효과를 가지면서 보다 높은 임금과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또한 1950년에 계약이 끝나는 단기 파견노무자의 경우에도 당국은 새로운 노동 현장을 찾아주고 계약 역시 연장해 주어야 했다. 사할린 본섬의 어업 관련 작업장에 배치된 인원 중에서도 약 3천 명의 기존 계약이 끝난 파견노무자들은 임산업, 제지업, 제조업 등으로 노동 분야를 바꾸길 원했다.<sup>104)</sup> 다시 말해 초기에 어업 분야로 시작된 북한 출신 모집 노동자들로서 1950년을 기점으로 사할린에서 수산업 분야 이외의 분야에 본격 진출하는 계기를 만난 셈이었다.

사료에는 1951년 말까지 어업 이외에 진출한 파견노무자 규모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대부분의 파견노무자들이 종사했던 어업 분야가 5천410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지만 임업 분야에 종사하는 총 한인 1천650명 중 북한 노동자가 303명이었고, 탄광업을 하는 사할린 우골에 소속된 총 1천579명의 한인 중에도 63명의 북한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제지 분야는 훨씬 많은 북한 노동자가 진출한 부문이었다. 총 1천96명의 '사할린 봄뜨름' 소속 한인 중 북한 공민은 693명이었으며 이들 중 절반에 육박하는 328명이 극북지역 노동자에 대한 특별혜 적용받는 대상자로서 3년 이상의 계약을 한 이들로 나타났다.<sup>105)</sup>

<sup>104)</sup> 기아소, 53-7-105, 28장.

<sup>105)</sup> 위의 자료, 11, 19장.

건설 분야도 주목해야 한다. 1952년 1월 초까지 산림부 소속의 건축-수리 사업체 ‘사할린스트로이(Сахалинстрой)’에 소속되어 일한 북한 노동자는 7명에 불과했으나 그들은 1950년의 새로운 등록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건설 분야 종사자로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이들이었다. 실제 건설 분야 종사자는 훨씬 많았다. 어업총국 소속이기는 하지만 수산업 분야 건설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체인 ‘사할린어업건설(Сахалинрыбстрой)’에 소속되어 일하던 2천118명의 파견노동자가 있었기 때문이다.<sup>106)</sup> 다시 말해 건설 분야는 이미 1940년대 최초 파견노동자의 계약 기간 중에 어업 이외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진출해 있는 직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파견노동자들은 1950년 이후 사할린의 주요 생산 분야로 빠르게 침투하였다. 그들이 전직한 분야는 대체로 거의 모든 노동집약 산업 분야에 걸쳐 있었지만, 한글 교사나 문화 부문으로 진출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노동자들의 진출 분야가 다양해지는 만큼 획일화된 통제에 따르는 생활 방식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물론 1952년 이래 사할린 지역 당국은 어업 이외 분야로 이동하는 북한출신 파견노동자들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노무수첩을 발급하여 채용과 해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국의 그러한 요구는 1950년의 등록 의무 조치에 따른 것일 뿐 다양한 노동 분야로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당국은 이 시기에 각 사업장들에 대해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와 문화 교양 환경의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요구하는 한편 ‘노동계약 기간을 3년씩으로 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사업체들에 대해 노동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압박하고 있었다.<sup>107)</sup>

<sup>106)</sup> 위의 자료, 36~37장.

I
II
III
IV
V

결과적으로 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듯 보이는 1950년 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 출신 파견노무자들은 사할린에서 체류조건이 개선되고 있었다. 일차적으로 북한 노동자의 장기 체류가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각 사업체들은 당국에 다양한 지원을 건의했다. 노동자용 거주 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의 지원, 한식 식단을 공급할 식당의 개설, 한국어 영화 상영 등의 문화활동 강화, 한국어가 가능한 의료진의 배치, 그리고 노동자 자녀를 위한 조선학교 개설 등이 건의에 포함되었다.<sup>108)</sup>

#### 다. 북한 노동자들의 사할린 정착 움직임과 북한의 귀환 요구

사할린 지역당국의 외국인과 무국적자에 대한 거주 등록 의무를 비롯한 일련의 법적 조치로 북한 노동자들은 강제동원 등으로 먼저 들어갔던 무국적자 선주민들과 비슷한 지위가 됐다. 북한 파견노무자들은 북한과 구소련 당국의 협의에 따라 귀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선주민과 크게 다르다고 해도 구소련 당국의 균일한 통제 아래 일하고 생활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사할린 지역 당국은 1950년 이후 북한출신 노동자와 현지의 무국적 선주민 한인들을 같은 선상에서 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안보

<sup>107)</sup> 위의 자료, 19~24장.

<sup>108)</sup> 그 외에 노동생산성 증대를 의도한 복리 후생조치들이 다수 건의되었는데 대표적인 제안들을 몇 가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200명 이상 한인이 소속된 작업장에 부대표를 한인 노동자 중에서 선발토록 하여 현재 21개소에서 실행되고 있는바, 이를 100명 이하의 한인들이 근무하는 작업장까지 확대할 것, 2) 북한 노동자들이 소련 국적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할 것, 3) 대부분을 제공하여 노동자들이 자신의 집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할 것, 4) 직업동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때 소련의 휴양소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5) 근무연한과 무관하게 북한의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 6) 한국 음식의 재료 공급하는 상거래망의 개설을 고려해 줄 것, 7) 노동자의 의료나 문화 활동시 언어의 어려움이 없도록 언어 도우미를 배치해 줄 것. 위의 자료, 19~33장.

상 위험으로 국경 지역에서 외국인을 이동시키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라는 1952년 2월 13일자 소련 각료협의회 지령에 대해 사할린주공산당집행위원회는 당시 '1만 1천700명의 북한공민과 2만 7천335명의 선주민으로 구성된 4만 여명의 사할린 지역 한인'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일은 '커다란 준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물질적 손실도 막대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고 결과적으로 중앙의 지령은 실행되지 않았다.<sup>109)</sup>

보다 결정적인 조치는 1952년 이후 한인에게 구소련 국적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때 무국적 선주민만이 아니라 북한 노동자도 국적 부여 대상에 포함됨<sup>110)</sup>에 따라 소련적을 받은 한인 중에 선주민과 북한 파견노동자가 섞이게 되었다. 이후 1950년대 후반기에 들어 선주민에게 북한이나 소련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자 선주민과 북한 파견노동자 사이에 국적 구분은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1950년대를 지나며 사할린 북한 노동자의 현지 체류 환경이 개선되는 가운데 소련 국적 취득 움직임도 구체화되었다.

**표 III-4** 1950년대 사할린에서 소련국적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의 수

연도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소련국적 취득자 수	5	190	74	79	129	56

주: 1958년의 56명은 동년 4월 28일까지를 기준으로 한 수치임.

자료: 기아소, 53-7-181, 4장, 17장을 근거로 정리.

〈표 III-4〉에서 드러나듯, 1958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사할린에 있던 북한 국적자가 7천94명이었는데, 1953년부터 동 시기까지 북한

<sup>109)</sup> Дин Ю.И.,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ахалина: проблема репатриации и интеграция в советское и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а* Ю.-Сахалинск, 2015, с.84.

<sup>110)</sup> 한인에 대한 소련 국적 부여의 근거는 1952년 5월 6일자 소련 각료협의회 결정 제 2188-823호였다.

국적을 버리고 소련 국민이 된 이가 658명이었다.<sup>111)</sup> 북한출신 파견노동자들 사이에 소련 국적을 가지려는 움직임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있음을 알 수 있다.<sup>112)</sup>

1950년대에 북한으로 돌아간 이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귀환자는 1954년부터 다시 나오게 되는데, 이는 전년까지 3년간 지속된 한반도의 전쟁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다. 아래 <표 III-5>와 같이 1958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노동계약 기간 만료로 북한으로 돌아간 노동자가 총 9천279명이었고, 귀국을 희망하는 이가 609명에 달했다.

**표 III-5** 1950년대 노동 계약 만료로 사할린에서 북한으로 돌아간 파견노동자와 잔류 중인 북한 국적자의 수

연도	1954	1956	1957	1958	1959
귀국자 수	5,940	2,492	764	83	1,497
잔류 중인 북한 국적자		7,711		7,094	6,868

자료: 1954~1958년의 수치는 기아소, 53-7-181, 4장, 17장을, 1959년의 수치는 기아소, 523-3-1, 10장과 171-7-181, 35장(1959.3.25. 시점)을 근거로 정리.

1958년의 북한 국적자 수가 1956년 이후 귀환자의 수를 뺀 것보다 많은 이유는 무국적 한인 중 북한 국적 취득자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귀국자 및 소련국적 취득자 현황을 살펴보면 1950년대 중반까지 사할린 내 북한 노동자의 소련 국적 취득은 귀환을 회피하는 주요한 수단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 노동자들이 귀환을 피해 사할린에서 계속 노동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사할린 지방과 소련 관계 기관이 보여준 이중적 태도가 일조한

<sup>111)</sup> 기아소, 53-7-181, 19~20장.

<sup>112)</sup> 같은 시기 극동 지역 전역에서 소련 국적을 받으려는 북한 출신 노동자는 약 2천 500명을 헤아렸다고 전한다. Крушанова Л.А., *Мигра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СССР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ередина 1940 х—1970 е гг.)*, Владивосток, 2014, с.137.

측면이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사할린 지방당국은 기한이 만료된 북한 노동자의 귀환 의무를 수행할 주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각종 개선 조치들을 마련해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 있도록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국의 이 같은 태도는 이민업무 담당부서에서도 발견된다.<sup>113)</sup> 외국인 노동자의 유출입을 감독하는 소련 각료협의회 산하 이주 및 모집총국은 표면적으로 북한 출신 노동자의 계약기한을 자의적으로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업장 대표자들에게 노동자들의 귀국에 따라 ‘사업장의 업무가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귀국을 거부하는 북한 노동자에게 대해 압력을 가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계약이 만료되는 이가 나올 경우에도 ‘귀국 대상자의 대체자를 금방 찾을 수가 없다’는 이유로 체류 기한을 연장해 주도록 청원하는 길을 기업들에게 열어 둔 것이다. 실제 이민 당국자들은 대체노동자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한이 다한 노동자의 계약을 재연장해 달라는 청원을 여러 차례 승인했다.

그러나 사할린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1950년대 후반기에 들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57년 12월에 소련과 영사 협정을 체결하여 나홋카에 총영사관을 설치한 북한이 자국민 관리에 적극 나선 것이다. 북한 외교부는 1950년대 후반 국내 건설 인력이 필요해지자 사할린 내 자국민의 국적 취득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소련 측에 극동 지역 북한 노동자의 조속한 귀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의 이 같은 요구에 따라 소련 각료협의회는 1958년 6월 5일

---

<sup>113)</sup> 이하는 Вапук А.С.,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из КНДР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X - начале XXI века // *Гуманит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 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2012, № 1, с.78을 참조함.

I
II
III
IV
V

북한 노동자의 귀환에 대한 지시를 결의해 지역 정부에 하달하였다. 소련 각료회의회 지시 제1827-c호<sup>114)</sup>는 노동계약에 의거하여 노동중인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 희망 시기를 고려하되 지방 행정기관들은 이들의 귀환을 1958년 말까지 완료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귀국을 원치 않거나 연기하기를 원했다. 따라서 자발적 귀국 희망 노동자가 거의 없었기에 결국 북한 노동자 대규모 귀국 추진이 중단됐다. 이에 소련 측은 1959년 9월 제 1827-c호 지시의 시행을 1960~1961년으로 늦추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sup>115)</sup> 북한 노동자들이 대부분 귀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당시 나훗카 북한 총영사관의 대표(이태식)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1961년 6월 사할린을 방문한 길에 사할린 지방 당국자들과 대화하던 중 “사할린에 거주하는 많은 북한 공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혹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현지점에서 귀국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서 그는 자신들 편에서는 귀국을 원하지 않는 “이들 공민에 대해서 귀환을 가속화할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면서 지방 당국의 협조를 요청하였다.<sup>116)</sup>

소련 극동 지역 북한 외교 대표의 언급은 당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며 가족 단위의 삶이 일반화되어 있던 북한 노동자들을 통제할 수 없었던 북한 측의 입장을 토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50년대 후반 들어 북한은 사할린에서 자국 공민뿐 아니라 무국적 한인들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있었다. 사할린의 거의 모든 도시와 지역을 돌며 ‘당신의 조국은 조선이니 조선의 애국자가 되시오’라는 구호를 내

<sup>114)</sup> 이하 관련 내용은 기아소, 53-25-2453, 1~4장, 45장 등에 기초하여 정리하였다.

<sup>115)</sup> 위의 자료, 45장. 1960년과 61년의 귀국 희망자 역시 매우 적었다. 1960년 귀국 희망자는 76명에 불과했고, 이듬해 귀환을 희망하는 북한 노동자는 24명(가족 포함시 총 63명)에 그쳤다.

<sup>116)</sup> 위의 자료, 46장.



결고 북한 국적의 취득을 권고하고 귀국을 촉구하는데 힘을 쏟았다.<sup>117)</sup>

1959년에는 북한의 제안에 따라 조직된 학습반이 선전선동 과제를 함께 수행했던 일이 주목을 끈다. 당초 학습반의 조직은 문맹퇴치와 교양학습으로 불린 공산주의 정치문화 수준의 제고를 표명하며 시작되었다. 이 학습반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당의 활동과 소련의 정책, 공산주의 이론과 역사에 대한 학습을 시키면서 북한 사회주의의 성과와 당시 북한이 표방하기 시작한 주체사상의 선전을 겸하고 있었다. 이것이 곧 현지 선주민들까지 포섭 대상으로 삼으며 6.25때 북한 전쟁 영웅을 추모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등 ‘민족주의적’ 편향성을 띠게 된다. ‘기통수’가 사할린주에 북한의 정기간행물과 서적, 선전물 등을 대규모로 정기 공급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 부터였다.<sup>118)</sup>

열성적인 일부 학습반 지도자들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김일성 생일 선물을 위한 모금을 강요하거나 설 명절(음력설)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현장 생산관리자들의 불만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사할린 한인들에게도 북한의 선전물을 정기구독 하도록 강권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북한 귀환을 선동하였으며, 정기적인 선주민 한인의 북한 방문을 조직하고 관련 행정 업무를 대행하기까지 함으로써 사할린 지역 당국자들의 반발을 샀다.<sup>119)</sup>

이렇게 1960년을 전후해 북한은 자국민 노동자뿐 아니라 사할린 한인 사회 전반에 걸쳐 선전 강화와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었다. 이렇게 북한 노동자에 대한 조직적 통제를 강화하던 시점에서 북한 외교부의 대표가 자발적으로 귀국을 원치 않는 다수 북한 노동자의 존재를 인정하

<sup>117)</sup> 기아소, P(당문서) 4-83-3, 27장.

<sup>118)</sup> ‘기통수’란 북한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인들에게 당선전물, 출판물 등을 보급해 주는 사람으로 외교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 한다.

<sup>119)</sup> 기아소, P(당문서) 4-83-3, 27~34장. 사할린 지역 당국이 결국 1963년 10월에 북한 공민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반의 폐쇄를 중앙에 제기함으로써 학습반 활동은 크게 위축된다. 같은 자료, 36~38장.

면서 귀국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토로한 것은 의미가 있다. 현지 당국의 용인 하에 운영되었던 조직적 학습반을 통해 벌였던 개별적인 북한 노동자의 귀국 설득조차 실질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할린 지방 당국은 1960년 5월 27일에 결정 276호를 발의하여 중앙의 지시이행에 착수하였다. 결정 276호는 사할린의 각 군 및 시 집행위원회와 각 사업체 대표들에게 기한이 도래한 모든 북한 노동자-북한공민과 그들의 가족은 1960~1961년에 귀향해야 함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sup>120)</sup> 그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와 그 가족의 배치 현황 집계 사업도 추진되었다. 또한 1960년 10월부터 연말까지 2달 동안 북한 노동자들의 귀환과 관련된 개별 면담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1962년 4월 북한 노동자의 대규모 귀국이 두 차례 이뤄졌다. 1962년의 귀국인원은 총 1천91명(가족 포함)이었다.<sup>121)</sup> 구소련 이주 및 모집 총국 전권대표가 북한 노동자와 가족들을 인솔해 사할린 코르사코프 항구를 출발, 나훛카를 거쳐 핫산까지 이동한 끝에 북한 외교부 대표에게 인계하는 방식이었다.<sup>122)</sup>

사할린 지역 북한 노동자의 공식적 집단 귀국은 1962년 4월 종결되었다. 이후에도 소수의 북한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귀환한 것이 확인되지만<sup>123)</sup> 이는 개인적 귀환으로 보인다.

<sup>120)</sup> 기아소, 53-25-2453, 45장.

<sup>121)</sup> 사료와 연구들에서 귀환한 북한인 노동자의 수는 명확하지 않다. 쿠진과 바솅은 1962년 마지막 대규모 귀환 노동자의 수를 언급하지 않았다. 1962년 1월 1일 당시 3천831명이었던 북한 국적자 중에 얼마가 실제 귀국했는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그 이유로 귀환자들 속에는 북한 파견노동자들 뿐 아니라 사할린 선주민 중 북한국적을 받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Дин Ю.И.,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ахалина*, сс.80-81.

<sup>122)</sup> 기아소, 53-25-2453, 49장, 60~84장 등에 의거한다.

<sup>123)</sup> 1962년 4월의 대규모 북한 노동자의 귀환을 포함하여 1966년까지 귀환한 노동자와 그 가족은 약 4천 명이었다. Дин Ю.И.,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ахалина* сс.80-81.

귀환하지 않은 이들은 이후 사할린 현지 정착자로서 사실상 선주민 한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됐다. 1960년대 이후 사할린에 정착한 북한 파견 노동자는 많지 않다. 1964년 1월 1일 당시 사할린에 잔류 중인 것으로 집계되는 한인 1만 1천288명 중에 1940년대 후반에 노동계약에 따라 사할린에 들어온 파견노무자는 1천836명뿐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sup>124)</sup>

#### 4. 사할린 북한 노동자의 역사적 함의:

##### 1940년대와 2016년 비교를 중심으로

1940년대 후반에 가족을 포함해 약 2만 6천여 명에 이르렀던 북한 노동자의 사할린 파견은 북한이 사상 최초로 노동자를 해외에 조직적으로 파견한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파견노무자’로 불린 사할린 지역 북한 노동자의 출현은 국가(특히 소련 측)의 조직적이고 행정적인 주도로 진행되어 약 10년간 진행되던 중 북한의 전체 노동자 귀국 요구로 1962년 초에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역사적 경험과 선례는 흔적을 남긴다. 1940년대 북한 노동자 해외 진출과정을 살펴 본 내용은 현지 조사를 통해 관찰할 수 있었던 2016년 현재의 사할린 내 북한 노동자들의 삶과 연결되는 몇 대목이 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예나 지금이나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의 필요가 반영된 국가 발전 계획과 그에 입각한 정원(쿼터)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물론 차이가 없지는 않다. 1940년대의 북한 노동자 모집 사업은 현재에 비해 소련의 주도과 요구가 훨씬 강하게 반영된 사업이었다는 특징이 있다. 북한 내에서 노무자 모집의 주체는 현지

<sup>124)</sup> 기아소, 53-7-255, 87장.

I
II
III
IV
V

임시인민위원회가 아니라 소련 측 수산업총국의 현지 출장소였고, 당시 군정 체제에서 노동자의 모집과 작업장까지의 이동과정에 군당국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다. 1940년대 북한의 임시정권은 노무자 파견을 향후 정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대체로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렀다.

이에 비하면 현재는 북한 측이 노동자 파견 문제를 러시아와 협력의 주요 분야로 삼아 관계 기관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125)</sup> 노동자의 모집 역시 북한 측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사할린 노동 현장으로까지 이동도 북한의 주관 아래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예나 지금이나 모집의 과정은 일제 하 조선인에 대한 대표적인 모집 관행, 즉 형식은 모집이나 관 알선의 영향이 깊이 개입되는 형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1940년대 당시 북한 파견노무자들은 대체로 신생 북조선 사회에서 출세하기 어려운 성분 출신자들이면서 어업 분야 노동력으로서도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에 비해 현재 북한이 주도하는 노동자 모집은 사회적 출신과 당성이 우수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파견이 크게 선호되는 분위기 아래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응모하고 있다. 그러나 절차와 형식면에서 관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고 건설부문의 전문성이 거의 없는 노동자들이 다수라는 점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으로 북한 노동자들의 현지 생활에서도 유사점이 있다. 가령 소비에트 시대 수산업 기업들의 역할과 현재 러시아 기업의 역할이 비교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에 비해 1940년대 기업소들은 소비에트 당국의 훨씬 직접적인 통제와 명령 체제 아래 놓여 있었기

---

<sup>125)</sup> 2014년 하반기에 나훗카 북한 총영사 및 북한 외무상(이수용)의 사할린 방문 및 경제 분야 협력 확대에 관한 양측의 논의 참조. <<http://remch-ch.livejournal.com/518287.html>: <https://skr.su/news/241681>>. (검색일: 2016.12.22.).

때문에 시장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현재 러시아 기업들의 결정권한과 비교하기가 어렵다. 과거 어업 기업소들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있어 현장에서 만나는 소련 당국이었다면 현재의 러시아 기업들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업가에 가깝다. 그러나 과거의 어업 기업소나 현재의 러시아 기업들도 북한 노동자들을 직접 수용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노동자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세기와 21세기 사할린의 현장 책임자들은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해 북한 노동자들을 관리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계약의 연장, 일상생활 조건 등을 최대한 유리하고 유연한 방향으로 해석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사할린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유연하게 관리하는 관행이 1940년대 기업소 시절부터 관행화됐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40년대 구소련 당국은 초기에 북한 노동자를 계절노동에 종사하는 단기체류자로 모집했지만 곧 2~3년간의 보다 장기적인 체류로 정책을 수정함으로써 1947년 이래 북한 파견노동자의 삶이 크게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독신으로 열악한 조업 및 생활환경을 견뎌야 했던 1946년의 최초 북한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인권 보장마저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1947년 이후 모집된 다년 계약자들은 가족을 동반하고 체류하면서 크게 개선된 노동여건과 생활환경을 보장받았다. 절대적인 인력 부족 상황에서 소련 중앙이 기대하는 '5개년 계획(뵐란)'을 달성해야 했던 사할린 지방 당국은 생산력 향상을 기대하면서 파견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할린의 개별 사업소(작업장) 안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북한 노동자들은 상당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었다.

북한 노동자들은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체류조건이 개선돼 가는 것을 경험했다. 기본적으로 그 같은 상황 변화는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

I
II
III
IV
V

던 현지 노동 시장 환경 때문이었다. 초기 계약 기한이 끝난 북한 노동자들이 어업 이외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동일한 맥락이다. 결과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최대한 장기적인 현지 체류를 모색하면서 현지의 노동관행에 익숙해지고 다양한 부문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현장의 상황과 고용자들의 기대에 적응하게 됐다. 다시 말해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에 맞춰 노동자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려는 당국의 법적, 제도적 요구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현장 여건에 의해 변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초기 파견노동자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현장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규제와 통제 아래 놓이는 현상은 현재 사할린 내 북한 노동자의 삶에서도 다르지 않다. 물론 현재 사할린에는 1940년대엔 없었던 북한 측 회사가 개별 노동자들 생활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이 북한 회사들은 각종 상납금을 명목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송금에 관여해 이익을 챙기며, 노동자들의 생활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면서 인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측 회사 책임자는 북한 당국 기준에 따른 규율체계를 완화해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자 관리 방향을 바꿔보라는 러시아 기업체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개별 노동자들의 개인 청부 활동 등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동 관행이 사할린에 널리 퍼져 있는 이유다. 개인 노동자 역시 러시아 기업주의 눈에 들 경우 장기 체류나 집단생활을 벗어나 보다 나은 생활환경 아래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결국 돈은 일꾼이 버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러시아 기업인이나 북한 기업 운영자, 노동자 모두가 체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이 암묵적 질서로 자리 잡으면서 규율과 통제가 전반적으로 느슨해졌다. 사할린 북한 건설노동자들의 일반적 활동이 된 청부

노동은 사할린 경제가 집중된 유즈노사할린스크 등 대도시 지역에서 제도로 정착돼가고 있다.

1950년대 초에도 사할린은 한반도의 전화(戰禍)로부터 안전하고, 경험 있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넘쳐남에 따라 갈수록 잘 살 수 있으며, 선주민보다 오히려 나은 정치·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서, 북한 노무자들에게는 일종의 특권적 공간이 되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귀국을 회피하려는 파견노무자들이 다수가 되자 1950년대 후반 들어 북한 당국이 이들을 사상적으로 회유하고 귀국시키려 노력했다.

현재에도 일종의 특권적 공간인 사할린에선 청부노동이 일반화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에 물들어 사상적으로 느슨해지기 쉽다는 점에서 1950년대와 유사해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현지조사에서 북한 당국은 10년이 넘는 노동자들을 귀국시키고 재파견을 금지하고 있음이 포착됐다.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다른 지는 사할린 내 북한 노동자들이 갖는 기대와 태도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북한 노동자들은 최대한 장기 체류를 희망하지만 그렇다고 영주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가족을 동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단기 고소득 활동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UN 대북제재로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사할린이 임금이 높고 통제가 쉬운 섬지역이며,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노동자 파견에 유리한 지역이다. 특히 북한 노동자들은 단순 노무 분야에서 짧은 기간 동안 높은 평판을 쌓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이 실제 북한 노동자에게는 어떻게 체감되고 활용되며, 그 함의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

I

II

III

IV

V

---





# IV. 사할린 북한 노동자의 삶과 문화





앞서 기술한 바 있듯이 사할린은 지리적, 역사적, 인구 구성면 등에 있어서 독특하게 발전해 왔다. 특히 1870년대 제정러시아 시기부터 일제 강점기와 소비에트기에 이르는 한인의 이주, 그리고 1946년 이후의 북한 노동자들의 이주 역사를 거치며 형성된 생활여건은 오늘날 북한 노동자들이 누리는 생활여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오늘날 사할린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 방식은 러시아 내 타 지역과는 상당히 다르다.

## 1. 사할린의 북한 노동자

### 가. 사할린 지역 북한 노동자 현황

러시아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북한과 사할린주 사이의 협력이 강화돼 왔다. 2006년부터 정례화 된 경제통상 종사자그룹 협력 회의가 매년 평양과 사할린을 오가며 진행되고 있는 점이 주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2014년 6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북러 정부 간 위원회에서 러시아 투자가 및 북한 소재 러시아 기업 관계자에 대한 비자제도 완화, 양국 교역에 루블화 도입 등 중요 사항들이 결정되기도 했다. 이후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유리 트루트네프)와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알락산드르 갈루쉬카), 사할린주를 포함한 극동지역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8일에는 북한 외상 이수용이 사할린을 방문하여 사할린 주지사와 통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sup>126)</sup>

이에 따라 사할린 노동시장에서 북한 노동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01년 180~300명 정도였던 사할린주 북한 노동자수는 2009년 2천

<sup>126)</sup>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ибыл на Сахалин, (북한외무상 사할린도착)”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2014.10.8자, <<http://skr.su/news/241681>>. (검색일: 2016.12.22.).

I
II
III
IV
V

100여 명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9.5% 가량으로 늘었다.<sup>127)</sup> 그 중 절대 다수인 2천62명이 건설 분야에서 종사하였다. 이후 사할린의 북한 노동자의 비중은 2011년에 2천438명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18% 정도를 차지하여 러시아의 경제 위기 국면에서도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2012년에는 22%로 더욱 늘었다.<sup>128)</sup> 그러나 가장 최근에는 UN 대북제재 및 러시아의 외국인 출입국 정책의 강화로 인해 그 수가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사할린주 정부가 북한 노동자 쿼터를 줄이자 당시 북한 총영사 심국룡은 북한 노동자들은 국가 차원에서 노동자들을 모집하여 파견되므로 관리와 통제가 잘 되며 러시아연방 법률도 잘 지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쿼터를 늘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sup>129)</sup> 이를 계기로 사할린 내 북한 국적 노동자수가 급증했다.

2014년 사할린에서 수리된 총 4천614건의 비자 신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북한 국적자로 2천712건이었다. 사할린 지역에 초청된 7천889건 중에서도 북한 국적자(1천97건)가 중국 국적자(1천498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2014년에는 사할린에서 발급한 총 1만 562건의 외국인 노동허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가 북한 국적자(2천687건)로 중국 국적자(930건)의 약 3배나 됐다.<sup>130)</sup>

<sup>127)</sup> 자브롭스카야에 따르면 2001년 당시 연해주 건설현장 및 농업 지역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는 2~3천 명 규모였다. Забровская Л.В. 'КНДР-Россия-РК: обмен трудовыми ресурсами', <<http://demoscope.ru/weekly/2008/0333/analit04.php>> 참조. (검색일: 2016.12.21.).

<sup>128)</sup> “Делегация Сахалина посетила Северную Корею(사할린대표단 북한 방문),” *REGNUM*, 2009.10.19., <<http://regnum.ru/news/1216204.html>>. (검색일: 2016.12.23.).

<sup>129)</sup> “상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새고려신문』, 2012.9.21.,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1079>>. (검색일: 2016.10.21.).

<sup>130)</sup> 2015년 2월 13일 “2014 노동자수 공식통계,” <<http://www.sakhalin.info/search/99980?text=рабочие+КНДР>>. (검색일: 2016.12.5.).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4년 이전까지 극동지역 주정부는 중국 노동자에게 가장 많은 고용허가증을 발급한데 비해 2015년에는 북한 노동자에게 발급한 고용허가증이 중국 노동자의 8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 이는 극동 전역에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선호가 있음을 시사한다.<sup>131)</sup> 사할린주에서도 북한 노동자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사할린 북한 노동자 현황을 현지에서 기초 조사한 결과, 2016년 사할린 북한 노동자 쿼터는 3천50명이며 사할린 내 북한 회사는 총 3~8개사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파악한 회사는 1) 젠코, 2) 칠보산, 3) 칠보산 스트로이, 4) 묘향산, 5) 묘향산 사할린, 6) 어업가공 회사 코르사 등 6곳이다. 러시아와 합작회사도 있고 북한 당국이 직접 투자해 세운 회사도 있다. 예컨대 2006년에 노동자 30명으로 사업을 시작한 칠보산은 북한이 설립한 외국인 투자회사다.

어업가공회사인 코르사의 책임자는 북한인 A 사장이다. 이 회사는 2000년 초반 해도 북한 노동자가 200명에 달하였으나 현재는 50~60명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송어, 연어 가공을 주로 하지만 일 년에 절반 정도 밖에 일을 못하는 계절노동으로 6~10월까지 물고기가 잡히는 동안만 작업을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건설업 청부를 한다.

## 나. 사할린 지역 북한 노동자의 근무여건 및 실태

사할린에서는 친북 사업가들이 북한 관리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 노동자들을 진출시키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들 역시 사할린 지역을 가장 선호한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소속 회사의 일보다 청부 일거리가

<sup>131)</sup> 이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노동자 현황.” p. 93.

I
II
III
IV
V

많은 사할린에서 많은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뇌물을 주고서라도 사할린으로 배치되기 위해 노력한다.

사할린 지역 북한 노동자들은 언어가 통하는 한인들과 바자르(시장)에서 마주치는 조선족 상인들과 가깝게 지낸다. 러시아 국적 조선족 상인들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토요일에 열리는 총화에 참석하기 위해 사무소에 들어갈 때나 휴일에 삼삼오오 들러 물건을 구입한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조선족이 경영하는 상점을 주로 이용하는 것은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덕분에 가격 흥정이 가능하며 즉석에서 수선도 할 수 있는 등 편리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북한으로 귀국하거나 방문할 때 이곳 조선족 상점에서 철 지난 물건을 싸게 구입해 북한 시장에서 팔기도 한다.

#### 사진 IV-1 > 사할린 내 조선족 운영 상점



자료: 연구자 촬영, 2016.11.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데 간부들은 물론 일반 노동자들도 선호한다. 하지만 최근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CD 가격

도 올라 예전에 비해 판매량이 줄었다고 한다. 한 CD 상인은 ‘노동자만 올 때는 장사가 잘 되었는데 간부들이 구입하러 오기 시작하면서 일반 노동자들이 가게에 얼씬도 안한다’는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사할린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 외에도 산이나 바다에서 고사리나 조개를 채취해 팔기도 한다. 고사리 채취는 6월 한 달 동안 2만 달러까지 벌 수 있는 일거리라고 한다. 그러나 운반과 판매 등에 현지인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연해주에서는 도시 건설 노동자로서 집안일이나 건설 현장에서 시간외 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인데 비해 사할린에선 클럽에서 웨이터를 하는 북한 노동자도 있다. 이들은 웨이터로 일하는 것을 묵인받기 위해 사할린을 방문하는 북한 당국자들을 성매매를 포함해 크게 접대한다고 한다.

일부 노동자들은 여가시간에 술을 마시거나 사우나에서 마사지(일종의 변형 매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또 돈을 많이 번 노동자들 일부는 조선족 상인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주기도 하며 사할린 한인 과부나 이혼녀들과 동거를 하거나 유부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 다. 북한 노동자의 시각에서 본 사할린

북한 노동자들에 의하면 사할린은 노동 조건이 비교적 자유롭고 느슨한 편이라고 한다. 즉 러시아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집체노동이 적고 개별 청부 형태의 노동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파견에 대한 인식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와 크게 다르다. 즉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I

II

III

IV

V

가장 중요한 것이 생존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선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신념과 생존, 탈출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풍요로움을 위한 경제활동이라는 인식이 강하다.<sup>132)</sup> 특히 북한 사람들 사이에 가장 선호되는 사할린 지역은 뇌물을 고이는(바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오기 위해 애쓴다. 일반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다른 지역에 오기 위해 쓰는 뇌물이 100~300달러 인데 비해 사할린에 오기 위해선 훨씬 더 많은 뇌물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할린 내 사업소에 지배인(사장)으로 오기 위해선 10만 달러 정도로 ‘사업(혹은 후방사업)을 해야’<sup>133)</sup> 한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자: 러시아로 파견될 때 여러 지역, 블라디도 가고 여러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사할린은?

B 씨: 사할린을 다 많이 선호하는데요. 다른 데보다. 해외 나가는 데 중에서 사할린이 제일 처음으로 선호하니까…

연구자: 왜 그렇게 좋아하나요? 사할린을.

B 씨: 사할린은 이제처럼 집체로동이 없으니까요.

연구자: 집체로동이 없어요?

B 씨: 올라지(블라디보스토크)처럼 이렇게 집단로동이 없는 데니까.

연구자: 원래 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B 씨: 네.

연구자: 돈도 많이 번다고 그런가요?

B 씨: 말하자면 다 청부니까. 우리 때 당시.

연구자: 그러면 제일 선호되는 게 사할린이고. 그 다음에 선호되는 지역은 또 어디예요?

B 씨: 그 다음엔 뭐 크게 선호하는데 없고요. 그저 해외 나가겠다는 사람들은 다 나가고파서 그러는데 그래도 좀 돈 쓰고 사할린에 가려고(합니다)… 사할린에. 그것도 돈을 많이 써갖고. 돈 쓰더라도 거기 가면 돈 버는 게 나오니까요 (B 씨, 사할린 등지에서 건설공으로 근무, 북한이탈주민).

<sup>132)</sup> 이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노동자 현황,” p. 49.

<sup>133)</sup> 북한에서는 뇌물을 주는 행위를 ‘사업을 한다’고 표현한다.



블라디보스토크, 크라스노야르스크 등 러시아 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사할린은 집체노동보다 개인 청부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사할린에 파견된 노동자들은 유럽이나 러시아 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자유롭다고 한다. 사할린 지역은 또 한인이나 조선족이 많아서 러시아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이기도 하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경우 2016년 현재 시내는 물론 시 외곽지역도 각종 쇼핑몰과 고급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곳이 많으며 북한 노동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길거리를 걷다 보면 2~4인씩 돌아다니는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은 주변의 시선에 의식하며 긴장한 듯 보이지만 러시아 내 다른 지역 노동자들보다는 훨씬 자유분방해 보인다.

## 2. 사할린의 북한 회사들

### 가. 북한 회사의 종류와 체계

2016년 현재 사할린에 있는 북한 회사는 3~8개 정도이다. 사할린 내 북한 회사에 대한 정보가 비밀로 취급되고 있어서 정확한 수를 알기 어려웠다. 3개의 건설 회사의 이름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1) 칠보산 건설(스트로이) 2) 묘향산 건설 3) 묘향산 건설 사할린 등이다. 이 회사들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매년 쿼터를 받아 북한 노동자를 진출시키는데 쿼터를 받지 못하는 해엔 해체됐다가 쿼터를 다시 받으면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한다. 예컨대 1990년대 보통강 혹은 보통강 관광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2000년대에는 젠코(GENCO: Korea General Corporation for External Construction, 조선대외건설총회사)가 있었는데 현재는 젠코에서 갈라져 나와 3개 회사가 되었다고 한다. 회사 수가 8개라

I

II

III

IV

V

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도 주력회사가 3개이고 나머지 회사들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은 앞서 언급한 3개의 회사보다도 1건설, 2건설 등 숫자로 표현되는 여러 사업소 혹은 회사들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들이 말하는 사업소들은 대외건설지도국, 인민보안부, 수산성, 131지도국 등 북한 내 각 기관의 산하 소속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칠보산, 금릉, 수산회사, 묘향산 등 러시아 내 북한 회사(외국인 회사)로 설립돼 있다. 또한 이 회사들은 북한 내 각 기관의 본래 업무와는 다르게 사할린에서는 주로 건설업에 종사한다. 예를 들어 인민보안부, 수산성, 131지도국<sup>134)</sup> 소속의 사업소들은 대부분 북한에서의 주 업무와 다르게 사할린에서는 건설업에 종사한다(〈표 IV-1〉 참조).

**표 IV-1** ▶▶ 북한 내각 산하 각 기구와 그 소속인 사할린의 북한 회사

북한에서 관리하는 사할린의 건설사업소		사할린 내 형식상의 외국인 회사 명칭
대외건설지도국 (前 대외건설총국)	제1건설사업소 (前 30건설)	칠보산
	제2건설사업소 (舊 당39호실 소속)	2건설(舊 철산회사)
인민보안부 (前 보안성)	미파악	금릉
		황용산
수산성	미파악	수산회사(건설부문 담당)
131지도국 (원자력 담당 기관)	미파악	묘향산 (러시아에 가구회사로 등록) <sup>135)</sup>

자료: 인터뷰 및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

<sup>134)</sup> 북한에서는 원자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sup>135)</sup> 이 부분은 좀 더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칠보산, 묘향산, 금릉 등 사할린 내 북한 회사들은 러시아 정부와 기업의 조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상의 외국인 회사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회사들은 실제로는 북한 각 기구로 이루어진 하나의 연합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들 사업소들은 북한 내 각 기관의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인다. 즉 칠보산은 북한의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제1건설(前 30건설), 철산회사는 제2건설로 되어 있으며, 금릉과 황용산은 인민보안부, 묘향산은 131지도국 산하로 되어있다.

따라서 파견된 노동자들은 자신이 사할린 내 어떤 북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북한의 대외건설지도국에서 이 기관 소속의 사할린 제1건설사업소에 노동자 30명을 파견했을 경우 파견된 노동자들은 자신을 제1건설사업소 소속 일꾼으로 인식한다.

러시아 측에서 보았을 때 이들은 사할린 외국인 회사인 칠보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제1건설사업소에서 북한식 직책인 부기 담당 관리자의 경우 칠보산에서는 지배인 혹은 사장으로 형식상 등록이 된다. 조직 체계와 운영방식 역시 대외적으로는 러시아 내 외국인 회사의 관리체계를 따르지만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제1건설사업소의 관리를 받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철산회사는 과거 북한의 당39호실에서 현재는 대외건설지도국 소속인 제2건설사업소이며, 금릉과 황용산은 인민보안부 산하로, 수산회사들은 북한의 수산성 산하로, 묘향산은 131지도국 산하로 관리를 받는다. 수산회사의 경우 러시아 내에서 수산업을 하도록 허가 받았으나 실제로는 북한의 수산성에서 파견한 노동자들이 대부분 건설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131지도국도 원래는 북한에서 원자력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이 소속 노동자들은 사할린의 외국인 가구회사로 등록된 묘향산에 들어와 건설업에 종사한다(〈그림 IV-1〉 참조).

I
II
III
IV
V

사할린 내 러시아 건설회사들의 관리자들은 칠보산, 금릉, 묘향산 등의 이름을 가진 북한 회사들이 실제로는 북한의 기관과 연계되어 노동자를 관리하고 감시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 쿼터 계약은 국가나 회사 간의 계약이 아니라 노동자 각 개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러시아 회사 관리자들이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눈감아준다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러시아에서 북한 회사들이 실제로는 북한 각 기관의 산하 기구로 존재하면서 노동자를 집단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하며 심지어 러시아 고용주들에게 자기 회사의 노동자를 써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러시아 기업주들은 북한 회사의 그러한 활동이 정당하거나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러시아 기업주들은 북한 회사들이 파견된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감시해주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보다 잘 조직돼 있고 일탈행위가 없으며 다루기도 쉽고 노동의 질도 높다고 생각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 나. 조직의 구성 및 조직원의 지위와 역할

러시아에서 북한 사업소들은 지역마다 조직구성이 다르다. 다시 말해 각 사업소들은 현지의 사정에 맞춰 조직된다. 예를 들어 러시아 중부의 크라스노야르스크의 경우에는 서열 1번이 사장(지배인), 2번은 노동지도원 혹은 노동안전지도원(실제로는 보위지도원임)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이와 달리 블라디보스토크의 경우에는 지배인 다음으로 부지배인(보위지도원일 경우도 있고 다른 역할일 경우도 있음), 종합지도원, 재정지도원 순으로 되어 있다.

사할린 제1건설사업소 조직(칠보산)의 경우 보위지도원, 지배인,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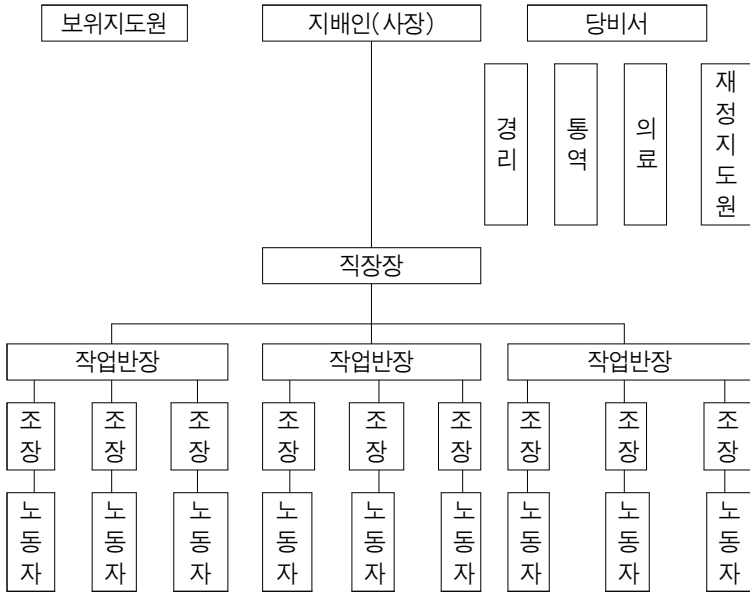
비서가 동급으로 간주되며 전체 사업소를 관리한다는 특징이 있다. 각 조직원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위지도원(1명)은 북한의 보위부에서 파견되었으며 노동자들의 동향을 검열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불시에 현장에 나타나 노동자들의 사상 상태를 감시한다. 둘째, 당비서(1명)는 노동자들이 매주 모이는 총화에서 교육을 담당한다. 셋째, 지배인(사장)은 대체로 3년간 근무하는데 회사의 전체 수입과 노동자 전체 계획분을 관리하며 사업소당 할당된 계획분을 북한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sup>136)</sup>

이밖에도 경리, 통역, 의료, 재정지도원이 존재한다. 경리는 사업소의 일반 경리를, 통역은 러시아 회사(대방)와의 계약시 통역을 담당하고 청부 수주에도 참여한다. 의료는 원래 노동자들의 의료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나 간혹 러시아의 일반인을 상대로 침 시술 등을 하면서 부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일반인 상대 침 시술은 사업소가 아닌 중국시장의 건물을 임대해 쓴다고 한다. 재정지도원은 주로 사업소 내 부기를 담당한다. 재정지도원이 하는 역할 중 중요한 한 가지는 노동자들의 수입을 관리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수입을 따로 은행에 예금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거나 사업소의 재정지도원에게 맡긴다. 재정지도원은 돈을 맡긴 노동자의 이름을 봉투에 써서 돈을 넣은 후 금고에 넣어 관리해준다. 노동자들의 돈은 재정지도원을 통해 비교적 투명하게 관리가 되지만 노동자들은 자기가 번 돈의 액수(액수)이 회사에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돈이 많은 노동자들은 러시아 내 한인이나 조선족에게 돈을 빌려 주기도 한다.

<sup>136)</sup> 사할린 내 북한 사업소에서 북한에 보내는 총 계획분의 액수는 확인이 어렵다.

그림 IV-1

사할린 파견 사업소 내 조직도(제1건설사업소[칠보산]의 사례)<sup>137)</sup>



자료: 인터뷰 및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

노동자들을 실제로 관리하는 직장장은 1명으로 각 작업반장들의 실적을 관리한다. 제1건설회사의 경우 작업반장 한 사람이 30~50명씩의 노동자를 관리하며 현장에서 함께 노동하는데 전체 작업반은 4반까지 구성되어 있다. 작업반장 아래에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조장’이 있어서 3명의 노동자와 함께 최소 총 4명이 한 팀이 돼서 공사현장에 나간다. 작업반장은 자신의 직함을 대외적으로는 한국식 직함인

<sup>137)</sup> 해외파견 러시아 사업소(회사)의 조직도는 지역적 특성과 작업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경우에는 이에리아·이창호,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61과 같이 나타나며, 집체 노동이 많은 러시아 중부지역인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 보다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IV-1) 참조.

‘소장’으로 밝히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 한인들에게 북한식 직함보다는 한국식 직함이 더 익숙하고 전문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 회사와 노동자들의 숙소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제1건설사업소의 경우 사무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내 외곽인 ○○거리<sup>138)</sup>에 위치하며 직장장들과 부문당 비서 등 사업소 내 핵심 관리자들만 사업총화를 진행한다. 회사 간부들은 사무실 주변 주택을 임대해 생활하고 있다. 이와 달리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회사가 임대한 숙소에 기거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내에 북한 노동자 숙소는 4곳이 있다. 한 곳당 300~400명이 생활할 수 있으나 노동자들이 공사 현장에 기거하면서 숙소에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150명 내외 정도가 생활하기 때문에 좁게 느끼지는 않는다고 한다. 제1건설사업소의 경우 3층짜리 아파트 7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데 각 방은 20~25명이 잘 수 있을 정도로 넓다.

**사진 IV-2** 유즈노사할린스크 외곽에 위치한 북한 노동자 숙소  
(현재는 다른 곳으로 이전)



자료: 연구자 촬영, 2016.7.

<sup>138)</sup>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었으나 정보제공자 및 북한 노동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하였다.

I
II
III
IV
V

## 다. 관리자와 노동자와의 갈등

제1건설사업소의 경우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도착하면 6개월~1년간은 의무적으로 '집체노동' 혹은 '국가대상'에 종사한다. 즉 사업소 자체에서 러시아 회사와 계약한 일을 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 기간 동안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사할린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하루 빨리 개인적으로 일감을 따내기 위해 노력한다. 실제로 노동자들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개인적 일감을 따는 경우가 많다. 일감을 찾은 노동자는 지배인에게 보고해 계획분을 얼마나 납부할 것인지 협의한 후 청부에 나선다.

노동자들이 파견 직후 최대 1년이 될 때까지 사업소(회사) 일만 하는 이유는 파견 오기까지 회사가 선지불해 준 교통비, 쿼터비, 시험통과 비용 등의 여러 비용을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비용은 주로 각 사업소(회사)에서 우선 지불해놓고 노동자들에게 회수하는데 각 사업소(회사) 사정이 모두 달라서 비축한 돈이 많은 회사의 경우 이를 지불하고 회수하는 데 여유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노동자들이 비용을 갚아야 하는 기간은 회사 지배인(사장)이 결정한다.

노동자들이 청부를 통해 개인 수입을 올리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배인들은 할당된 계획분 외에 자신의 개인 수입을 '일감'을 따냄으로써 얻으려고 한다.

C 씨: (사할린은) 그저 좋게 말하면 지배인들이 하기 나름인데요. 거기도 다. 이제처럼 집체생활이란 것도 지배인이 어카는가에 따라가니까요. 뭐 제가 뇌주고프면 뇌주고. 그런데 솔직히 지배인들이 로력(노력)을 풀어 놓으면(개인 청부로 노동자들을 내보내면) 자기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그저 자기 대상에다 다 로력을 끌어들여서 일 시키고 생활비 식으로 이렇게 주려고 그러지.

연구자: 그러니까 러시아사람들과 계약은 지배인이 하는군요.

C 씨: 지배인들이란 것도 또 자기가 이렇게 그런 대상들 물기 힘들고요. 자기 뭐 앞밭이 식으로 통역들이 있다고. 만약에 내



가 통역이라면 일을 얼마짜리 물어 와서 지배인한테 로력  
달라 그러면 지배인이 로력 보장해 주고 거기 뭐 씩 이렇게  
돈을 또 바치고 이런 식으로. 사할린은 그런 식으로(하락)  
(C 씨, 사할린 등지에서 건설공으로 근무, 북한이탈주민).

지배인들은 주로 회사 내 통역을 활용하여 일감을 확보하며 그 수수료  
일부를 통역에게 준다. 지배인들은 자신의 개인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  
되도록이면 ‘자기 대상에다 로력을 끌어들여서(노동자를 끌어들여서)’  
일을 시키고자 한다. 지배인들이 러시아 기업체로부터 노동자들의 임금  
을 받아 분배하기 때문에 그가 노동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들은 지배인이 러시아 대방에게 일감을 물어  
올(수주했을) 경우에는 그 지배인이 수입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노동자들은 자기가 찾은 일감이라면 10만 루블을 받을  
수 있는데 회사를 통해 일하면 6만 루블만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노동자  
들은 빨리 개인 청부를 나가야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배인은 개인적으로 청부를 나가는 노동자들에게 부과하는 계획분  
을 수시로 인상한다. 사업소(회사)에 할당된 국가계획분을 조기 달성하  
려는 것이거나 자신을 포함한 관리자들의 개인 수입을 늘리려는 것이  
다.<sup>139)</sup> 이 계획분은 2006년 초반에는 노동자 1인당 300달러 정도여서  
당시 노동자 조의 명칭이 ‘300조(組)’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다음해부  
터 계획분이 거의 두 배로 연거푸 올라 근래에는 800달러 정도까지  
치솟았다. 실제로 국가에 송금하는 계획분 금액은 상승률이 높지 않으  
나 지배인 등 관리자들이 식비, 충성자금 등 명목으로 계획분을 인상하  
고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관리자와 노동  
자간 상호 불신이 심하다고 한다.

<sup>139)</sup> 지배인(사장)의 경우 3년 파견 기간 동안의 개인 수입이 100~300만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I
II
III
IV
V

사할린에서 노동자들이 청부로 나갈 경우 1인당 평균 월 2~3천 달러 이상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800달러 정도의 계획분 액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배인 등 관리자들이 과도하게 계획분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자들이 반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배인이 비싼 자동차를 산 것을 본 노동자들이 계획분에서 착복했다고 공공연히 욕을 한 사례가 있었다. 그 지배인은 결국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못했지만 자신을 욕한 노동자들을 한두 명씩 나누어 귀국 시키는 등으로 보복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칼자루 권 사람이 이기게 돼있다”며 노동자들이 불평하는 정도로 마무리됐다.

### 3. 북한 노동자의 근무 형태

#### 가. 쿼터제<sup>140)</sup>

북한 노동자들은 쿼터제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아야 러시아에 입국할 수 있다.<sup>141)</sup> 쿼터제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러시아 기업체들이 매년 5월까지 고용목적を 밝히고 다음해에 고용할 외국인 노동자 수를 지방정부에 신청한다. 지방정부는 이를 취합해 연방정부에 요청하고 연방 보건사회개발부가 경제개발통상부 및 연방 이민국과 협의해 지역별 쿼터를 배정한다.<sup>142)</sup> 이처럼 정해진 쿼터에 맞추어 지방정부가 러시아 기업체들마다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수를 정해준다.

<sup>140)</sup> 북한 노동자들은 쿼터제를 ‘리체제(혹은 리쨌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명칭의 정확한 어원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

<sup>141)</sup> Alyona Pak, “2014년 러시아 내 외국인 노동자 쿼터 확정 및 불법체류 처벌강화,” 2013.12.16,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26292>>. (검색일: 2016.11.3.).

<sup>142)</sup> 위의 자료.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할린 내 러시아 회사는 30여개가 있으며 대개 한 사업체당 100명 정도 쿼터를 신청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쿼터는 무비자 출입국 외국인과 비자 출입국 외국인 두 가지가 있다. 쿼터가 배정된 러시아 기업체는 비용을 당국에 납부하는데 사할린의 한 러시아 회사의 경우 1인당 쿼터비용을 5만 루블(약 800달러)로 계산했다. 쿼터에 따른 고용인원이 많을수록 1인당 비용이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나 쿼터를 배정하는데 드는 실제 비용은 이보다 적어 나머지 차액은 러시아 회사 관리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43)</sup>

쿼터제를 통해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건설(90%) 분야에서 일하며 나머지 10%는 어업 및 자동차 수리 등에 종사한다.

**사진 IV-3** 시티몰(СИТИМОЛЛ)<sup>144)</sup> 인근 고급 연립 단지 건설 현장(좌) 및 그곳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우)



자료: 연구자 촬영, 2016.7.

쿼터를 배정 받은 러시아 기업은 북한 회사에 연락해 노동자를 선발한다. 북한 회사가 파견할 노동자 명단을 기술이나 숙련도에 따른 구분

<sup>143)</sup> 쿼터를 이용하여 그 비용을 수익으로 챙기는 일부 러시아 업체 사장들에 대해 사할린 현지 기업인들과 북한 노동자들은 ‘약덕’ 기업주라고 비난한다.

<sup>144)</sup> 시티몰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호무토보 라이온, 첸트랄나야 2-1에 위치해 있으며 6만 4천㎡의 부지에다 모스크바 쇼핑몰에 버금갈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I
II
III
IV
V

과 함께 러시아 회사로 보내면 러시아 회사가 필요 인력을 선발한다. 그런데 러시아 회사들은 배정받은 수보다 적은 수의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남은 쿼터만큼의 인력이 개인 청부에 나갈 수 있게 된다. 사할린에서는 이런 허수(虛數)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기에 개인 청부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UN 대북제재 조치가 강화되고 새로 취임한 사할린주지사가 건설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북한 노동자 쿼터 인원이 50% 정도 감축되었다고 한다. 2017년 들어 러시아 다른 지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쿼터가 상당히 감축됐다고 한다. 이는 불법 거주 외국인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최근 중앙아시아 등에서 유입된 미등록 노동자가 120만 명에 달하면서 이들의 이동을 감시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밖에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유입을 막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 경제 침체에 따른 루블화 약화, 둘째 UN 대북제재 및 북러 관계 소원, 셋째 북한 노동자들의 세금 체납, 넷째 북한 내 건설 인력 수요 증가로 파견 감축 등이 있다.

#### 사진 IV-4 ▶ 눈 내리는 겨울에 작업하는 북한 노동자들



자료: 연구자 촬영, 2016.11.

러시아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쿼터를 축소함에 따라 사할린의 러시아 기업들은 북한 회사를 통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면서 차라리 인터넷의 인력시장에서 개별적으로 북한 인력을 구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한 건설회사의 사장은 작업할 인부를 구하기 위해 지금은 싸콤, 구글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말한다.

**자료 IV-1** ▶ 러시아 기업체(대방)와 북한 측 사업단의 도급 계약서 (번역문)

**도급계약 제\_\_\_\_\_번**

201\_년 \_\_\_월 \_\_\_일 \_\_\_\_\_시

설립규약에 의거해 활동하는 유한책임회사 '○○○' (대표자 ○○○ 사장), 이하 '도급자'는 \_\_\_\_\_, 이하 '의뢰인'과 다음 내용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함:

1. 도급자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주소에 해당되는 건물의 보수 작업을 진행한다:

---

번호	작업 종류	작업비
1		
2		
3		
4		
5		

2. 상기 명시된 전체 작업의 총 금액은 \_\_\_\_\_ 루블 \_\_\_\_\_ 코페이카이다.

3. 의뢰인은 서면 혹은 구두로 완료된 작업을 확인하고 (작업 자재 공급 기간 동안 연장되는) 본 계약서에 작업 완료 확인에 대한 표시를 한 후 완료된 작업에 대한 보수를 10 여일 이내로 지급한다.

4. 작업 기간: \_\_\_\_\_ 부터 \_\_\_\_\_ 까지.

I  
II  
III  
IV  
V

5. 의뢰인은 작업에 필요한 자재와 다음과 같이 작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공한다:  
전기, 물, 노동자 생활 여건.
6. 유한책임회사 «○○○» 및 노동자들은 계약 대상 관련 작업진행과 관계없는 물품, 현금 등의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의뢰인은 해당 물품들의 안전을 직접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7. 양측은 계약 조건 불이행에 대해 러시아 연방 헌법에 의거해 책임진다.
8. 본 계약은 2부로 작성됐다.
9.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협상을 통해 검토하거나 혹은 관련 러시아 연방 법에 의거해 중재법정을 통해 검토한다.
10. 양측의 법적 주소 및 정보:

의뢰인:	도급자:
_____	유한책임회사 '○○○'
_____	6○○○○0, 사할린주
_____	유조노사할린스크, ○○○○○ 거리, ○○
_____	납세자 등록번호 6○○○○○○○○1/6○○○○○○○1
_____	계좌번호 ○○○○○○○○○○○○○○○○○○○○7
_____	지사 N ○○○○ (주)○○○○○ 하바롭스크
_____	은행인식번호 ○○○○○○○○7
_____	대리계좌○○○○○○○○○○○○○○○○○○○○○7
_____ / _____	_____ / 김○○

(서명)

## 나. 청부

청부는 회사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공사를 수주하여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청부와 반대되는 개념은 ‘대상’ 혹은 ‘국가대상’이 있으며 ‘집체로동(집체노동)’이라고도 한다. 북한에서는 파견노동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러시아에 가면 대상으로 하지 말고 청부로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파견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말해 주는데 이때의 ‘대상’은 주로 큰 규모의 사업을 회사 간 정식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아파트 단지나 연립단지 공사 등을 수주하여 대규모 노동자가 투입되어 작업하는 것을 뜻한다.<sup>145)</sup>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 대상 혹은 집체노동과 청부가 엄격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북한 회사들이 러시아 업체와 정식 계약이 적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소규모 공사를 수주하여 노동자들을 동원하는데 이것은 형태상으로 보면 청부이지만 노동자들은 이것을 (국가)대상 혹은 집체 노동이라고 부른다.

청부는 집수리, 건물 내부 수리, 도로수리 등 소규모로 진행되는 것이 많으며 정식 계약서가 없고 주로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30~50명의 노동자를 인솔하는 작업반장이 지역 내의 인맥들을 활용하여 소규모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와 노동자 개개인이 개별 연락망을 이용하여 일감을 받는 경우가 청부의 대표적인 예이다.

작업반장은 주로 자신들을 일꾼으로 잘 써주는 업체의 관리자나 사장에게 연락해 공사를 따낸다. 이들 작업반장은 기한이 되면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지만 연락망이 적힌 리스트를 새로운 작업반장들에게 전달해 일감을 구할 수 있게 한다. 사할린은 다른 러시아 지역과 달리 한인

<sup>145)</sup> 그러나 ‘대상’이라는 것이 꼭 대규모인 것만은 아니다. 작업 대상이 소규모로 3~4명인 것도 있다.

I
II
III
IV
V

들이 많이 살고 있어 이들을 통해 청부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작업 반장들은 본명을 쓰지 않고 ‘이 미샤’, ‘김 사샤’, ‘최 지마’ 등 러시아식 이름을 써서 러시아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한인들에게는 본명을 사용하고 직함은 작업반장일 경우 한국식으로 ‘소장’이라고 소개한다. 명함은 사용하지 않는다. 맥주를 사들고 러시아 기업을 방문해 관리자들과 함께 마시기도 하며 이들을 북한 식당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노동자들이 직접 러시아 기업체 사장에게 접근해 일감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청부는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끝내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5달에 걸쳐 할 일을 3달에 끝내는 방식이다. 어떤 사업체가 공사를 계획할 경우,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공사기간과 소요비용,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5달 공기(工期)에 건설 소요 비용 얼마가 나오고 여기서 인건비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북한 회사 작업반장에게 연락해 협상하는데 북한 회사 작업반장은 통상 러시아 회사 계획보다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공기 단축을 위해 당초계획보다 더 많은 북한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 가정집 청부의 경우에는 작업반장이 예전부터 알고 지내거나 거래하던 러시아인들이나 한인들과의 연락을 통해 일감을 따기도 하고 노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개별적으로 일감을 구하기도 한다.

인건비는 공사마다 다르다. 24~25평 기준 아파트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재료 집주인 구입)의 경우 3인이 3개월 동안 일하는데 1만 달러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도배, 내장 등 주택 내부(24~25평 기준)의 간단한 수리에는 인건비로 3~4천 달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목욕탕이나 화장실 수리의 경우 인건비가 400~500달러 정도다. 북한 노동자들이 도로 건설 및 보수 작업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일당 30달러를 받는다고 한다.



사진 IV-5 ▶ 북한 노동자들이 인도 및 담장 공사하는 모습



자료: 연구자 촬영, 2016.7.

청부는 비공식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혹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불시 검문에 대비해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 계약서 서류는 노동자 본인들이 가지고 다닌다. 그밖에 수기로 계약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도 많다. 북한 쪽에서는 이를 ‘수표한다’고 말한다.

〈청부의 사례 1: 러시아 소규모 업체와의 청부〉

- ○○○ 지역에서 건축회사를 운영 중인 D 사장은 지역 외곽에 본인이 설계한 교육시설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교육시설을 시공하는 시공사에서는 이 공사에 북한 노동자를 쓰는 것이 좋다고 희망하여 D 사장은 자신이 이전부터 알고 있던 북한 노동자를 포함하여 여러 곳으로 수소문하였다.
- 이때 북한 사업소의 작업반장인 E 소장이 연락을 해와 작업 단가와 시간 등을 협의하기로 약속하였다. E 소장은 북한 사업소의 작업반장급 노동자인데 한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한국 직업으로 따지면 소장급’이라고 설명하고 자신이 데리고 있는 작업 인부가 30명이라고 소개했다.
- 2016년 11월 ○일 오후 2시 30분에 약속이 되어 북한 노동자인 E 소장이 직접 D 사장의 사무실로 방문하여 공사 협상이 시작되었다. D 사장은 1㎡<sup>14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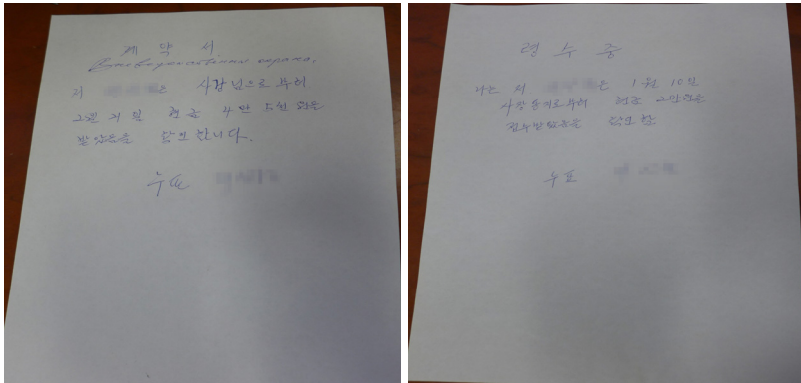
<sup>146)</sup> D 사장은 ㎡를 과거 일본식 표현인 ‘헤베’로 사용하였다.

I
II
III
IV
V

당 1천2백~1천3백 루블의 공사단가를 제시하고 3명의 작업 인부가 필요하고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내에 작업이 종료되기를 희망하였다.

- 한국과 달리 러시아에서는 국가가 정한 공사단가가 있다. 그러나 국가 지정 단가가 실제 시장 단가보다 턱없이 낮기 때문에 통용되지 않는다. E 소장은 공사현장이 ○○○ 지역 중심부와 너무 멀어서 노동자들이 이동하기 힘들다는 이유 등을 들어 1㎡당 1천5백 루블을 요구하였다.
- D 사장은 연구진과의 인터뷰에서 1㎡ 당 1천400루블을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될 경우 총 공사비는 1천200 m<sup>2</sup>(약 363평) × 1천400 루블 ÷ 65(2016년 12월 현재 1달러 당 루블 환율) = 2만 5천846달러다. 3인의 북한 노동자가 1개월~1개월 반 일하는 경우 1인당 1개월에 약 5천743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sup>147)</sup>
- 이번 건의 계약 역시 수기로 적은 영수증(수표) 만 사용됐다.((사진 IV-6) 참조) 공사 선수금은 없으며 어느 정도 작업이 이뤄진 뒤 공사비를 2 : 8 또는 3 : 7 비율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진 IV-6** D 사장이 거래했던 북한 노동자와의 계약서와 영수증



자료: 연구자 촬영, 2016.11.

<sup>147)</sup> D 사장이 러시아 건설현장에서 통용되는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얘기했지만 요약하자면 노동자 1인당 1개월 보름 일하고 8천615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청부의 사례 2: 러시아 개인 가정집 수리〉

- ○○○ 지역 내의 F 씨는 과거 북한 노동자들에게 집수리를 맡긴 적이 있었다. 당시 창호 회사에 근무하는 사촌동생에게 북한 노동자 전화번호를 받아서 연락했었다. 미사라는 가명을 쓰는 북한 노동자는 공사가 끝난 뒤 간혹 전화를 해와 일거리를 찾았다고 한다.
- F 씨는 이번에도 미사에게 연락해 집수리를 하기로 했다. 러시아 일반 가정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쓰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정부 허가를 받은 러시아 회사를 통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비가 비싸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F 씨와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사할린에도 집수리를 하는 러시아 회사가 있지만 공사비가 비싸다고 했다. 사할린은 집수리 공사 규모가 작아서 이를 전담하는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도 있다고 한다. 7~8년 전에는 F 씨 집 근처에 중국인이 작은 점포를 열어 ‘구두수리 합니다’, ‘(집)수리도 합니다’라고 써 붙이고 영업했다고 한다. 그 중국인은 북한 노동자에게 연락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한다. 지금은 그런 중국인에게 공사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은 장사에 밝을 뿐 집수리 업무 등은 잘 모르기 때문이다. 러시아 주민들은 북한 노동자 등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러시아 사람들보다 수준은 좀 낮지만 비용이 싸다고 생각한다.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 경우는 아예 우크라이나나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수리를 하는 전문 인력 업체들이 있는데, 사할린에는 아직 이주노동자를 정식으로 고용해서 영업하는 업체는 없다고 한다.
- 2016년 8월 ○일(화)에 F 씨는 북한 노동자인 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집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사는 한 시간 후 F 씨의 집으로 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실제로 집으로 찾아온 미사는 2년 전에 집수리를 맡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 2년 전의 미사가 북한으로 귀국하면서 이 전화번호를 현재의 노동자에게 준 것이다. 예전에 집수리를 맡겼던 미사는 작년(2015년) 12월경에 떠났으며 사할린으로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의 미사에 따르면 한 지역에 두 번 파견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다른 곳(블라디보스토크 등)으로만 갈 수 있다고 한다.

I

II

III

IV

V

- F 씨와 미샤가 공사할 부분을 둘러보고 협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F 씨가 주말에만 시간을 낼 수 있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할 수 있냐고 묻자 미샤는 토요일에는 모임(사브리니예, 총화)이 있어 일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토요일 회의는 오후 5시에 열리며 통상 1시간 정도 진행된다고 한다. 그러면 토요일 총화가 1시간 밖에 걸리지 않으니 와도 좋지 않겠냐고 물었는데 총화를 하는 장소가 집수리하는 F 씨 집에서 약 40km 떨어져 있으며 총화가 끝나고는 회식이 있다고 했다. 이 회식은 25명 정도가 모여 같이 식사를 하며 저녁 7시경에 끝난다고 한다. 또한 일요일에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비가 올 경우에만 올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토요일 저녁에 다시 통화하기로 합의했다.
- 북한 노동자와의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계약한 금액은 재료비는 집주인이 별도로 구입하고 인건비만 1만5천 루블(약 234달러)이었다. 북한 노동자들이 전화통화를 했을 때는 2만 루블 정도 들 것으로 말했으나 직접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미샤는 1만5천 루블이면 된다고 했다. F 씨 역시 2년 전에 방 2개 공사했을 때 5만 루블을 지급했던 경험이 있어 1만5천 루블이면 적당한 금액으로 생각해 그 금액에 합의를 했다. 그러나 사할린 내 시공 전문회사의 관리자에 따르면 그 견적과 시간으로는 러시아에서 평균적으로 5천 루블(78달러) 정도가 적정하다고 한다. 사할린에서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이 단가를 평균치보다 조금 높게 요구해도 그냥 그 가격에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공사 개시 전날인 9월 ○일(토)에 미샤가 전화하여 내일(공사 개시일) 날씨가 좋을 것으로 예보가 있어 공사하기 좋을 것이라고 권했다. 미샤는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F 씨가 동의해줬다. 미샤 대신 온 북한 노동자의 이름은 '사샤'였다. 결국 9월 ○일(일)에 집수리 공사가 시작되었다. 사샤는 오전 10시에 F 씨의 집에 도착하였고 재료 구입을 위해 상점에 같이 다녀오자고 했다. 사샤는 연장들을 가지러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가 1시간 후에 다시 F 씨의 집에 왔다. F 씨와 사샤는 F 씨의 어머니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공사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시내의 베료스카(Березка) 상점으로 갔다. 가는 길에 사샤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점에 도착했다. 공사 재료(벽지,

풀, 마감용 테잎 등)를 구입 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사샤가 바로 일을 시작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저녁 6시가 넘게 됐다. F 씨는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야 공사가 끝날 것 같아 사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려고 의사를 물었다. 원래 러시아 노동자건 북한 노동자건 공사 중에는 저녁식사 시간이 되어도 집주인에게 절대로 저녁식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러시아 노동자들의 경우 작업 시간 중에 식사시간이 겹치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해결하고 오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작업이 끝나는 시간까지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F 씨가 사샤에게 식사를 권하자 그는 “아니에요. 아니에요.”하고 거둬 거절했다. 그러나 F 씨가 간단하게 식사하고 커피 한잔 하라고 권하자 마지못한 듯 그에 응했다. F 씨가 식사를 내오자 사샤가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는 평양 출신으로 건설과는 무관한 일에 종사하였으며, 사할린에 파견 나와서야 건설 일을 배웠다고 했다. 그는 공사부분에 일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고 그 일을 마치기에 재료가 부족하며 화장실 작업 동안에 호스 누수가 있어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F 씨는 사샤가 월요일에 다시 와서 일을 마무리하도록 합의했다.

**사진 IV-7** ▶ 북한 노동자가 공사한 벽면과 화장실 모습



자료: 연구자 촬영, 2016.11.

I
II
III
IV
V

- 9월 ○일(월) 저녁 6시45분에 사사는 또 다른 인부 1명과 함께 F 씨 집에 방문했다. 새로 데리고 온 노동자는 '지마'라는 이름으로 나이가 60대 정도로 보였다. 두 사람은 밤 9시까지 일했다. 이날도 F 씨는 저녁 식사를 제공하면서 노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마는 사할린에 오기 전 블라디보스토크와 이르쿠츠크에서도 일하였다고 했으며 그때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작업은 이 날도 모두 끝나지 않았다. 화장실에 쓸 호스를 구입하지 않았고, 연장도 가져오지 않은 것이 있어서였다. 그들은 일이 아직 다 안 끝나 내일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달라."면서 공사비 일부만 지급해주도록 F 씨에게 요청했다. F 씨가 "공사가 다 끝나야 준다"고 거절했으나 자꾸 요청을 해서 "그럼 5천(루블)만 받아가라"라고 말하고 공사비 일부를 지급했다. 그들은 다음 날인 화요일에 다시 오기로 약속했다. 9월 ○일(화)에 미사가 저녁에 집수리하러 갈 예정이라고 F 씨에게 전화한 뒤 저녁 6시 19분에 F 씨 집에 도착했다. 결국 이날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나머지 잔금을 받아 갔다. 사사는 공사 후 며칠이 지난 뒤에 F 씨에게 다시 전화하여 공사한 것에 이상이 없는가를 물었다.

〈사례1〉과 〈사례2〉는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소규모 업체나 일반 가정집에서 청부 노동을 할 때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계약이 아닌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기업주나 집주인과 협상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거래처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자신의 다음 차례에 사할린에 오는 작업반장에게 인계해준다든지, 작업반장이라는 북한식 직함 명칭 대신 '소장'이라는 한국식 직함을 사용한다든지, 사업주나 집주인과의 계약에서 거리와 시간, 수입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태도는 공사나 작업에 대한 전문성 외에도 이들이 러시아에서 일종의 '비즈니스'적인 면을 터득해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공사에서도 이들은 되도록이면 작업 원칙과 집주인에 대한 배려를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공사 시간이 예정보다 늦어져 집주인이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도 이를 거절하는 태도나 하루 공사로 계약했어도 일이 제대로

끝나지 않았을 경우 사흘에 걸쳐서라도 작업을 마치고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며칠 후에 집주인에게 다시 확인 전화를 해주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사가 끝나기 전에 계약한 금액의 일부라도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는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계획분에 대한 압박이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평판은 대체로 좋은 편이다. 이들은 자유로운 이주 노동자에 비해 규율이 엄격한 북한 관리자들의 관리를 받으며 비교적 근면하고 기술도 좋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노동자들은 일반노동자들보다 일을 빨리 끝내는 특징이 있다. 이때는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해서 공기를 단축하는 근면성을 보인다.

그러나 아무래도 빨리 일을 끝내려고 하면 허점이 있다. 대충대충 일을 마무리하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곳은 대충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공사가 끝나고 다시 손 봐야 하는 일이 생긴다. 이 때 공사를 진행했던 노동자들에게 요청하면 다시 A/S를 해준다고 한다. 최근 러시아에 미숙련 노동자들의 파견이 증가되면서 이런 일들이 잦아져 사할린 현지인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한다. 이들 미숙련 노동자들은 전문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교사, 예술가 등 이른바 ‘잡자루도 안 잡아본’ 노동자들로 이들이 유입되면서 공사의 전문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북한 내부에서 건설 일들이 많아져서 외부로 나올 인력이 부족해진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 다. 쿼터의 제한과 북한 노동자의 미래

집체노동이든 청부든 사할린에 입국하여 노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I

II

III

IV

V

전역에 걸쳐 쿼터는 통상 신청한 쿼터수의 40% 정도만 허가가 되기 때문에 러시아 회사들은 원래 필요한 인원보다 많이 신청하곤 한다. 이렇게 쿼터로 러시아에 입국한 노동자는 해당 지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하며 일 할 수 있다.<sup>148)</sup> 그런데 러시아는 2017년부터 북한 쿼터를 줄이기 시작했다. 2016년 7월 현재, 2017년 북한 노동자 쿼터는 신청 건 전체의 10% 정도만 허가되는 실정이다. 또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비자(5년) 외에 노동허가증(‘카드’라고 표현)을 발급받는다. 이 노동허가증은 3년 전부터 러시아 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와 함께 2016년 6월 1일부터는 러시아 출입국이 내무부 경찰 관할로 기구가 개편되었다. 외국인노동자를 감시하는 정책이 강화된 것이다. 해외노동자 비자인 H2를 받았다고 해도 노동허가증이 없으면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새로 개편된 노동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주 노동자들은 첫째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러시아 내에서 발급된 ‘진단서’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러시아어, 역사, 문화 등에 대한 교육 후 소정의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sup>149)</sup> 이 ‘시험 통과 증명서’가 있어야 러시아 노동성으로부터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sup>150)</sup>

148) 다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149) 현재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에 소재한 4개 대학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150) 러시아에서는 관련 시험을 교육하고 시험을 실시하는 회사(교육청에서 허가 받음)들이 있는데, 뇌물로 증명서를 발급해주기도 한다. 대상 인원이 많으면 조금 저렴하게 대행 해주고 그 수가 적으면 조금 더 비싸진다. 실례(회사 대행)로 연해주의 북한 회사인 ‘OO’을 대상으로 50명에 대한 증명서를 받았을 때 1명 당 6천 루블 이었으며, 이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대행해준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8천 루블 정도가 든다고 한다. 금액을 비교하면 개인적으로 대행서비스를 받을 때 공사가 1인당 1만 6천 루블 정도이다. 대학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비용 및 시험 관련 회사에서 지출하는 비용의 원가가 최소 4천 루블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면 실제 교육은 시행하지 않는다. 즉, 교육이 없어도 증명서가 발급된다. 하지만 러시아 경찰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불법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별도로 개인별 교육을 시행하는 등 다른 형태로도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비용은 노동자들의 개별 수입에서 차감된다.



또한 러시아는 청부 등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행위에 대해 점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입국법을 위반(청부 등)했을 때, 노동자 소속 회사에는 40만 루블과 벌금 1인당(사장) 20~25만 루블로 총 60~65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제까지 북한 사람들은 러시아와 북한의 특수한 외교관계로 인해 러시아 법의 엄중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는 외국인(노동자, 이민자 등)들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과거 북·러 관계로 형성된 파견시스템에 있어 편리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대북제재에 동참해야 하고 대내적으로도 이주노동자 규제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 러시아로서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더 이상 우호적일 수 없게 됐다.

## 4. 북한 노동자의 수입과 계획분

### 가. 북한 노동자의 수입

사할린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수입은 기술에 따라서 다르다. 쿼터제로 러시아 회사(대방)의 일을 맡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 1개월에 3만 5천 루블(약 453달러) / 4만 5천 루블(약 680달러) / 6만 루블(약 906달러) / 10만 루블(약 1천500달러)로 등급이 나뉘며 대개 1개월에 1천500달러가 최고 수입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공무원 평균 임금이 월 3만 루블임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러시아 사람들보다 수입이 많다. 북한 회사 관리자들의 경우는 노동자보다 월등히 수입이 많다.

청부로 일을 나갈 경우 러시아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수입이 많은 것이 보통이다. 기술자들의 경우 ‘하루에 한 장 잡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한 장’이라는 것은 100달러를 뜻한다. 이렇게 볼 때 청부로

I
II
III
IV
V

나가는 일반 노동자들에게 약 3천 달러가 임금 최대치라고 할 수 있으며 작업반장 등 현장관리자급인 경우는 그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계절적인 편차도 있다. 노동자들의 소득이 제일 많을 때는 4~5월이며, 겨울인 11월~3월까지의 5개월 정도는 공사가 많지 않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수입이 낮은 노동자들도 많다. 작업 기술 외에도 러시아어 습득 유무, 청부의 유무에 따라 노동자들 간의 소득격차가 매우 높은 편으로 3년 내내 일하고도 계획분을 제하고 나면 1천~2천 달러밖에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다.

임금의 수령은 집체노동일 경우는 주로 지배인이 임금을 수령하고 청부일 경우는 작업반장이나 노동자 각자가 임금을 수령한다. 집체노동의 경우에는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되기도 하고 현금(루블)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청부의 경우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할린 한인인 G 씨에 따르면 자신의 사업체의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은 사장이 은행으로 송금한다고 말한다. 그는 노동자들 개개인이 스페르뱅크 등 은행에 개인카드가 있다고 한다(한국의 체크카드와 유사함). 그러나 실제로 사할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에 따르면 은행을 이용하는 노동자는 단 한명도 없다고 한다. G 씨 사례의 경우 이론상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은행 이용은 가능하지만 사할린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이는 G 씨가 친북 한인이어서 자신의 회사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미화해서 표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루블화로 받은 임금을 곧바로 환전소나 암달러상들에게 달러로 환전하여 북한 회사에 맡기거나 개인이 소지한다. 흔하진 않지만 때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사례도 있다.

## 나. 계획분

북한에 보내는 국가계획분 혹은 계획분<sup>151)</sup>은 약 300달러로 2014년 무렵까지는 1만 5천 루블 정도였으나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2016년 현재는 2만 루블 정도라고 한다. 이 국가 계획분의 액수는 북한 내각에 송금되는 액수를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배인들은 식비, 충성자금 등의 명목으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액수의 계획분을 요구한다. 특히 청부로 나가는 노동자들은 회사일(국가대상 일)을 하는 노동자들보다 2배 이상의 계획분이 부과된다. 즉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기업에서 일하는 국가대상과 개인청부를 나가는 사람의 계획분이 다르며 사업소(회사)마다도 다르다. 사할린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대상은 매월 400~800달러, 개인청부는 800~1천500달러 정도라고 한다. 이 계획분을 3개월 가량 미납한 노동자는 북한으로 송환된다고 알려졌는데 비자 문제와 쿼터제가 얽혀 있어 실제로 송환되는 경우는 드물며 부족한 계획분을 동료들에게 빌려서 내는 경우도 있다.

노동자들은 국가계획분 납부에 대한 부담이 늘 있어서 러시아 회사 고용주나 공사를 맡긴 집주인에게 인건비를 미리 당겨서 지급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 5. 북한 노동자의 일상생활과 정체성

### 가. 숙소 생활과 총화

북한 노동자들은 사업소 숙소에 기거하면서 러시아 사업체에 출퇴근

<sup>151)</sup> 연해주 지역에서는 노동자들이 이를 '기획비'라고도 한다.

하거나 러시아 기업체 내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러시아 기업체 내 숙소에 머무는 것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단, 토요일 오후 5시경에는 북한 사업소에서 진행하는 총화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총화는 러시아어로 ‘사브라니예(собрание)’라고 불리는데 ‘모임’이라는 의미이다.

러시아 한인 G 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200명까지 수용하는 간이 숙소가 있으며 연구진이 방문했을 때 북한 노동자 5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었다. 이곳에선 옷, 음식, 신발 등을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한다. 가령 신발은 6개월에 1켤레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또 위성수신기도 있어서 TV시청도 가능하다. H 씨 작업장의 경우 하루 100루블 정도에 잠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전기, 수도, 샤워시설, 난방이 제공되지만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 조리시설이 있어 식사는 각자 해결한다.

사할린은 숙소의 규율이 느슨한 편이라고 한다. 할당금액(계획분)만 맞춰 내고, 토요일 모임(총화)에 참석하기만 하면 어디에서 먹고 자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진 IV-8** ▶ 러시아 한인 G 씨가 운영하는 사업장 내의 북한 노동자 숙소



자료: 연구자 촬영, 2016.7.

그러나 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총화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전날 과음하여 총화에 못 갈 위기에 놓인 노동자가 걱정이 된 러시아 업체 사장이 그 노동자를 들쳐 업고 간적도 있다. 간혹 총화 때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북한 관리자들과 러시아 고용주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아래 사례는 러시아 업체 사장이 총화와 관련해 북한 회사 관리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총화일이었는데, 그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을 하자고 하니 북한의 감독자가 반발하길래 “너 뭐 하러 여기 왔나? 돈 벌러 왔나, 회의하러 왔나?” 물었더니 (북한 감독자가) “돈 벌러 왔습니다”고 대답하길래 “돈 벌자, 회의는 평양에서 하자”고 농담 삼아 얘기한 적이 있어요(I 씨, 러시아 업체 사장).

북한 노동자들은 부식재료를 중국 조선족 상점에서 구매한다. 물건 값이 저렴하고 한국어가 통하기 때문이다. 작은 회사 단위로 우수리스크시에서 한 번에 20톤씩 대량 구매한다. 2016년 11월 쌀 시세는 톤당 4만 2천 루블(약 658달러)이었다. 배추, 당근 등 야채는 중국 조선족이 사할린에서 운영하는 농장에 전화로 주문한다. 2016년 11월 배추 가격은 1kg에 18루블(약 0.28달러)였으며, 북한의 한 사업소에서 김장용으로 27톤을 구매하였다. 거래 과정에서 중간 관리자들이 리베이트를 챙기는 일이 잦다고 한다.

## 나. 노동자들의 소비와 여가생활

북한 노동자들은 휴식을 위해 사우나를 찾기도 한다. 공식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곳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사우나를 주로 이용한다. 한편, 생일인 노동자가 있는 날에는 여럿이 모여 잔치를 벌이기도 한다. 숙소에서

I

II

III

IV

V

별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보통이며 북한 식당이나 중국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기도 한다. 이들이 즐겨 찾는 북한 음식점 ‘드바 브라타(Два брата, 두 형제라는 뜻)’에는 2층에 노래방도 있어 식사 후에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술은 보드카 외에도 한국소주인 ‘참이슬’도 즐겨 마신다. 식당 계산대에서는 ‘오리온 초코파이’ 등 한국산 과자도 팔고 있다.

사진 IV-9 ▶ 사할린 북한 음식점의 외부(좌)와 내부(우)



자료: 연구자 촬영, 2016.7.

일감이 없어 쉬는 때는 낚시를 하거나 바다 구경에 나서기도 한다. 임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동료들끼리 주패 노름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간혹 시내에 나가 이그라이<sup>152)</sup> 혹은 압토마트<sup>153)</sup>와 같은 동전오락기 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가족과 떨어져 3년 이상 해외생활을 하는 북한 노동자들 일부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조선족 여자를 소개받아 사귀기도 한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상황 탓에 벌어지는 일일 것이다. 북한 노동자들은

<sup>152)</sup> 이그라(играть)는 놀다, 오락하다 등을 의미하는 러시아어로 여기서는 사행성 기기인 슬롯머신을 의미한다.

<sup>153)</sup> 압토마트(автомат)는 자동기계를 의미하는 러시아어로 여기서는 동전 오락기를 말한다.

러시아 여성을 사귀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조선족 여성은 말도 잘 통하고 함께 생활도 할 수 있으며 밥도 해주기 때문에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고 한다. 조선족 여성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다. 그러나 사할린의 조선족 여성들이 3~4년 전부터 한국으로 이주해 현재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20여 명만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 파견되는 노동자들의 연령이 최근 3~4년 사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사할린은 섬지역이어서 그동안 탈북이 거의 없었으나 최근 탈북 우려가 커지면서 10년이 넘는 노동자들을 귀국시키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사할린에 10년 이상 노동자로 일한 사람은 4명뿐이며 사업소 관리자들은 탈북을 막기 위해 하루에 3번씩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 IV-10** ▶ 휴일에 중국인 시장에서 쇼핑하는 젊은 북한 노동자들 (오른편의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



자료: 연구자 촬영, 2016.11.

I
II
III
IV
V

젊은 노동자들은 휴일이나 일이 없는 날 3~4명씩 짝을 지어 주로 중국산 물품을 판매하는 중국시장에서 쇼핑을 한다. 예전에는 값이 싼 옷이나 신발 등을 주로 골랐지만 최근엔 가격보다 유행에 맞는 물건을 고른다고 한다. 북한에서 금지돼 있는 청바지나 영어 문구가 쓰인 옷은 꺼리는 것이 보통이나 청바지는 작업복으로 구입해 사용하다가 귀국할 때는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영어 문구나 한국어 문구가 적힌 옷을 사서 문구를 떼어내기도 한다. 옷 수선소에서 일하는 J 씨에 따르면 예전에 수선비 깎는 데만 관심을 갖던 북한 노동자들이 최근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팁을 얻어 주며 잘 고쳐달라는 경우마저 있다고 한다. J 씨는 팁을 주면서 일감을 소개해 달라는 일도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J 씨: 그 사람들(북한 노동자) 앉아서 기다리다가 하고 (중략)  
우린 그냥 바느질 하죠. 조선말 잘 하니까 “어머니, 어머니” 하고. 어떤 아이는 “어머니, 내 700원(루블) 주니까 어머니 그냥 잘해주세요.”<sup>154)</sup>

연구자: 깎지 않고요?

J 씨: 요즘에 50루블(약 0.8달러) 더 주는 아이도 있어요. 여기 (사할린) 오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겠죠.

J 씨: 어머니 신경쓰지 말라고.

연구자: 수선하면서 물어보는 거 없어요? 사할린에 대해서?

J 씨: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거리 없어요? 일거리 있어요?” 물어봐요.

K 씨: 소소한 얘기...

J 씨: 소소한 얘기도 할 거도 없고. 어떻게든 일만 해서 돈만 벌어갈 그런 생각이지.

(J 씨, 여, 60대, 사할린 한인으로 옷 수선업에 종사/ K 씨, 여, 59세, 사할린 거주 중국 조선족)

<sup>154)</sup> 옷 수선비는 일반적으로 350루블(약 5달러) 정도 되는데 사례에 등장한 북한 노동자는 수선비로 2배 정도의 액수를 지불하면서 옷을 잘 수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북한으로 휴가를 가거나 귀국하는 노동자들은 가족, 친지에게 줄 선물 외에도 재고품 등을 저가에 대량 구입해 간다고 한다. 북한에서 팔기 위한 것이다. 사업소 관리자들이 엄격히 단속하는 스마트폰과 동영상 복제 CD를 은밀하게 사는 경우도 꽤 있다. 2009년쯤부터 사할린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 스마트폰이 유행하기 시작해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다. 인터넷 검색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구글에서 한글로 검색하면 볼 수 있는 한국 소설 등을 즐겨 본다고 한다. 그러나 인터넷 동영상은 통신비가 많이 들어 잘 보지 않는다고 한다.

사진 IV-11 > 한국 드라마 및 영화의 복제 CD



자료: 연구자 촬영, 2016.11.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외곽에 위치한 사할린스카야 거리의 중국인 시장에서 한국 영상물 복제 CD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주로 ‘각시탈’, ‘추노’, ‘감격시대’, ‘왕의 얼굴’, ‘명량’, ‘해를 품은 달’ 등 역사물이지만 간혹 에로물도 팔린다. CD는 중국 베이징에서 불법 복제품을 수입해 오는 것으로 사할린에서의 소매가격은 장 당 300루블(5달

I

II

III

IV

V

러)~800루블(13달러) 정도이다. 북한 노동자들은 한국 CD를 소지하거나 보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나 은밀히 구입해 보고 있다.

## 다. 북한 노동자들의 정체성

북한 노동자들은 사할린에 파견된 이후 국가대상(혹은 집체노동)에서 개인청부로 나가기 위해 작업을 마친 후 야간에는 러시아어 공부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다. 사할린에 한인들이 많아 타 지역보다는 일감을 구하기가 쉽지만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아야 개인적으로 러시아인들과 협상하면서 더 많은 일감을 수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기들이 러시아인들보다 일도 더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들은 작업장에 나가서 러시아 노동자와 자신을 비교하곤 하는데 러시아 노동자가 머리가 좋지 않고, 술을 많이 마시는데 비해 자신들은 머리가 영리하며 일하고 공부하는 데 '악질'이라고 평가한다.

연구자: 북조선에서 오신 분들 일 잘한다고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봤어요.

L 씨: 강철의 사나이지!

M 씨: 러시아 사람들 일하다가 술 마시고... 우리는 머리가 영리(하죠).

연구자: (러시아 노동자와) 같이 일해요?

M 씨: 예, 같이 일하죠. 러시아(인)는 머리가(안 좋아요)...

연구자: 러시아어 말하실 줄 아세요?

L 씨: 알죠.

연구자: 공부하셨어요?

L 씨: 와서 하니까... 러시아 놈들... 이렇게 하니까(우리에게 좋은 대우를 하지 않으니까)...

M 씨: (L 씨에 대해 얘기하며) 러시아말 저녁마다 이렇게... 배우시고...

연구자: 줄여서 러시아말 공부가 되시겠어요?

M 씨: 조선 사람은 악질이에요. 일하는데도 악질이고 배우는 데도 악질이고. 많이 배웁니다. 말도 많이 배우고…  
(L 씨, 남, 50대 중반, 사할린 파견 북한 노동자로 작업반장 정도에 해당/ M 씨, 남, 30대, L 씨와 같은 작업반 소속의 북한 노동자)

이 대목은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 경험 속에서 타 민족과 비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은 한인이나 러시아인들 앞에서는 절대로 자부심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계획분이 너무 높아 살기 힘들다는 식으로 엄살을 부려 일감의 금액을 올려줄 것을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 라. 조국에 대한 불만

조국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경우 가장 엄중한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여간해선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사석에서는 드물게 김정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다. “어린 것이 지가 뭐 안다고…”하는 식이다. 그러나 아주 친한 사람끼리만 불만을 얘기할 뿐 숙소 등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 6. 송금과 귀국 후의 생활

노동자들은 수입이 생기면 즉시 환전상을 이용하여 미 달러로 환전해 놓는 게 생활화 되어 있다. 러시아 루블화의 환율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달러를 안전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북한 노동자들은 환전시 은행보다는 사할린스카야 거리의 중국인 상점 주변에 있는 무허가 달러 환전상을 주로 이용한다. 은행보다 환율이 더 좋기 때문이다.

I

II

III

IV

V

사진 IV-12 ▶ 북한 노동자들이 자주 찾는 달러 환전소



자료: 연구자 촬영, 2016.11.

노동자들은 주로 일 년에 한 번씩 고국의 가족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한다. 송금액은 수입이 많은 노동자들의 경우 1만~2만 달러가 넘기도 하지만 1년에 1천 달러도 벌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송금을 아예 못하거나 아주 작은 금액만을 송금할 수밖에 없다. 송금 방식은 본인이 휴가를 가거나 휴가 가는 동료를 통해 보내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 때문에 휴가 노동자들은 통상 10만 달러 이상을 휴대한다고 한다.

사할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러시아 국내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검열이 거의 없으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평양으로 비행기를 갈아타는 국제 간 이동의 경우에는 러시아 세관의 검열을 받게 된다. 검열을 피하기 위해 북한 고려항공 관계자에게 부탁해 운반시킨다고 한다. 운반자에게는 1만 달러 당 100달러를 수수료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들이 급하게 돈을 보내 달라거나 자녀가 핸드폰을 사달라는 경우 등 부정기적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송금방법이 여의치

않으면 ‘기통수’를 통해 보내기도 한다. ‘기통수’는 3개월에 한 번씩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당선전물, 출판물 등을 보급하는 사람으로 외교여권을 가지고 있어 공항의 검열에서 자유롭다. 기통수도 송금액의 10%를 수고비로 받는다.

러시아 내 사업소에서 북한으로 계획분 등을 송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국제제재로 인해 은행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현금을 그대로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검열을 피하기 위해 항공사 관계자에게 비행기를 정비할 때 몰래 돈을 실어 놓도록 부탁한다. 그러나 이 수법이 2012~2013년 경 러시아 정부에 탄로나 약 300만 달러를 압수당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돈을 약처럼 포장하는 방법 등으로 바꾸어 송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송금을 단순히 ‘돈’으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러시아 파견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이 경험한 사고방식, 행위형태, 정체성, 사회자본 등이 송금과 함께 북한에 전파되기 때문이다.<sup>155)</sup> 노동자들은 귀국한 뒤에도 이주 노동을 다녀온 사람들끼리만 왕래하며 다른 사람들과는 아예 접촉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해외파견 근무 때의 이야기를 북한의 일반인들에게 해봐야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선불리 이야기하다가 감시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귀국한 노동자들은 다시 해외파견 근무를 나가려고 노력한다. 또 러시아에서 친하게 지냈던 고용주들에게 꾸준히 연락을 함으로써 다시 파견될 경우에 대비하기도 한다.

---

<sup>155)</sup> 이주 연구에서는 이를 ‘사회적 송금(social remittances)’이라고 하는데 ‘수용국 사회에서 송출국 사회로 흐르는 사고방식, 행위형태, 정체성, 사회자본’을 뜻한다. Peggy Levitt, “Social Remittances: Migration Driven Local-Level Forms of Cultural Diffus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2, No. 4 (1998), pp. 926~927.

## 7. 소결: 사할린 북한 노동자의 특징 및 타 지역과의 비교

사할린 지역은 러시아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쿠티제를 통한 노동자들의 입국, 북한 회사(사업소)의 관리, 집체노동과 청부 노동 참여, 계획분 혹은 상납금 납부의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할린이라는 지역적 특징이 반영되어 노동자들의 근무형태, 수입, 계획분 뿐 아니라 이들의 인식과 가치관 등에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북한 노동자들이 입국 후 6개월~1년 정도 지나면 청부 노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노동자들의 삶과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간략하게나마 사할린을 러시아 중부 지역과 극동지역의 연해주 지역과 노동형태로 비교해보면 아래 <표 IV-2>와 같다.

**표 IV-2** 러시아 3개 지역 간의 노동 형태 비교

구분	크라스노야르스크	연해주	사할린
위치	러시아 중부지역	러시아 극동지역	러시아 극동 도서지역
노동 형태	노동자들이 북한 회사의 집체노동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다수임. 개별적인 청부 노동은 많지 않음.	개별적인 청부 형태의 노동보다 북한 회사의 집체노동 비중이 높음.	회사의 집체노동보다 개인 청부 형태의 노동이 더 많음.

연해주 지역의 북한 노동자의 노동 형태에 대해서는 이애리아·이창호(2015)<sup>156)</sup>에 자세히 분석되어 있듯이 개별적인 청부형태의 노동이 존재하지만 집체노동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사할린 지역의 상황과 가장 대비되는 지역은 러시아 중부의 크라스노야르스크<sup>157)</sup>이다. 본

<sup>156)</sup> 이애리아·이창호,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연구진이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상황을 보다 객관화시켜 설명하기 위해 따로 조사한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의 북한 노동자의 실태는 아래 <사례 3>과 같다. 이 세 지역의 노동형태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연해주와 크라스노야르스크는 지역 내에 영향력이 강한 북한 회사들이 다수 존재해 러시아 업체와 공식적인 계약을 맺고 일하는 국가대 상 혹은 집체노동이 발달되었다. 따라서 파견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고 자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157) 시베리아 지역의 중심 부분에 자리한 러시아의 지방정부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Красноярский край)은 1934년에 신설되었다. 같은 해에 함께 설립되었던 예벤키 자치구와 타이미르 자치구를 2007년 1월 1일에 흡수하게 되면서 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23배인 233만 9천700km<sup>2</sup>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러시아 전체 면적에서도 13%를 차지하는 거대한 행정구역이다. 북극해와 접하는 유라시아대륙의 최북단(북위 77°4')인 타이미르 반도의 첼류스킨 곳에서 시작해 몽골의 국경선 인근까지 뻗은 남부 경계까지 길이가 3천km에 달한다. 2015년 말 주의 인구가 286만 6천 명에 불과하다. 인구밀도 1.21명/km<sup>2</sup>으로 절대적 인구 부족 지역으로 구분되는 크라스노야르스크는 원래 하카스, 추바시, 예벤키 등 북방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으나 스탈린 시절에 많은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벨로루시인과 다른 많은 소수민족들이 소련당국에 의해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으로 이주하게 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이주민 중심의 인구 분포를 가지게 되었다. 현재 러시아인의 비중이 86.3%로 가장 높고, 3.3%의 우크라이나인과 소수민족인 하카스인(1.9%)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이주된 독일인과 타타르인이 각각 1.5%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의 98%가 에니세이강 남쪽, 즉 주 전체로 보면 남쪽 1/3 지역의 영토에 거주하며 공업과 농업 생산의 대부분도 남부에 집중되어 있다. 부족한 인구에 비하면 천연 자원은 매우 풍부하다. 러시아 니켈의 80%, 코발트의 75%, 구리의 70%, 석탄의 16%, 금의 10%가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에서 생산되며 러시아 목재의 20%도 이 지방에서 나온다. 석유와 천연가스도 있다. 산업도 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발전해 알루미늄 정련, 조선업 관련 기계 제조, 목재 가공 기계류 생산과 목재 가공 분야, 펄프 및 제지업이 발달해 있다. 주도(州都)인 크라스노야르스크는 모든 면에서 주의 중심지이다. 1628년 요새로 건설된 이 도시의 인구는 2013년에 100만 명을 넘어서 시베리아에서 제3의 도시로 꼽히고, 인구 17만 명을 보유한 주 2위 도시 노릴스크와 격차가 크다. 크라스노야르스크로의 인구 집중 현상은 현재도 계속되는데 이는 크라스노야르스크 시의 비교적 온화한 기후 조건과 더불어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통과하는 교통 인프라의 영향이 크다. 이주민 중심의 자원개발 지역인 크라스노야르스크 주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북한 노동자들도 2010년 이래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택 건설, 벌목과 목재 가동 등의 분야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
II
III
IV
V

사할린의 경우 이와 달리 파견된 지 6개월~1년 정도까지는 국가대상 혹은 집체노동에 종사하지만 이후에는 노동자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개별적인 청부를 할 수 있다. 물론 청부를 한다고 해도 높게 책정된 계획분과 노동자들이 목표로 설정한 수입 때문에 강도 높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다른 지역의 파견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청부를 시작하면서 누리는 집단생활에서의 해방감과 자유스러움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청부를 통해 외부세계를 학습하면서 점차 자본주의 방식이 체화되기 시작한다. 청부를 하면서 습득된 지식은 자신의 정체성, 거래형태, 작업장에서의 매너 등에 배게 되며, 당사자들이 사할린 근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떠나더라도 그 다음으로 이주한 노동자에게 전달되면서 재생산된다. 과거 역사적으로 형성된 특권적 공간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사례 3〉 크라스노야르스크의 북한 노동자

- 러시아 중부의 크라스노야르스크의 경우 새롭게 형성되는 광산도시들에 북한 노동자들이 주로 파견된다. 러시아 광산회사(예를 들어 소브리스크 회사, 본사는 모스크바에 있음)들이 이 지역에 진출해 광산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광산노동자와 그 가족, 주민들이 거주할 아파트, 도로 등 시설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아파트 건설이나 도로 건설 등에 종사하는 인력들이다. 이 지역의 북한 노동자들은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정부의 쿼터제(고용허가제)에 입각해 파견된다. 예를 들어 러시아 회사(대방)에서 100명이 필요할 경우 정부에 200명 정도를 신청하여 들어오고, 나머지 100명은 청부 노동을 하게 된다.
-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북한 회사들의 영향력이 강하다. 과거 북한에서 파견된 북한 회사 관리자인 K씨가 러시아 마피아의 도움을 받아 크라스노야르스크에 북한 회사들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북한 회사들



의 대외적인 힘이 강하다고 한다. 이 북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러시아 경찰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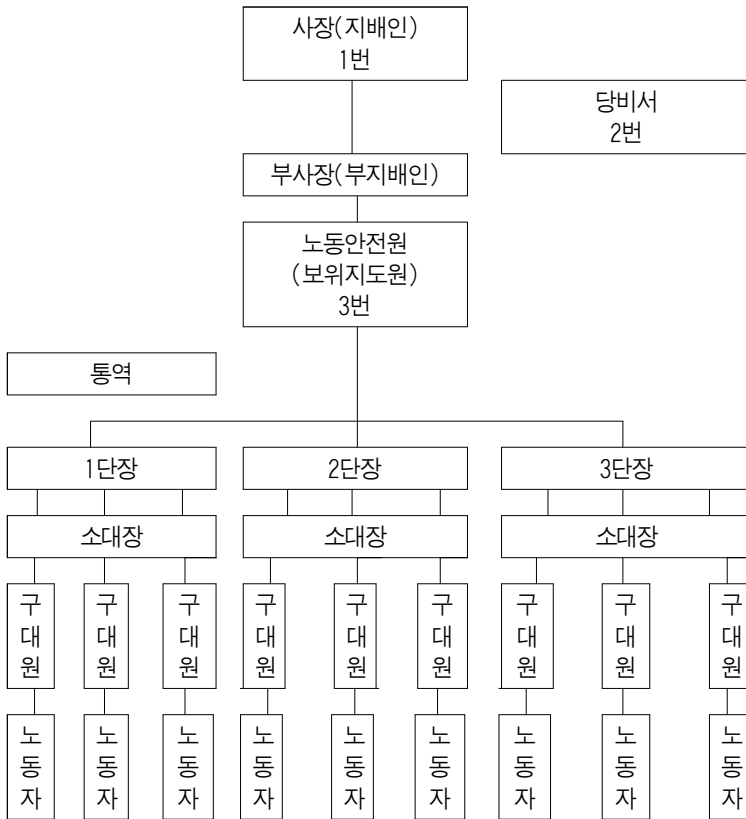
- 크라스노야르스크의 북한 회사들은 여러 개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제2건설회사(혹은 제2건설사업소)만 파악된 정도이다. 제2건설사업소의 경우 주로 러시아 회사(대방)를 통해 수주한 작업에 노동자들을 동원하고 있고, 노동자의 수가 500명 정도이다. 사장(지배인) 및 관리자들의 권한이 강해 정부의 경우에도 개인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부를 관리하는 등 전체적으로 회사 사장(지배인)이 일감을 받아 노동자들을 내보내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 노동자들은 자신의 수입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분실의 위험 등으로 인해 거의 회사에 맡겨둔다고 한다. 이 돈은 창고에 넣어 보관하는데 사장과 단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이 회사(사업소)의 경우 평균 1인당 연간 3천 달러 정도의 돈이 위탁되어 관리되고 있고, 돈의 입금과 출금 상황은 관리자가 수첩에 적어 관리하고 있다.
- 이 사업소의 개인적인 수입은 1년에 한번 있는(대략 11월 중순경) 총회에서 분배한다. 이 총회는 노동자들이 매주 가지는 총화와 이름은 같으나 1년 동안 노동자들의 수입과 계획분을 모두 결산하고 분배하는 특별한 날이 된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1년에 한번 있는 총회에서 결정되며 일반적인 생활비는 매달 회사로부터 받는 1천 루블(약 30달러)로 충당한다. 이 돈은 1년 총화 때 전체 임금에서 공제한다.
- 1년 총화는 노동자들 전체가 모여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사장과 단장이 총화를 거친 후 단장과 개별 노동자들이 총화를 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즉 사장과 단장이 전체 수입과 계획분을 우선 협의한 후 단장이 다시 노동자 각 개인을 불러서 사무실에서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동료 노동자들의 1년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며, 수입, 식비, 문화비 등 개별 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개별 노동자별로 인쇄해 그 인쇄물을 바탕으로 협의한다. 단장과 각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총화를 진행하면서 수입과 개인별 계획분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단장이 노동자의 계획분을 깎아주거나 수입금액을 늘려주기도 한다.

I
II
III
IV
V

- 계획분은 1년 총화 때 전체 계산되는데 식비, 문화비 외에도 풀밭조성과 같은 세포등판 비용, 백두산청년발전소 지원, 영생관 지원 등의 총성자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계획분을 제외하고 각 노동자들의 1년 수입은 대략 3~4천 달러 정도이나 미숙련 노동자로 파견된 경우에는 수입이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비자가 만료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만기생'의 경우는 일반 노동자보다 많은 5~6천 달러 정도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
- 제2건설회사(사업소)의 조직도를 보면 북한 회사(사업소)의 직급과 업무를 파악할 수 있다. 회사(사업소) 내에서 주요한 관리자는 1번, 2번, 3번 순으로 불린다. 사장은 회사 전체의 최고 관리자로 회사 내에서는 '1번'으로 불리며, 파견되기 전에는 북한에서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사업소에서 직장장이나 부직장장을 맡았던 관리자들이 많다. 부사장은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당비서는 총화를 담당하며 '2번'으로 불린다. 3번은 '로동안전원'으로 실제로는 북한의 국가보위부 행사과, 대외처 등지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파견된 보위지도원이다. 노동안전원 아래에는 각 단의 단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장은 현장근무를 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단원들을 관리한다. 대신 각 단장 아래 위치한 소대장이 노동자들과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 크라스노야르스크 제2건설회사의 경우 노동자 총 수는 500~600명 내외이며 전체 인원은 다시 17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단장이 36~40명 내외의 소대원을 관리 감독하게 된다. 소대장 아래에는 구대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러시아에 파견된 지 3~4년이 지난 노동자로 '구대' 혹은 '구대원'으로 불린다.
- 크라스노야르스크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기업에서 정부에 요청한 쿼터제에 따라 입국하지만 집체노동에 주로 참여한다. 청부 형태가 있기는 하지만 회사 사장(지배인)이 일감을 받아 노동자들을 내보내는 식으로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사 내 조직 체계의 주요한 관리자는 1번, 2번, 3번 등으로 서열이 매겨져 있으며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 관리자 역시 회사 내에 근무하는 단장과 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소대장이 별도로 있어 회사와 현장에서 이중으로 노동자를 관리한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매년 11월 경 열리는 총화에서 결정되며 노동자들의 개별

임금은 회사가 관리한다. 조직 구성 방식이 회사 관리자 대 노동자라는 대립적 구도로 돼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위험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11월 총회는 공개적인 집단모임 대신 단장과 노동자가 1대1로 개별 접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11월 총회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결정된다.

**그림 IV-2** 크라스노야르스크 제2건설회사(사업소)의 조직도



자료: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작성.

I  
II  
III  
IV  
V



# V. 결론





러시아 연방이민청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는 2015년 현재 3만 4천20명이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4년 현재 5만 3천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에 따라 입국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러시아 내에 설립한 회사에 소속되어 원칙적으로 교외 아파트 또는 공장건물에서 단체생활을 하며 작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자살 및 산업재해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상 이완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더욱 엄중한 감시를 받게 돼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실적으로 러시아 당국의 외국인 노동자 근로 현장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생활, 근로실태에 대해서는 당국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커서 전체를 모두 일반화하기 어렵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지역에 따라 근무형태나 수입뿐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건도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사할린의 경우 러시아 중부나 연해주 지역보다 개인 청부 형태의 노동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가장 선호되는 파견 희망 지역이다.

사할린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배경으로 노동 이민의 역사와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발인력이 항상 부족한 극동지역에서도 사할린은 지정학적, 민족적 특성들이 교차되는 ‘경계적(境界的)’ 공간이며, 일제가 다수의 한인(조선인) 노동력을 강제 동원하기 이전부터 한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주했던 지역이다. 동시에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북한 간 교섭에 의해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 땅에 집단 진출한 곳이기도 하다.

외국인 노동자 활용 문제에서 국경 지역의 안보와 부족한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라는 상충되는 과제를 해결해야 했던 소련의 입장은 1940

I
II
III
IV
V

년대 후반이나 1950년대 초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으나, 1950년대 들면서 노동력의 이용을 더 중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지 선주민인 무국적자와 외국인인 북한 노무자를 구별하지 않는 정책이 채택됐다. 이와 함께 노동수첩을 발행하면서 노무자 개인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가능해 졌으며 결과적으로 북한 공민인 파견노무자와 현지 선주민 간의 구별이 없어졌다.

초기에 어업 분야로 사실상 한정되었던 북한 노동자들의 직종이 1950년대 초에 들어 임산업이나 건설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확산됐고 집단생활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개별적으로 거주하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 이들은 숙달된 노동자가 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현지 선주민보다 오히려 유리한 정치·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등 특권적 지위마저 누릴 수 있게 됐다.

북한은 1950년대 후반 들어 최초 파견노무자들의 장기 체류가 증가하자 이들을 귀환시키기 위해 소련 외교부와 지방당국에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노동자 개별 면담까지 추진했지만 노동자들의 정착을 막는데 실패했다.

오늘날의 사할린 역시 이러한 역사적 상황의 영향이 크게 남아 있다. 사할린의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의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를 통해 유입되지만 러시아내 다른 지역과 달리 집체노동(국가대상)보다는 개인 청부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청부가 많다는 것은 북한 사업소(회사)의 규율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롭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사할린의 북한 노동자 개개인의 자율성은 유럽이나 러시아 내 타 지역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북한 노동자들은 이 청부 노동을 통해 점차 자본주의 방식을 습득하고 내면화한다. 사할린은 또 러시아어를 잘 하지 못해도 주변에 한인이나 조선족이 많아서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특권적 공간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UN 대북제재에 러시아가 동참하고 있고 북한 노동자와 관련된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미래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실제로 사할린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가 북한 노동자 쿼터 인원의 축소로 나타난 바 있다.

최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감소가 핵 문제와 인권 문제로 인해 국제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정치적, 외교적으로 결정된 것으로만 보기 어렵다. 사할린과 같은 극동 지역의 노동 수요는 지역 발전에 안보만큼이나 긴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상황이나 외교 관계에 영향을 받아 러시아내 해외노동자들 가운데 북한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시적으로 달라질 수는 있다 해도 러시아가 외국인 노동자를 일정하게 필요로 한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측면보다 러시아 내 각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과 맥락의 파악이 더 필수적이다. 또한 파견 노동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기보다 북한 사회에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사회적 송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새로운 시각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송금’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물질적인 ‘돈’을 넘어서서 ‘사회적 송금’의 의미로 파악해 보면 러시아 사할린 파견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이 경험한 사고방식, 행위형태, 정체성, 사회자본 등이 점차 북한에 전파 혹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러시아 파견을 통해 보다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방식을 내면화하게 된다면 장차 통일됐을 때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북한 노동자 해외파견의 긍정적 측면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이를 통일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I
II
III
IV
V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연구에 있어 남은 과제는 지역별 노동 시장 상황의 주도면밀한 관찰과 분석이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대도시 및 유럽, 아랍 지역 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비교문화적 연구가 이뤄지면 북한사회의 인권 및 노동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비판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파견노동자들이 통일과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고 통일 이후 사회의 통합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함으로써 통일 자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 『사할린 한인의 동원·역류·귀환 경험: 광복 70주년 기념』.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15.
- 김석진.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박승의. 『사할린 한인의 운명: 역사, 현황과 특성』. 춘천: 금강 P&B, 2015.
- 박찬홍. 『러시아 드림: 러시아지역 북한 노동자의 근로와 인권 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6.
- 북한전략센터·코리아정책연구원. 『북한의 해외인력송출 실태』. 서울: 북한전략센터·코리아정책연구원, 2012.
- 아나톨리 쿠진 지음. 문준일·강정하 옮김. 『사할린 한인사』. 서울: HUEBOOKS, 2014.
-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 지음. 배대화 옮김. 『안톤 체호프 사할린 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3.
- 원학희·한종만·공우석. 『러시아의 지리』. 파주: 아카넷, 2002.
- 유리 미하일로비치 텐 지음. 이원용 옮김. 『나의 사랑 러시아!』. 서울: 재외동포재단, 2003.
- 유시욱. 『오호츠크해의 바람: 산중반월기』. 서울: 선인, 2013.
- 윤여상.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5.
- 이애리아·이창호.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이영형.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서울: 통일연구원, 2012.

정혜경. 『조선 청년이여, 황국신민이 되어라』. 파주: 서해문집, 2010.

SHIN, Chang-Hoon and GO, Myong-Hyun. *Beyond the UN COI REPORT on Human Rights in DPRK*. Seoul: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4.

Tsai, Shih-Shan Henry. *Perpetual Happiness: The Ming Emperor Yongle*.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2.

География России: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М. БРЭ. 1998.

Дин Ю.И.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ахалина: проблема репатриации и интеграция в советское и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Ю.-Сахалинск, 2015.

Крушанова Л.А. *Мигра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СССР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ередина 1940 х—1970 е гг.)*. Владивосток, 2014.

Кузин А.Т.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Корецы: Жизнь и трагедия судьбы*. Ю.-Сахалинск, 1993.

Кузин А.Т. *Исторические судьб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н. 2: Интеграция и ассимиляция (1945-1990 гг.)*, Ю.-Сахалинск, 2010.

## 2. 논문

- 김윤영·유시은. “중국 내 비자 방문 북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경험과 의식 변화.” 『다문화와 평화』. 제10권 1호, 2016.
- 김재웅. “재북한 일본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북한의 일본인 기술자 정책(1945~1950).” 『동북아역사논총』. 제44호, 2014.
- 레오니드 코즐로프. “극동지역 발전에 따른 러시아-북한의 경제적 관계.” 2016년 4월 29일 내부 워크숍.
- 박민영. “소련군 포로가 된 시베리아지역 한인의 귀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0집, 2013.
- 방일권. “한국과 러시아의 사할린 한인 연구: 연구사의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제38호, 2012.
- 앙겔리나 바슈. “20세기 후반 러시아극동지역 북한 이주노동자.” 『교류와 협력의 한러관계: 역사와 전망』. 2010년 동북아역사재단 한러 국제학술회의, 2010. 8. 30-31.
- 이연식.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 점령군·조선인·일본인 3자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9.
- 이영형. “러시아 극동지역 내 북한노동자 활동 현황: 아무르주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26권 1호, 2016.
- \_\_\_\_\_.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현황 및 그 역할 분석.” 『국제정치연구』. 제10집 2호, 2007.
- 이용희.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 정책의 추이와 전망.” 『국제통상연구』. 제21권 4호, 2016.
- 이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자 현황- 대북제재 이후, 북·러 경제협력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편. 『검은대륙으로 끌려간 조선인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6.

최영윤.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 통계데이터를 중심으로.” 『KDI 북한 경제리뷰』. 2017년 2월호, 2017.

타마라 트로야코바. “러시아 대 한반도 정책: 오늘날의 도전과 전망.” 2016년 4월 29일 내부 워크숍.

Levitt, Peggy. “Social Remittances: Migration Driven Local-Level Forms of Cultural Diffus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2, No. 4, 1998.

Вапук А.С., Трудовые мигранты из КНДР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X - начале XXI века // *Гуманитар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и 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 1, 2012.

Кузин А.Т., Послевоенная вербовк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на промышле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946-1960-е гг.) // *Россия и АТР*. № 3, 2010.

Чернолуцкая Е.Н., Трудовое и бывшее устройство корейцев в конце 1940-х начале 1950-х годов // *Вестник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ДВГУ*. № 1, 2004.

Забровская Л.В., Трудовая миграция из КНДР в Россию (середина 1940-х - 2003 гг.) //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5, 2005.

### 3. 기타자료

Boonen, Marte, Boonstra, Klara, Breuker, Remco (P.I.), Chung, Christine, Gardingen, Imke van, Kim, Kwang-cheol, Oh, Kyuwook, Veere, Anoma van der. "North Korean Forced Labour in The EU, The Polish Case: How The Supply of A Captive DPRK Workforce Fits Our Demand for Cheap Labour." Leiden Asia Center, 2016.

БЫЛОЕ // *Историческое чтение, № 2, Южный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 1945-1947 гг.*, Ю.-Сахалинс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996-1997.

Ким И.П., Политическо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й присоединенных к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осточная Пруссия, Южный Сахалин,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1945-первая половина 1949 года.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2010.

Кожемяко Е.Г., Корейские рабочие как источник пополнения кадров в рыбном хозяйстве Сахалин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ук: социология, политология, философия, история*»: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по материалам XLIX-L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17 июня 2015 г.), <<http://sibac.info/conf/social/xlix/42464>>.

Забровская Л.В. 'КНДР-Россия-РК: обмен трудовыми ресурсами, <<http://demoscope.ru/weekly/2008/0333/analit04.php>>.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KINU 통일포럼 시리즈

-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 2015-03 제9차 KINU 통일포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그레이드 전략 - 8·25남북합의 평가와 박근혜정부 후반기 대북·통일정책 방향 - 통일연구원
-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 통일나침반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욱
-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 2015-05 The Reality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Maritime Province of Russia Lee Aeliah
-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 2017-01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통일연구원
- 2017-02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홍 민 외

### 통일플러스

-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2016-01 KINU 통일 + Vol.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6-02 KINU 통일 + Vol.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6-03 KINU 통일 + Vol.2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6-04 KINU 통일 + Vol.2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 KINU Insight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민
-------------------------------	----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옥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옥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i>	도경옥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i>	도경옥 외	24,500원

## 연구보고서

### 2015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예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2015 Inter Korean Relations and the Unification Process in Regional and Global Contexts	박종철 외	

###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 2016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운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욱 외	14,000원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중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에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3,000원
2016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7,500원
2016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 외	9,5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2016-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중호 외
2016-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이강우
2016-04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

### ■ Study Series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 2017년도 연구보고서

### ■ 정책연구시리즈 ■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	----------------------------	-------

### ■ Study Series ■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 · 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 연례정보보고서

-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8,000원

### 논총

-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4, No. 2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6, No. 1 (2017) 10,000원

### 기타

- 2015 북한교회화소 한동호 외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